

南極條約 體制의
國內立法 方向研究

2000. 8. 29

연구자 : 최철영(연구 2팀 수석연구원)

目 次

제 1 장 서 론	7
제 1 절 남극환경의 보호	7
1. 남극환경에 대한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	7
2. 남극의 자원개발	9
3. 남극조약체제	11
제 2 절 연구의 목적	12
제 2 장 남극조약체제(ATS)	13
제 1 절 남극조약	13
1. 조약성립배경	13
2. 남극조약의 주요내용	16
3. 남극조약의 문제점	18
제 2 절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20
1. 의정서의 성립배경	20
2. 의정서의 효력	20
3. 의정서상의 국가의무사항	21
제 3 절 남극물개보존에 관한 협약(CCAS)	26
1. 협약의 체결배경	26
2. 협약의 주요내용	26
3. 협약상의 국가의무사항	27
제 4 절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CCAMLR)	27
1. 조약성립의 배경	27
2. 조약의 운영	28
3. 조약상의 국가의무사항	29
제 5 절 남극동식물군의 보존을 위한 합의규칙	30
1. 합의규칙의 성립배경	30
2. 합의규칙의 주요내용	31

3. 합의규칙의 국가의무사항	32
제 3 장 남극조약의 운영체제와 문제점	33
제 1 절 남극조약협의당사국 회의(ATCM)	33
1. 남극조약협의당사국(ATCP)	33
2.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의 권고	34
3. 권고 및 조치 등의 내용분류	35
4. 1999년 ATCM의 주요 논의사항	36
제 2 절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	37
1. 남극연구과학위원회의 설치	37
2. 남극연구과학위원회의 기능	37
제 3 절 남극조약체제의 문제점	38
1. 상설사무국의 설치문제	38
2. 인간에 의한 남극오염문제	38
3. 민간의 남극관광 및 탐사에 따른 환경오염문제	40
4. 남극에서의 광물자원개발문제	40
제 4 장 주요국가의 국내입법분석	43
제 1 절 미국의 남극보호법	43
1. 남극관련입법	43
2. 남극보호법제의 주요내용	45
3. 미국의 남극관련법제의 특징	55
제 2 절 영국의 남극조약법	56
1. 남극관련입법	56
2. 남극조약법의 주요내용	57
3. 영국의 남극관련법제의 특징	63
제 3 절 일본의 남극관련법제	63
1. 남극관련입법	63
2. 『남극지역의환경보호에관한법률』의 내용분석	64
3. 일본 남극관련법제의 특징	79

제 5 장 남극조약체제의 국내입법방향	81
제 1 절 국내입법시 정책적 판단사항	82
1. 남극조약의 국내입법체계	82
2. 남극관련법령의 소관부처	83
3. 남극활동지원을 위한 사항	85
제 2 절 국내입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86
1. 법의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86
2. 남극활동의 허가	86
3. 남극지역의 보호를 위한 행위	87
4.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88
5. 벌칙 및 보칙규정	89
부 록	91
○ 남극조약(The Antarctic Treaty)	93
<미국의 남극관련법제>	100
○ 제16편 제44장 - 남극보존	100
○ 제16편 제44A장 - 『1984년 남극해양생물자원협약법』	114
○ 제16편 제44B장 - 『1990년 남극보호법』	126
○ 1996년 남극환경보호법	130
○ 1996년 남극과학, 관광 및 보존법	139
<영국의 남극관련법제>	148
○ 『1967년 남극조약법』	148
<일본의 남극관련법제>	156
○ 『남극지역의환경의보호에관한법률』	156
○ 『남극지역의환경의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176
○ 『남극지역의동물상및식물상의보존에관한법률』	179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남극환경의 보호

1. 남극환경에 대한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

남극은 지구상에서 다섯 번째의 크기를 가진 대륙으로서 남극대륙 자체의 영유권 및 그 주변해역이 갖는 경제, 과학적 가치로 인하여 남극에 대한 각국의 관심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¹⁾ 그 동안 남극은 지리적 격리와 영하 수십도의 혹한, 그리고 폭설 및 강풍으로 모험가의 모험 또는 과학자들의 연구대상에 불과하였으나 과학기술의 발달과 다른 대륙에서는 고갈되어 가는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향후 언제 제기될 지 모르는 각국의 영유권주장의 근거 만들기가 세계 각국으로 하여금 남극개발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남극에 대한 인간의 관심은 첫째, 남극에 대한 주권적 권리에 대한 각국 정부의 관심 둘째, 남극을 연구기지로 활용하려는 과학자들의 관심 셋째, 광물 및 해양생물자원에서 관광에 이르는 광범위한 상업적 관심 넷째, 남극을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하고자 노력하는 환경보호운동가들의 관심 등 4개의 관심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²⁾

이러한 남극에 대한 인간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남극환경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크릴새우(krill)어획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상업적 산업활동도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지 않으며 천혜의 지리적 격리는 다른 지역의 공해로부터의 환경오염전파를 막아주었다. 그리고 남극

1) 남극은 지리적 원거리성과 특이한 자연조건으로 인하여 지구물리학, 지질학, 해양학 등 모든 과학의 선선한 대상이자 천혜의 과학실험장역할을 하고 있으며, 남극대륙 자체 뿐만 아니라 그 주변해역 및 대륙붕에 풍부한 생물 및 광물자원이 부존되어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남극의 부존자원은 크릴로 대표되는 남빙양 수산자원, 석유 및 천연가스, 금속광물, 수자원으로 이용 가능한 빙산, 관광 등 다양하다.

2) Woodruff A. Polk, Welcome to the Hotel Antarctica : The EPA's Interim Rule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Tourism in Antarctica, Emory International Law Review, Vol.12(1998), No.3, p.52.

에 대한 각국 정부의 주권적 권리주장은 남극조약체제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남극자원에 대한 통제되지 않은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지상최후의 천연대륙을 오염시키고 남극 오존층의 파괴가 심화되면 지구 전체의 기후 등 자연환경을 악화시킬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³⁾

더욱이 남극의 생태계는 다른 생태계보다 인간이 야기한 어떠한 변화에 대한 적응이나 저항의 가능성을 기대하기 힘든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남극개발경쟁에 의하여 일단 침해된 남극지역환경은 다른 지역에 채택된 방법에 의한 회복이 불가능하고 파괴된 오염지역의 회복은 매우 완만한 자연적 과정에 의하지 않고는 다른 회복방법이 없다. 이 것이 남극환경의 오염에 대하여 사후구제보다도 예방이 강조되는 이유이다.

UN은 1990년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의 특별보고서를 통하여 어느 국가의 관할권도 미치지 않는 국제공역 지역에서의 환경침해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⁴⁾ 동 위원회의 특별보고자는 현재의 일반 국제법으로는 사람이나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국제공역환경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에서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대한 환경침해문제 처리의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하였다.⁵⁾ 국제연합이 1991년 마드리드에서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 정서(마드리드 의정서)를 채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5개 분야의 부속서와 함께 3년간의 협상 끝에 채택된 마드리드 의정서는 지금까지 환경보호를 위하여 국제사회에서 채택한 문서 중 가장 광범위한 법적 문서이다.⁶⁾

3) Barry E. Carter, International Law, 1995, p.1078.

4) Report of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UN GAOR, 42d Sess., Supp. No. 10, 1990, p.242.

5) 당시 특별보고자는 이러한 책임문제에 접근하는 유일한 국제조약은 남극광물자원활동규제협약(CRAMRA)이라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특별보고자는 현재의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어서는 안되며 국제법은 다른 어떤 형태의 구제방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O. Schachter · C. Joyner, United Nations Legal Order, Vol. 2, 1995, p.656.

6) S.K.N. Blay, New Trends in the Protection of the Antarctic Environment:

남극조약의정서의 채택으로 남극조약, 남극동식물보존을 위한 합의규칙, 남극물개보존협약,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남극광물자원활동규제조약 등으로 구성되는 남극조약체제(the Antarctic Treaty System)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되었다. 또한 마드리드 의정서는 남극조약 당사국들에게 의정서에 포괄되어 있는 남극조약체제의 의무사항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입법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당사국은 의정서의 준수를 위하여 그 권한 내에서 법률, 규칙, 행정조치, 이행조치들을 채택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⁷⁾

이에 따라 남극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요 남극조약협의당사국들은 국내법의 입법을 통하여 남극자연의 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의 일원이며 남극에서의 국익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남극조약체제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국내입법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2. 남극의 자원개발

남극수렴선(Antarctic Convergence)⁸⁾ 이남에 서식하는 생물자원으로는 크릴, 고래, 물개, 오징어와 남극대구류 및 남극빙어류 같은 어류가 있다.⁹⁾ 남극생물자원남획의 대표적인 예들은 19세기의 물개자원, 20세기 초중반의 고래자원 그리고 20세기 후반의 남극해어류자원의 남획 등을 들 수 있다.

남극해에서는 낮은 수온 때문에 어류의 신진대사율이 낮으며 성장이 느리고 남극어류의 수명은 일반적으로 온대권이나 열대권 어종보다 길어

the 1991 Madrid Protocol, A.J.I.L. Vol.86(1992), p.377.

7) Madrid Protocol, Art.13

8) 남극수렴선이란 그 보다 북쪽의 덜 찬물이 그 남쪽의 찬물과 만나는 좁은 지역을 말하며,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동하여 특히 인도양쪽에서 북쪽으로 높게 올라간다. 남극수렴선을 중심으로 바다의 상태와 서식하는 생물, 그리고 일기가 급격히 변하여 일종의 경계지역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남극해에 서식하는 생물과 관련된 조약과 생물연구에서는 남극수렴선의 남쪽을 남극으로 인정한다; <http://sejong.kodri.re.kr/literature/common-sense-03-skchang.htm>.

9) 남극생물자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김수암, 남극해 어류자원의 현황 및 생물학적 특징, 한국극지연구(창간호), 1990. 6, 68~74면; 장순근, 남극의 환경보존과 자원 보호, 해양정책연구(제2권2/3호), 1987 여름/가을호, 254~258면 참조.

번식이 늦는다. 따라서 남극의 어업자원은 남획이 이루어지면 단시간 내에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고갈되어 버린다. 따라서 남극자원의 보호에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하지만 남극해에서의 자원획득활동은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 또는 국제기구에 의한 철저한 관리와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적인 자원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남극자원의 보호를 위해 각국이 남극조약체제에 부응하는 국내법을 제정하여 자국민의 남극자원관련활동을 관리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남극의 광물자원은 900개 정도의 대규모 광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중 20개 정도가 얼음이 없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석탄만 부존이 확인된 상태이며 석유는 남극대륙의 빌링하우젠, 로스, 웨델 海 등에 450억배럴, 천연가스는 1,150억³m가 부존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질학들은 남반구의 라틴아메리카,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지하자원이 부존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¹⁰⁾ 현재 남극광물자원개발의 제약조건으로서는 석탄 외에 산업적 생산이 가능한 규모의 부존여부가 불확실하고, 생산기술문제로서 채광기술은 충분하지만 대규모의 보급기지설치가 곤란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채광에 필요한 경비가 육상이나 심해저에 비해 많이 들고 가혹한 자연조건으로 인하여 작업가능한 기간이 가장 따뜻한 11월부터 2월까지의 3~4개월로 제약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현재는 자원개발을 위한 조사가 단편적이며, 가혹한 자연조건으로 경제성이 적고, 환경보호문제 등이 국제적으로 강력하게 제기되어 있어 개발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자원조사가 계속되어 남극자원에 관한 충분한 과학적 자료가 축적되고 육상자원의 소진으로 경제성이 확보된다면 환경보호에 있어 국제적 기준인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친화적개발’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전제로 각국간에 외교적 타협이 이루어져 남극자원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 있다할 것이다.

10) 장학봉, 남극자원개발체제의 움직임, 해양정책동향(제3호), 1983. 12, 17면.

3. 남극조약체제

국제연합(UN)에 의한 남극관리가 성취되지 않는 현실에서 남극환경의 구체적 보호는 다수 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한 국제법적 규제로서 남극조약체제에 의한 보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남극조약체제는 구조적으로 폐쇄성과 배타성을 갖고 있다. 결국 남극을 국제공역(global commons)으로 하는 국제제도는 아직까지 발전되지 못하였다.

남극조약체제(Antarctic Treaty System : ATS)는 남극조약, 남극조약에 따라 시행중인 조치, 남극조약과 관련하여 발효중인 별도의 국제문서와 그러한 문서에 따라 시행중인 조치를 포함하는 법적 개념이다.¹¹⁾ 즉 1959년 남극조약, 1964년 남극동식물보존을 위한 합의규칙, 1972년 남극물개보존을 위한 협약, 1980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 1991년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및 부속서,¹²⁾ 남극조약협의당국회의(ATCM) 및 남극조약협의당사국(ATCP)에 의하여 합의된 140여 개의 권고,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 등을 총칭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남극의 환경과 생태계는 남극조약체제에 의하여 특히 남극환경보호에 대한 자신들의 일차적 책임을 강조해온 남극조약협의당사국(ATCP)의 노력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보호되어 왔다. 이러한 남극조약체제라고 하는 국제법적 규제는 남극조약체제의 비당사국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남극조약의 비당사국인 세계 모든 국가를 구속하는 일반국제법상의 규제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동 조약체제는 비당사국들에게 국제관습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1) Madrid Protocol, Art.1 (e)

12) 1988년 남극광물자원활동규제협약은 1991년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가 채택됨으로서 폐지되었다; S.K.N. Blay, op. cit., p.399.

제 2 절 연구의 목적

남극에 대한 환경오염의 형태는 크게 해양생물자원의 남획과 남극에서의 인간활동으로 인한 폐기물방출로 발생하는 남극생태계의 파괴로 나누어진다. 특히 남극해역은 고유의 해양생물자원과 지질학적 특성 그리고 먹이사슬로 연결된 고유한 개체군의 구조를 갖고 있으나 각국의 경쟁적 남극진출로 인하여 파괴되고 있다. 현재까지 남극에서 이루어지는 각국의 해양생물자원의 남획과 과학·탐사·관광활동에 의한 폐기물방출을 규제하고 남극의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수단이 강구되어 있으나 남극지역의 독특한 법적 지위로 인하여 국제법에 의한 규제와 국내법에 의한 규제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효과적으로 남극환경의 보호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이 연구는 남극조약체제의 내용을 분석하고 남극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한 남극조약체제상의 국가의무사항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주요 남극조약협약 당사국이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를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제정한 법령을 조사·분석해 보고자 한다. 남극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요국가들은 남극의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법으로서 남극조약체제와 남극조약체제상 국가의무사항을 국내법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적인 남극활동 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가 도입한 국내법의 비교분석은 남극조약협약 당사국일 뿐만 아니라 남극지역에서의 국가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시급히 제정하여야 할 환경보호를 위한 남극조약의정서의 국내적 입법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남극활동국가의 남극 환경보호관련 국내입법의 형태 및 내용을 조사·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절한 관련 입법의 범위와 형태 등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장 남극조약체제(ATS)

제 1 절 남극조약

1. 조약성립배경

(1) 영유권분쟁

18세기 후반 제임스 쿡(James Cook) 선장이 최초로 남극권에 진입한 이후로 많은 방문자들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남극대륙에 진출하였으나 1940년대 말까지 남극에 상주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후 호주를 비롯한 몇몇 국가들이 남극대륙의 영유권에 대한 경쟁을 시작하였고 1957년에 이르러서는 호주를 비롯한 7개국 외에 남극에 상주기지를 갖고 있지 않았던 국가들도 남극대륙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원했고 필연적으로 남극과 관련된 각종 국제적인 문제들이 국가들간에 발생하기 시작했다.

남극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나라는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칠레 등 7개국이다. 이들 국가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은 남극대륙 총면적의 85%에 해당하며 일부지역에서는 중복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들 국가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법적 근거는 발견(discovery), 점유(occupation), 인접성(contiguity), 접속성(continuity), 선형이론(sector theory)¹³⁾ 등이다.

13) 極地域(polar regions)의 영유권과 관련한 선형이론(sector theory)의 적용은 종종 발견(discovery)에 의한 영유권 주장과 혼합되어 그 이론적 명료성이 떨어진 다. 예컨대 프랑스는 Adelie Land에 대하여 선형이론과 발견에 의한 영유권을 주장 하지만 뉴질랜드는 Ross지역에 대한 영유권주장의 근거를 발견만이 아닌 국가관할권의 행사로서 허가증의 발급과 치안관의 지명 등 실효적인 거주(effective settlement)에 두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극지방에 대한 영유권은 인접성과 근접성 등의 정의되지 않은 개념에 근거하여 주장되고 있다; Lauterpacht, Sovereignty over Submarine Areas, B.Y.I.L.1950, 376; Louis Henkin, at al, International Law-Cases and Materials(3rd. ed.), 1993, p.1364.

영유권주장의 근거로서 칠레는 지리적 인접성과 선형이론에 근거하여 서경 53도와 90도 사이의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영국은 아르헨티나와 분쟁의 대상이 되었던 Falkland섬을 근거로 인접성에 따라 『New Zealand and Australian Dependencies』로 불리는 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또한 노르웨이는 자국 국민인 Ammunsen이 발견한 지역이라는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였으나 미국은 이에 대하여 발견만을 기초로 한 영유권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¹⁴⁾ 영유권과 관련하여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가장 강력하게 영유권주장을 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프랑스, 영국은 상대적으로 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호주는 남극회의에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생물자원은 인류공동의 유산이며 비생물자원의 개발을 위해서는 유엔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처음에 남극이 유엔통제하에 있는 세계공동의 영토라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다른 영유권 주장국들이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자 태도를 바꾸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¹⁵⁾

영유권을 주장하는 나라들은 자신들의 영유권주장 근거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자국 대통령이 남극을 방문하도록 하여 남극에서 우표발행 등의 공무를 수행토록 하는가 하면, 또 남극에서의 결혼과 출산을 통하여 실효적 지배(effective occupation)를 과시하고 있다.¹⁶⁾

이렇듯 남극에 기지를 갖고 있던 아르헨티나, 프랑스, 노르웨이, 영국, 호주, 뉴질랜드, 칠레 등의 일부 중복지역이 있는 영유권주장을 하였으나 미국, 벨기에, 일본, 남아프리카, 러시아 등은 이들 국가의 영유권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 또한 남극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음으로써 남극조약의 체결에 이르게 되었다.¹⁷⁾

14) Fenwick, op. cit., p.335.

15) 해양정책동향, 1983. 12월호, 14~15면.

16) 김정진, 국제법, 1987, 184면.

17) Barry E. Carter, Phillip R. Trimble, International Law, 1995, p.1078.

(2) 남극조약의 체결

남극조약에 대한 최초의 제안은 1957~58년에 국제과학연맹이사회(ICSU)가 주관하고 12개국이 참여한 국제지구물리학의 해(International Geophysical Year)의 성공적인 수행의 결과로 제기된 것이다. 국제지구물리학의 해에 남극에 기지를 가지고 있는 12개국의 67개 남극기지에서 약 5000여명의 과학자들이 참여하여 우주선, 자기학, 빙하학, 기상학, 지진학, 해양학 및 해양생물학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많은 과학적 자료가 수집됨으로써 남극의 과학적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었다. 그리고 남극의 국제적 공동연구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1958년 국제과학연맹은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on Antarctic Research: SCAR)를 구성하고 서로의 자료를 교환하였다. 그후 남극 연구종사자들은 계속적인 연구의 수행을 위해 정치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것이 동기가 되어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8년 남극의 영유권주장을 포함한 남극관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제안하였고 그 결과 1959년 12월 미국의 워싱턴에서 『남극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¹⁸⁾

1961년 6월 23일부터 발효된 남극조약은 12개국의 원초 서명국과 추후에 가입된 31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남극조약협약당사국(ATCP)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조건은 조약가입 후 과학기지 설치 또는 과학탐험대 파견 등의 실질적인 과학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¹⁹⁾

남극조약에의 가입은 UN가입국 또는 ATCP국가의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은 국가가 할 수 있다. 즉 가입은 UN 회원국에게는 조건없이 그리고 비회원국인 경우 모든 남극조약협약당사국의 동의를 조건으로 개방된다.²⁰⁾ 그러나 이들 가입국은 과학기지의 설치 또는 과학적 탐험대의 파

18) Robert D. Hayton, "The Antarctic Settlement of 1959," AJIL, vol. 54(1960), pp.349~371.

19) 남극조약 제9조 제2항

20) 남극조약 제13조 제1항

견과 같은 남극지역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연구활동의 실시에 의해 남극지역에 대한 자국의 관심을 표시하여야만 실질적인 모든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ATCP의 회원국가가 될 수 있다.²¹⁾ 이는 원 체약국이 남극에서의 자국들의 기득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남극조약체제를 폐쇄적으로 운영하고자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2000년 1월 현재 남극조약 가입국은 총 43개국으로서 이중 협의당사국은 원초 서명국 12개국을 포함하여 27개국이다. 한국은 1986년 11월 남극조약에 33번째로 가입하였으며 남극조약 협의당사국자격은 1989년 10월 18일 23번째로 취득하였다.

2. 남극조약의 주요내용

남극조약은 첫째, 남극을 비군사, 비핵, 비냉전의 지역으로 보존하고, 칠레, 아르헨티나, 영국간의 경합되는 영유권 주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며, 남극의 일부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와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는 국가간의 분쟁가능성을 제거하는 것; 둘째, 남극에 대한 과학적 연구노력이 전세계 국가와 그들 국민을 위하여 추진되고,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무료로 공공연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것; 셋째, 남극에 관한 제문제의 계속적인 협의와 합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평화적 이용

남극지역은 평화적 목적만을 위하여 이용될 수 있으며 군사기지, 방비시설의 설치, 군사연습실시 및 모든 형태의 병기실험과 같은 군사적 성질의 이용은 금지된다. 그러나 과학적 목적 또는 기타 평화적 목적만을 위한 군의 요원이나 장비의 사용은 허용된다.(제1조) 또한 남극지역에서의 과학적 조사의 자유 및 협력은 보장된다.(제2조)

21) Barry E. Carter, Phillip R. Trimble, op. cit., p.1078.

(2) 영유권주장의 동결

남극조약은 남극조약의 체결 이전에 남극지역에 대한 영유권주장을 하던 국가들이 영유권주장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남극조약의 체결이 각국의 영유권주장을 포기하거나 어떠한 체약국의 지위를 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²²⁾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남극지역에 있어서 영토에 관한 새로운 청구권 및 기존의 청구권의 확대는 동 조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²³⁾ 즉 남극조약의 유효기간 중에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은 남극지역에 있어서 영토에 관한 청구권을 주장하고 지지하거나 부인하기 위한 기초를 이루는 것이 아니며 남극지역에 있어서 주권을 설정하는 것도 아니다. 이로써 호주, 칠레 등 7개국에 의해 주장되었던 영유권을 성공적으로 동결하였고 남극대륙에서 평화적 목적만을 위한 과학연구의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었다.²⁴⁾

(3) 감시 및 통보체제

각 체약국은 과학기지의 설치 또는 과학탐험대의 파견과 같은 남극지역에서의 연구활동에 관심을 표시하지 않는 가입국을 제외하고 감시원을 지명할 권한을 가지며, 이들은 남극지역의 감시임무를 수행하며, 모든 지역에 언제나 출입하는 완전한 자유를 갖는다. 이들 감시원은 체약국 국민이라야 하며 이들에 대한 절차적인 요건으로는 감시원을 지명하는 권리를 보유하는 기타 모든 체약국에 감시원의 성명을 통보하고 또한 감시원의 임무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같은 통고를 하여야 한다.

(4) 재판관할권

감시원, 과학요원 및 이에 수반하는 요원은 남극지역에 있는 동안 자기의 임무수행의 목적을 갖고 행한 모든 행위 또는 부작위에 관해서는

22) 제4조 제1항

23) 제4조 제2항 후단

24) D. J. Harris, Cases and Materials on International Law, 1998, p.233.

그 지리적 위치 또는 어떤 특정 국가의 영유권주장과 무관하게 오직 그
가 소속하는 체약국의 재판권에만 복종한다. 즉 협의당사국은 남극지역
내의 모든 기지, 시설 및 장비를 조사할 수 있는 감시원 지명권한을 보
유하며 감시원은 자신의 국적국에 만 복종한다.²⁵⁾ 이러한 규정은 동 조
약 발효 이전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규정이다.

(5) 회합 및 결정

남극조약은 상설기관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ATCP국가들이 2년마다
차례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에서 조약의 원칙 및 목적을 조장하는 조치를
입안하고 심의하며, 각국의 정부에 권고하기 위한 결정들로 이루어진다.
남극조약상 주요사항의 결정절차에 대한 기본원칙은 ATCP국가들의 만
장일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제9조4항) 이는 모든 체약국의 합의에 의
한 결정으로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는 있겠으나 조약의 일반적 실효성은
감소시킬 수 있는 약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²⁶⁾

3. 남극조약의 문제점

1982년 국제연합에 의하여 해양법협약이 채택된 이래 일부 제3세계
국가들은 남극의 지위에 대한 문제를 1983년의 국제연합총회에 제기하
였다. 제3세계 국가들이 제기한 문제는 남극이 남극조약체제의 회원국
즉 남극조약협의당사국들의 관리 및 통제하에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모
든 국가의 이익을 위해 개발되어야 하는 인류공동의 유산으로서 국제연
합이 관리 및 통제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남극조약체제의 체약
당사국들은 인디아와 브라질 그리고 이어서 중국과 우루과이를 협의당사
국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협의당사국들
은 남극조약의 당사국들 모두를 협의당사국회의에 옵저버로 초청하였고
토론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연합에 남극위원회를 창설하려는 움직
임을 와해시켰다.²⁷⁾

25) 제7조 및 제8조

26) 김정진, 앞의 책, 188면.

27) Louis Henkin at al., International Law - Cases and Materials, 1993,

하지만 남극조약체제는 남극에 대한 각국의 영유권주장을 무효화하기 보다는 정지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남극의 환경과 자원에 대한 총체적 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법일 수 없다, 따라서 남극을 인류공동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국제연합이 관리 및 통제함으로써 기존의 일부 남극체제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영유권 주장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여 향후 남극과 관련된 이해관계의 변화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분쟁의 기초를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남극조약체제밖에 있는 국가들은

첫째, 남극조약체제하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참가가 제한된다는 것과 정책결정권을 갖는 ATCP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과중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

둘째, 남극조약 하에서 개최되는 회의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

셋째, 남극지역의 광물자원이 심해저의 자원과 같이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ATCP국가들의 반응은 심해저와 달리 남극은 국가관할권 이원의 지역이 아니고, 오히려 영유권이 주장되어온 지역이므로 해양법에서 말하는 인류공동의 유산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다.²⁸⁾

남극의 일부지역에 대하여 주권을 주장하는 7개국 이외의 모든 국가에 대하여 남극지역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이며 남극지역에 대한 보호는 국제연합에 의한 관리로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음에도 ATCP국가들의 주장은 이를 거부하는 것으로서 당해 국가들이 장기적으로 남극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p.1367.

28) L. Kimball, “Antarctic Issues Today“, Hawaii대학 및 경남대공동국제세미나 자료집, 1984. 7. p.20.

제 2 절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1. 의정서의 성립배경

남극환경보호에 관한 포괄적인 규범을 지니고 있는 남극조약 환경보호 의정서는²⁹⁾ 1991년 10월 4일에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31개국이 서명하여 채택되었으며 1998년 1월 14일 발효하였다. 이 의정서는 제11차 남극조약협약당사국 특별회의에서 채택된 남극광물자원개발규제협약을 폐기하고 남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함에 있어서 남극환경과 생태계의 보호를 기본적으로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광물자원개발을 50년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 의정서는 기존의 남극조약에 대하여 추가, 보완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남극조약의 개정을 예정하고 있지 않으며 의정서에 대한 유보는 허용되지 않는다. 동 의정서의 효력은 채택 당시의 모든 남극조약 협약당사국이 이 의정서를 비준, 수락, 승인하거나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경과시에 발효하기로 되어있다.

동 의정서는 전문 및 27개조로 구성된 본문과 13개조로 구성된 중재 재판에 관한 부록,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남극동식물군보존·폐기물처리 및 관리·해양오염방지·남극에서의 광물자원개발 등에 관한 5개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다.

2. 의정서의 효력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는 남극조약의 보충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조약의 효력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며, 남극조약체제의 다른 법률 문서로부터 발생하는 의정서 당사국의 권리, 의무를 손상시키지 않는다.³⁰⁾ 그 주요내용은 환경원칙제정, 당사국간 협력의무 규정, 50년간 광

29) Protocol on Environmental Protection to the Antarctic Treaty, Official documents in XI ATSCM/2, June 21, 1991.

30) 의정서 제4조

물자원활동금지, 사전환경영향평가제도의 채택, 환경보호위원회설치, 의정서준수 및 사찰수락의무규정, 긴급사태에 대한 대응조치 수립의무, 연차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의정서의 가입을 비준하고 1996년 1월 2일 비준서를 기탁하였으며 동의정서는 1998년 1월 14일 발효하였다.

3. 의정서상의 국가의무사항

(1) 환경원칙의 제정

남극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방지, 예정된 활동에 대한 사전 환경영향평가실시, 긴급사태발생시 대응, 기 수행중인 활동에 대한 감시, 과학조사활동의 우선적 수행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3조) 이러한 사항들은 남극조약지역 내에서 행해지는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2) 당사국의 협력의무

남극환경조약에 관한 과학적, 기술적, 교육적 협력프로그램의 추진, 타 당사국의 환경영향평가활동지원, 타 당사국에게 유용한 정보의 제공, 기지 및 기타시설의 위치 선택시 타 당사국과의 합의, 남극조약협의회에서 합의된 조치의 수행, 자국의 활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남극지역 외측 인접국과의 협력 등을 의정서 당사국의 협력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① 남극환경 및 이에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의 보호에 관하여 과학적·기술적 및 교육적 가치가 있는 협력계획의 촉진
- ② 환경영향평가를 준비중인 다른 당사국에 대한 적절한 원조의 제공
- ③ 다른 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잠재적 환경위험에 관한 정보 제공 및 남극환경 또는 이에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사고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조의 제공

- ④ 기지가 특정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됨으로써 발생하는 누적적 영향을 피할 수 있도록 기지 및 기타 시설 예정지의 선택과 관련한 다른 당사국과의 협의
- ⑤ 적절한 경우 공동탐사의 수행과 기지 및 그 밖의 시설의 공동사용
- ⑥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합의되는 조치의 수행

(3) 광물자원에 관한 활동의 금지

과학조사를 제외한 광물자원에 관한 모든 활동의 금지는 의정서 발효 후 50년 경과시 개최되는 재검토회의에서 개정되기까지 유효하며 50년 후 개최되는 재검토회의에서의 개정여부는 의정서 채택당시 남극조약 협의당사국의 3/4를 포함한 다수결로 결정된다. 이 절차에 따라 개정된 의정서는 의정서 채택 당시의 모든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을 포함한 전체 남극조약협의당사국 3/4가 비준함으로써 발효되고, 동 개정안이 발효되지 않은 경우 의정서 가입국은 탈퇴를 할 수 없으며 동 탈퇴는 통보후 2년이 경과한 후 효력을 갖는다.

(4) 환경영향평가의무

각 당사국은 남극조약 제7조 제5항에 따라 사전통보가 요구되는 사항과³¹⁾ 관련된 과학조사, 관광, 기타 모든 정부차원 및 비정부차원의 활동 계획 및 기존활동규모의 증감, 활동의 추가, 시설의 폐기시에 의정서 I 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결과는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영향 이하인 경우,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영향인 경우,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영향 이상인 경우로 나뉘어진다.³²⁾

환경영향평가절차는 예비단계, 초기단계, 종합적 평가단계로 구분되며, 예비단계는 국내적 절차에 의해 수행되고, 그 이후의 절차는 예비단계의 평가결과가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것이거나 그 이상의 것으로 평가된 경

31) 남극대륙탐험, 남극에 설치된 기지, 과학조사 및 기타 평화적 목적을 위해 남극에 배치된 균요원 또는 장비

32) 동의정서 제8조

우 진행된다. 당사국은 남극조약 제7조 제5항에 따라 사전통고가 요구되는 과학조사프로그램, 관광, 기타 모든 정부 차원 및 비정부차원의 활동과 그에 관련된 보급활동을 계획함에 있어 부속서 I 의 환경영향평가절차를 거쳐야 하고, 또한 기존활동규모의 증감, 활동의 추가, 시설의 폐기 등 모든 활동의 변화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하며 2개국 이상이 공동계획하는 경우에는 한 국가를 선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조정하도록 한다.

(5) 환경보호위원회의 설치

환경보호위원회를 설립하고 각 당사국은 동 위원회의 당사국이 되며 대표를 지명하여야 한다.

각 당사국의 대표는 전문가와 자문위원을 동반하고 회의에 참석하며 남극조약의 체약국으로서 의정서의 비 당사국, 남극연구과학위원회 위원장과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의 과학위원회 의장은 옵서버의 지위를 갖는다. 위원회는 또한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그 밖의 과학적, 환경적 및 기술적 관련 기구가 옵서버로서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매 회기에 관한 보고서를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 제출하며 보고서는 회기에서 심의된 모든 문제들을 다루며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다.

위원회는 부속서의 운영을 포함한 이 의정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심의를 위하여 당사국에게 자문하고 권고문을 작성하는 기능 및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가 위원회에 회부하는 그 밖의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위원회는 이 의정서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의 효과 및 그러한 조치를 새롭게 하거나 강화 또는 향상시킬 필요성, 적절한 경우 추가조치(추가되는 부속서 포함)의 필요성, 제8조 및 제1부속서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절차의 필요성, 남극조약지역에서의 활동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 또는 완화하는 수단, 환경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조치를 포함한 긴급조치를 요하는 상황에 대비절차, 남극보호구역체제의 운영과 개선, 조사보고서의 형식 및 조사수행을 위한 점검목록을 포함한 조사절

차, 환경보호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보관·교환 및 평가, 남극환경의 상태, 이 의정서의 이행과 관련된 과학적 연구(환경감시 포함)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자문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경우 남극연구과학위원회,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에 과학위원회 및 그 밖의 과학적·환경적 및 기술적 관련 기구들과 협의한다.

(6) 의정서의 준수의무

당사국은 의정서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 권한내에서 법률, 규칙, 행정행위, 이행조치들을 채택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즉 당사국은 의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UN헌장과 일치하는 적절한 노력을 행하며 그러한 조치들을 다른 모든 당사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 이 의정서의 목적 및 원칙의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행위에 다른 모든 당사국이 관심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남극조약협약당사국은 남극환경 및 이에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의 보호를 촉진하고 이 의정서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남극조약 제 7조에 따라 수행될 감시원에³³⁾ 의한 조사를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조사를 수행하는 감시원과 충분히 협력하여야 하며, 조사를 수행하는 동안 이 의정서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보존기록뿐 아니라 남극조약 제 7조제 3항에 의하여 조사대상이 되는 기지의 모든 부분·설치물·장비·선박 및 항공기에 대하여 감시원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감시원에 의한 조사보고서는 그 보고 대상이 되는 기지·설치물·장비·선박 및 항공기가 소속된 당사국에 송부된다. 그러한 당사국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주어진 후에 보고서 및 그에 대한 의견서는 모든 당사국과 위원회에 배포되고 차기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에서 심의되며 그 후에는 공개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3) 여기서 감시원이라 함은 남극조약협약당사국이 자국민중에서 지명한 감시원,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에 의하여 확립되는 절차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에서 지명된 감시원 등을 말한다; 동 의정서 제 14조 제 2항.

(7) 비상계획의 수립의무

각 당사국은 남극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긴급사태발생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즉 남극조약지역에서의 환경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남극조약지역 내에서 과학적 연구계획, 관광 및 남극조약 제7조제5항에 따라 사전통고를 요하는 그 밖의 정부 및 비정부 활동 그리고 이와 연관된 보급지원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조치의 제공, 남극환경 및 이에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에 잠재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계획의 수립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비상계획의 작성과 이행에 있어서 협력하며 환경비상사태의 즉각적인 통고 및 협조적 대응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남극환경 및 이에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의 포괄적 보호를 위한 이 의정서의 목적과 합치하도록 남극조약지역에서 일어나고 이 의정서의 대상이 되는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관련한 규칙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칙과 절차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채택된 부속서에 포함되어 있다.

(8) 연례보고 제출의무

각 당사국은 의정서의 제13조 제3항에 따른 통보, 회람과 교환이 요구되는 정보 및 제15조에 따른 비상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연차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동 보고서는 모든 당사국과 환경보호위원회 및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 배포하여야 한다.

(9) 책임배상과 분쟁해결절차의 준수

남극에서의 활동으로 인하여 환경훼손이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에 관한 부속의 제정을 위한 논의가 ATCM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배

상책임에 관한 부속서의 채택에 대비하여 남극환경을 훼손하는 활동에 대한 배상책임 규칙과 절차에 관한 법률적 대응방안으로 수립하고 남극조약체제의 시행을 위한 국내입법조치에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각 당사국은 의정서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해결방법의 선택을 위해 협의하여야 하며 각 당사국은 의정서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가입시에 어느 때라도 국제사법법원과 중재법정의 하나 이상의 분쟁해결절차를 서면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절차에 관하여 분쟁당사자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중재법원에 당해 분쟁의 해결을 부탁하여야 한다.

제 3 절 남극물개보존에 관한 협약(CCAS)

1. 협약의 체결배경

남극물개보존협약(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Seals)은 1964년 벨지움에서 개최된 제3차 남극조약협회의에서 제기되어 협의당사국들은 남극의 자연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자국민의 물개포획을 규제하기로 합의하였다.³⁴⁾ 이어 1966년 제4차 협의회에서 남극물개포획기의 자발적 규제를 위한 임시지침이 권고문형식으로 채택되었고, 이를 근간으로 1972년 영국의 런던에서 동 협약이 체결되었다.

2. 협약의 주요내용

남극조약체제 원서명국 12개국의 서명과 이들 중 10개국(뉴질랜드, 호주제외)의 비준을 얻어 1978년 발효된 이 협약의 적용대상지역은 남극조약과 마찬가지로 남위 60도 이남이지만 실질적 적용지역은 남위 60도 이남 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즉 동 협약의 제5조 7항은 체약당사국들로

34) B. A. Boczek, The protection of the Antarctic Ecosystem: A Study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 13, No. 3, 1983, pp.347~425.

하여금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남위 60도 이북에서 물개를 살상하거나 포획하는 자국민, 자국의 관할하에 있는 선박 등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남방꼬끼리물개, 레오파드물개, 웨델물개, 크랩이더물개, 로스물개, 남빙털물개 등 6개 종류의 물개에 대해 포획허용한도, 포획시기, 포획지역, 포획방법별로 규제하고 있다.

동 협약은 위원회 형식으로 효과적인 조사체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기 위한 어떠한 항구적인 강제기구도 설립되어 있지 않다.³⁵⁾

3. 협약상의 국가의무사항

남극물개보존협약의 제2조에 따라 각각의 체약당사국은 협약상에 기재된 물개의 종류에 대하여는 협약상의 조건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살상하거나 포획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크랩이더물개, 레오파드물개, 웨델물개 등에 대하여는 연간 포획한도를 정하여 포획을 허용하고 있으나 로스물개, 남극털물개 및 남극꼬끼리물개 등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허가제도는 과학적 연구, 사람을 위하여 불가피한 음식, 그리고 교육기관 및 박물관의 표본을 위한 물개의 포획을 허용하고 있다.

제 4 절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CCAMLR)

1. 조약성립의 배경

1970년대 중반 이후 여러 국가들에 의한 남극대륙 및 주변해역의 적극적인 과학탐사로 물개 이외의 남극생물자원에 대한 상업적 개발가능성은 남극조약협약의 당사국들의 중요한 관심사로 등장하게 되었다.

남극해양생물자원 중 특히 크릴새우의 상업적 개발에 대한 압력은 남극해양생태계를 위태롭게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가중시켜왔다. 이러한

35) S.K.N. Blay, *New Trends in the Protection of the Antarctic Environment : the 1991 Madrid Protocol*, A.J.I.L. Vol. 86(1992), p.381.

상황에서 처음부터 남극환경보호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인식했던 남극 조약당사국들은 해양생물자원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해 왔으며 남극조약 체제 제9조 1항(f)의 규정으로부터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간주해 왔다. 이에 따라 남극해에서의 해양생물자원개발에 대한 시도가 과열되어 어업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정을 교섭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남극생물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체제형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75년 제8차 남극조약협의회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 1980년 9월 오스트레일리아의 캔버라에서 당시 남극조약협의당사국 13개국과 서독 및 동독 등 15개국에 의해 남극생물자원보존협약(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이 채택되었다.³⁶⁾

우리나라는 1985년 4월에 CCAMLR에 가입하였으며 동년 11월에는 보존위원회 회원국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2. 조약의 운영

CCAMLR는 2년마다 비공개로 회의를 개최하는 ATCP 제9차 회의의 결정에 따라 1977년부터 1980년까지 수차례 ATCP 특별회의를 열어 1980년 5월 20일 CCAMLR를 채택하였다. 1982년 4월 7일 발효된 CCAMLR의 원서명국으로 ATCP 12개의 남극조약체제 원서명국과 폴란드, 서독, 동독이 있다. 국제기구의 가입자격 여부에 관한 논란 끝에 CAMLR 당사국이 구성하고 있는 국제기구는 가입이 가능하다고 결정을 내리고 EC가 1982년 4월21일 CCAMLR에 가입하였다.

CCAMLR의 운영기구로서 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가 있으며 동 위원회가 각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원회 당사국이 되지 않은 CCAMLR의 가입은 의미가 없다.

36) Ronald F. Frank, The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 13, No. 3, 1983, pp.291~293.

CCAMLR은 과도한 남획으로 인하여 생태계의 기초가 위협받기 전에 해양생물을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에 관한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생물자원의 관리와 보존을 위한 생태계접근방법은 이 협약의 특징적인 원칙으로서 해양생물보존을 위하여 개별적인 생물자원의 보존이 아니라 전체적인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³⁷⁾ 즉 남극생물자원문제의 상호연관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현재 상업적으로 포획되고 있는 어족자원과 여타 생물자원과의 생태학적 관련성을 중시하고, 남극의 생태환경을 보존, 유지하는데 있다.

연안국 관할권에 대한 회의적인 자세, 위원회와 그 자문기관으로서의 과학위원회의 설치, 남극조약체제와의 다면적 관련 등을 포함하고 있는 이 협약의 기본적인 규정들은 주요문제에 대한 경쟁요인 간의 타협의 산물임을 의미한다. 또한 회의결정에 있어서 만장일치제, 국제공동이익의 외면, 생태계에 관한 중요한 정보의 축적을 유도하는 기구창설의 실패, 국가별 어획고 할당제, 강제적 분쟁해결제도 등에 관한 규정의 실패 등과 같은 이 협약의 단점은 남극해양환경보존에 관한 협약상의 내용을 약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협약당사국들이 자제와 협력으로 협약의 목적을 성실히 실천해 나간다면 CCAMLR은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무분별한 상업적 개발을 억제하고 자원보존 및 현장보존의 균형을 달성하는데 있어 국제협력의 모델로서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3. 조약상의 국가의무사항

이 협약은 남극대륙 및 그 주변해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모든 생물자원, 즉 어족, 갑각류 및 조류 등의 합리적 이용을 포함한 적절한 보존에 목적으로 두고 있다. 또 적용대상지역은 남극조약이나 물개보존협약과 달리 광범위하여 남위 60도 이남지역은 물론 남극수렴선까지 확대되어 있다. 이 협약의 가장 큰 특징은 남극생물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적절히 보

37) R. F. Frank, op. cit., p.318.

존하는데 있어 이른바 “생태시스템접근방법(ecosystem approach)”을 원용하였다는 것이다.

이 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이 협약은 남위 60도 이남 해역의 남극해양생물자원과 남극수렵선의 보호와 합리적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및 제2조)
- ② 남극조약체제 협의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우월한 입장이 인정된다.(제5조)
- ③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를 설치하여 각종 조사 및 보존조치를 취한다.(제7조 및 제9조)
- ④ 협약채택회의에 참가한 각 체약당사국은 보존위원회의 회원국이 되며 추후 가입국은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어획활동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보존위원회의 회원국이 될 자격이 있다.
- ⑤ 협약 비당사국의 국민 또는 선박의 활동이 조약의 목적수행을 저해할 때에는 그 국가의 주의를 환기하여야 한다. 협약당사국의 그와 같은 활동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제10조)
- ⑥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약의 제 규정과 보존위원회가 채택한 모든 조치의 준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21조)
- ⑦ 이 협약 목적의 추진과 협약규정준수의 확보를 위하여 감시 및 검사제도를 수립한다.(제24조)

제 5 절 남극동식물군의 보존을 위한 합의규칙

1. 합의규칙의 성립배경

남극환경보호에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다고 자임해온 ATCP는 SCAR에 의하여 고무되어 남극의 동물군과 식물군의 보존을 위한 규칙제정에 전념하였다. 그 결과 1961년 제1차 ATCM에서 이에 관한 임시지침이 공포되었으며 1964년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3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는 ‘남극의 동물군과 식물군의 보존을 위한 합의규칙’을 채택하였다.

이 합의규칙은 남극조약협약 당사국회의가 남극의 환경보호에 관하여 취한 최초의 권고로서 이 합의규칙은 명령적 문언을 충분히 갖춘 조약형태로 작성되었다. 이에 따라 이 합의규칙을 남극조약체제의 한 구성요소가 되었다.

동 합의규칙은 특별보호지역 및 특별 과학적 관심지역을 지정하여 독특한 환경보존제도를 유지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다. 동 합의규칙에 의하면 남극 고유의 포유동물이나 조류를 살상·포획·학대하는 행위나 그러한 행위의 시도를 금지한다. 합의규칙 부속서A에 열거된 고유의 포유동물과 조류는 '특별보호생물'로서 지정되어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또한 일정지역의 독특한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생태학적 관심을 갖는 구역에 특별한 지위가 부여되고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2. 합의규칙의 주요내용

합의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합의규칙 前文은 남극조약체제지역을 특별보존지역(special conservation Area : SCA)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합의규칙은 남극육지지역에만 적용된다.³⁸⁾
- ② 합의규칙은 허가가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극고유의 포유동물이나 조류를 살상, 포획, 방해하는 행위나 그러한 행위의 시도를 금지한다.(제6조 제1항, 제2항)
- ③ 합의규칙 부속서A에 열거된 고유의 포유동물과 조류는 특별보호생물(Specially Protected Species : SPS)로 지정되어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제6조 제5항) 각 참가국정부는 그러한 생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해안과 빙봉에 인접한 해안의 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한 모든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제7조 제102항)
- ④ 일정 구역의 독특한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생태학적 관심을 갖는 구역은 특별보호구역(Specially Protected Area : SPA)으로 지정되어 각국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제8조)

38) Agreed Measures, Art.1, para.2.

- ⑤ 남극지역의 일정 장소는 동식물보존과는 다른 이유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1975년 특별 과학적 관심지역(Site of Special Scientific Interest : SSSI)으로 지정되었다. 유해한 간섭으로부터 장기간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구역은 연구기획에만 이용되도록 지정되었다.

남극동식물보호에 관한 합의규칙은 진보적인 환경보존제도로써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각국 정부가 고유의 동물이나 조류의 포획과 같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재판권분쟁문제는 미해결상태로 남겨두고 있다. 따라서 남극조약체제 제8조 재판권에 관한 규정이 합의규칙에도 적용된다.

3. 합의규칙의 국가의무사항

합의규칙에 따른 국가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합의규칙은 허가가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극고유의 포유동물이나 조류를 살상, 포획, 방해하는 행위나 그러한 행위의 시도를 금지하고 있다.³⁹⁾ 또한 합의규칙 부속서A에 열거된 고유의 포유동물과 조류는 특별보호생물(SPS)로 지정되어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⁴⁰⁾ 일정 구역의 독특한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생태학적 관심을 갖는 구역은 특별보호구역(SPA)으로 지정되어 각국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⁴¹⁾ 이외에 남극지역의 일정 장소는 동식물보존과는 다른 이유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1975년 특별 과학적 관심지역(SSSI)으로 지정되었다. 유해한 간섭으로부터 장기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이들 구역은 연구에만 이용되도록 지정되었다.

39) 제6조 제1항, 제2항

40) 제6조 제5항

41) 제8조

제 3 장 남극조약의 운영체제와 문제점

제 1 절 남극조약협약의당사국 회의(ATCM)

1. 남극조약협약의당사국(ATCP)

남극조약은 1961년 발효된 이래 지금까지 12개 원초서명국 이외에 모두 30개국에 의해 추가로 서명되었다. 그러나 조약운영의 실질적인 협의 권한(consultative power)은 조약 제9조에 의해 12개 원초서명국과 “과학기지 설치 또는 과학탐사대 파견과 같은 실질적인 남극과학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서명국에게만 부여된다. 바로 이들 국가들이 남극조약협약의당사국(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Parties)으로 지칭되며 이들 국가만이 조약규정에 의해 매년 개최되는 정례회의에 참가하여 새로운 조치들을 채택한다. 남극에 있어 변화하는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유연성을 제공하는 새로운 조치의 채택에는 협의당사국의 만장일치가 요구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체결된 조약으로는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존협약과 남극물개보존협약이 있다.

남극조약 자체에는 핵실험 및 방사성폐기물의처분을 금지한 것 이외에는 남극지역의 환경보호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단지 남극 조약 제9조는 특별동이가 가능한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남극지역에서의 생물자원의 보존과 보호’를 열거하고 있다. ATCP는 남극생물자원의 보호, 보존을 제9조1항(f)에서 도출되는 그들의 의무로 보고 있으며, 이 규정을 남극환경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조치의 근거로 확대해석하고 있다.

남극조약당사국들은 남극조약이 남극을 보존하기 위한 협력을 승인하고 또 요구하는 것으로 일관하여 해석해 왔다. 남극환경에 관한 협의당사국의 가장 광범하고도 명시적인 진술은 1977년 제9차 협의회의의 권고IX-5에 포함되어 있다. 이 권고에서 ATCPs는 남극환경보호에 관한 그들의 일차적 책임을 인정하고 남극환경을 변경시킬 수 있는 일단의 활

동을 삼갈 것이라고 선언하였다.⁴²⁾

남극조약 제9조 제1항(f)의 확장발전에 의하여 또는 “본 조약체제의 원칙과 목적을 조장”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ATCPs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였다.

원초 서명국 12개국을 제외한 31개 일반 서명국 중 현재까지 협의당사국 지위를 획득한 국가는 14개국뿐이며 우리나라는 1989년 10월에 협의당사국지위를 획득하였다.

2.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의 권고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는 1961년 오스트레일리아의 캔버라에서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가 처음으로 열린 이래로 1995년까지 남극조약협의당사국에 의해 취해진 정책결정으로서 만장일치에 의한 권고안을 채택하였다. 동 권고는 남극조약협의당사국에게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를 창설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모든 남극조약협의당사국 정부가 특별하게 승인하지 아니한 여러 권고들의 효력이 불확실하게 남아 있으며 이들 권고를 채택한 후 남극조약의 당사국이 된 국가와 이들 권고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지 아니한 국가들에 대한 권고의 효과도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다.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권고안은 입법기관이 따로 없는 남극조약체제에서의 중요한 입법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⁴³⁾ 기존의 남극관련조약은 이 권고안이 거듭되며 내용을 발전시켜온 것으로 각 당사국들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 조약이나 협약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권고의 법률적 성격이 불명확함에도 그 동안 ATCM의 권고가 남극조약체제의 발전에 기여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42) R. B. Bilder, The present legal and political situation in Antarctica, 『The new nationalism and the use of common spaces: issues in marine pollution and the exploitation of Antarctica』, Jonathan I. Charney (ed.), 1982. p.196.

43) 남극지역에서 적용되는 국제사회의 범규범은 기존의 남극관련조약들과 매년 개최되는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의 권고안이 전부이다.

하지만 권고의 법적 성격에 대한 불명확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5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19차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에서는 권고를 조치(Measures), 결정(Decisions), 결의(Resolution)로 구분하기로 합의하였다.

조치는 모든 남극조약협약당사국에 의한 승인된 것으로서 남극조약 제 9조에 따라 승인을 위해 모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고로서 의도된 것이다. 조치는 권고의 원래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⁴⁾

결정은 조직내부의 문제에 관한 것으로서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에서 자신들이 채택한 합의내용을 시행하는 것이다.

결의는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서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에 의해서 채택된 권고적인 성질의 것이다.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의 정책결정 방식으로서 조치, 결정 그리고 결의는 모두 만장일치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적 구속력의 강도와 관계없이 합의사항에 대한 준수가 自同性의 原則에도 부합하며 국제사회에서 기대되는 것이기도 하다. 여하간 만장일치의 요건으로 인하여 모든 ATCP들은 소위 거부권(veto power)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만큼 새로운 시대의 국제사회 정책결정방식으로는 뒤쳐져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국제사회의 조직화와 남극지역의 환경보호에 대한 국제적 관심의 고조 및 공감대의 형성을 고려한다면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방식의 도입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3. 권고 및 조치 등의 내용분류

1961년부터 1995년까지 이루어진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의 권고안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의 의제선정, 회의개최시기, 개최장소 및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권고사항이다.

둘째, 남극지역에서의 과학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보급, 통신,

44) 권문상 외, 우리나라 남극환경보전정책수립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45권 제1호(2000), 13면.

우편, 기상, 항공기의 사용, 대피소의 지정, 긴급구조, 기지의 설치 등 국제적 협력을 위한 권고사항이다.

셋째, 각 회기마다에 특별히 발생하는 여러 사항, 예컨대 항공기 사고, 기념우표의 발행, 남극조약기념식 등에 관한 권고이다.

넷째, 남극환경보호 및 자원의 보존을 위한 제반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이 내용이 권고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1995년 이후 조치, 결정, 결의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조치에 관련된 사항은 대부분이 관리계획과 보호지역에 관한 것이며, 결정은 내부조직상의 문제에 관한 사항, 결의는 주로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⁴⁵⁾

4. 1999년 ATCM의 주요 논의사항

제23차 ATCM은 1999년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페루의 리마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의 참가한 국가 및 국제기구로는 협의당사국 27개국과 12개 비협의당사국을 비롯하여 남극조약체제의 구성요소(observer)로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남극과학위원회(SCAR), 남극국별사업자운영위원회(COMNAP) 등 3개 기구와 6개의 기타 관련 국제기구가⁴⁶⁾ 전문가로서 참가하였다.

동 회의의 주요 의제로는 남극조약체제의 운영보고, 환경보호위원회의 보고, 의정서의 준수, 의정서 제6조 관련 당국간 협력, 비상대응조치 및 비상계획, 의정서 제16조 관련 배상책임문제, 남극내 활동의 안전문제, 북극과 남극에서의 진전상황향의 유관성, 남극지역에서의 관광 및 NGO의 활동, 남극조약하의 사찰, 과학, 운영, 교육, 정보교환 등이다.⁴⁷⁾

제23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최우선과제로 논의된 것은 배상책임부속서의 제정문제로서 손해의 개념, 운영자의 개념, 과학활동에 대한

45) Christopher C. Joyner, *Governing the Frozen Commons : the Antarctic Regim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1998, pp.62~3.

46) 남극·남빙양연합(ASOC), 국제자연보존연맹(IUCN), 국제남극관광협회(IAATO), 세계기상기구(WMO), 국제수로기구(IHO), 국제해사기구(IMO) 등의 분야별 전문 국제기관들이다.

47) 외교통상부, 『제23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참가보고서』, 1999. 7. 1~27면.

우선적 대우, 배상책임의 개념, 제3자의 개입 등에 관한 각국간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논의가 전개되었다. 제23차 ATCM에서 조치는 특별 과학적 관심지역의 관리계획에 대한 규정 하나가 채택되었으며, 결정은 환경보호위원회의 웹사이트에 대한 규정과 남극선박 및 관련활동에 대한 지침에 관한 2개가 채택되었다. 결의는 남극지역에서의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지침 등 6개가 채택되었다.

제 2 절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

1. 남극연구과학위원회의 설치

흔히 SCAR라고 불리는 남극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on Antarctic Research)는 국제과학연맹이사회(International Council of Scientific Union: ICSU)가 1957~58년 주관한 국제지구물리관측년 행사 이후 국제적으로 남극관련 연구활동을 주도·조정·장려하기 위하여 ICSU 산하기관으로 1958년 2월 창설되었다.

SCAR의 가입국은 현재 32개국이며 이들은 25개의 정회원국과 7개의 준회원국으로 나뉘어져 있다. 정회원국은 대부분 남극연구활동이 활발한 남극조약협의 당사국이며 준회원국은 페루를 비롯한 7개국이다. SCAR의 사무국은 현재 영국 캠브릿지(Cambridge)에 소재한 스코트극지연구소(Scott Polar Research Institute: SPRI)내에 있으며 남극조약체제 안에서 유일한 비정부간 국제기구(NGO)로서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7년 12월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1990년 7월에는 SCAR의 정회원국이 되었다.

2. 남극연구과학위원회의 기능

SCAR 창설 이후 지속적인 남극연구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치적 기구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1959년 12월 남극조약이 체결되었으며 남극조약 발효 이후 남극에서의 과학연구와 자연환경보전 등에 관련된 중요한 과학적 관심사에 대해 남극조약협의 당사국에 자문하거나 제안, 권고

등을 채택하게 함으로써 남극조약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SCAR는 남극에서의 과학연구분야를 거의 독점하고 있으며 중요한 문제에 관한 권고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제 3 절 남극조약체제의 문제점

1. 상설사무국의 설치문제

남극조약체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상설사무국설치문제가 1987년의 제14차 ATCP회의에서 제기되었다. 미국, 영국, 호주, 중국 등 다수 국가는 조약당사국수의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회의준비 및 주관, 일관성 있는 조약문서 및 자료의 관리, 배포, 타 국제기구와의 정기적인 연락기능 등의 수행을 위한 독립적인 상설 사무국의 설립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와 프랑스는 남극조약이 국가의 주권적 이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영토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해당 국가에 부여된 권한은 사무국과 같은 행정기구에 위임될 수 없고, 또한 상설사무국이 설립될 경우 사무국이 소재하게 되는 특정국에 대한 남극문제편중현상과 모든 협의당사국의견의 공평한 반영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정치적 고려와 문서의 준비, 배포, 보존과 회의준비 등 행정업무는 현 체제 아래에서도 별 문제없이 원만히 운영되어 왔으며 사무국 설치시 각 당사국의 비용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행정적 고려에서 사무국설치에 대하여 반대하였다.

2. 인간에 의한 남극오염문제

14차 회의에서는 남극의 특정 지역에 각국의 기지가 밀집되는 현상과 그에 따른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며 특히 남극반도 및 킹 조지섬에 기지가 밀집되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 과학탐사활동기회의 제한문제 등이 야기되었음을 지적하였다.

ATCP는 특정지역에 대한 기지밀집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지설치 예정국은 SCAR와 협의하여 기지선정에 관한 자문을 받을 것을 권고하

였다. 기지설치국은 남극환경오염 평가를 위한 공동기준을 마련하고 과학탐사를 위한 굴착행위(drilling)시 ATCP가 채택한 기준에 따라 작업할 것을 합의하였다.

15차 회의에서는 남극기지증가와 과학탐사활동의 증대에 따른 폐기물처리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미국, 호주 등은 남극에 대한 인간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의 수립을 제의하였다.

이미 13차 회의에서 SCAR에서 수립한 폐기물처리문제의 세부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SCAR권고에 따라 남극에서의 폐기물을 생활하수, 폐유를 포함한 액체 폐기물, 연소성 고체폐기물, 단순 고체폐기물, 방사성 폐기물 등 5개군으로 분류하여 이들에 대한 약품처리·소각·회수계획을 매년 사전에 수립, 시행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각국 대표들은 남극기지에서의 폐기물처리시 이제까지 해왔던 소각(incineration)방법을 지양하고 방사성물질, 전기배터리, 액체 및 고체폐기물, 중금속함유 폐기물은 반드시 남극으로부터 제거되어 본국으로 운송하는 회수처리방법에 합의하였다.

15차 회의에서는 또한 미국에 의해 남극조약적용지역(남위 60도 이남)을 國際海事機構(IMO)의 규정에 따라 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유류오염 및 선박으로부터의 고의적인 폐기물배출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제의가 있었다. 각국 대표들은 미국의 제의에 동의하여 남극해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특히 유류를 운송하는 선박은 해상사고에 대비하여 오염제거비상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음식물 및 선박하수의 남극대륙 또는 빙붕으로부터 12마일 이내 배출을 금지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남극해양오염방지를 위해 남극운항이 가능한 하절기 동안 해양오염방지 관련 국제협약⁴⁸⁾상의 조치를 준수하고 남극조약당사국 중 동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조속한 시일내에 가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48) 1972년 『폐기물 및 여타물질 放棄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런던뎀평방지협약),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 1974년 『해상인명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및 의정서(SOLAS), 1978년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 1966년 『적하물수선에 관한 국제협약』(Load-Line Convention), 1972년 해상충돌방지를 위한 국제규제에 관한 협약(COLREGS) 등의 국제협약을 말한다.

3. 민간의 남극관광 및 탐사에 따른 환경오염문제

14차 ATCP회의에서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민간단체에 의한 남극관광 및 비정부조직에 의한 남극탐사활동의 영향을 논의한 결과 민간에 의한 남극관광과 비정부기구에 의한 탐사활동은 이들 단체가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지역을 자주 택함으로써 동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및 파괴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으며 과거 협의당사국회의가 채택한 민간관광 및 비정부조직에 의한 남극탐사활동규제조치는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그 내용도 복잡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민간관광 및 비정부조직에 의한 남극탐사활동은 결국 해당 관련국에 의하여 철저히 다루어져야 하며, 차기 회의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1996년 남극과학, 관광 및 보존법을 통하여 미국인과 미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운송수단에 의한 남극관광을 규제하고 있다.

4. 남극에서의 광물자원개발문제

1989년 15차 ATCP회의에서는 프랑스와 호주가 남극을 '자연보존지역'(wilderness reserve)으로 지정하여 자원탐사 및 관광 등 남극에서의 증대된 인간활동을 보다 엄격히 규제할 협약 또는 의정서형태의 남극환경 및 부속생태계보호를 위한 포괄적 체제의 확립을 긴급의제로서 공동 제안하였다. 프랑스와 호주의 공동제안은 과거 ACTP회의에서 권고형식으로 채택되었던 환경보호조치와 비교하여 그 규제조치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서 남극해양생물자원개발의 엄격한 제한, 남극활동의 연구목적 제한, 광물자원개발의 동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프랑스와 호주의 공동제안은 모든 형태의 남극광물자원개발 및 탐사활동을 금지함으로써 비록 엄격한 제한이 따르기는 하지만 남극의 광물자원에 대한 탐사를 허용하는 『남극광물자원활동규제협약』과 상치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⁴⁹⁾

49) 소위 웰링턴 협약이라고 불리는 동 협약은 1988년 6월 가서명되었고 20개 협의당사국 중에서 16개 당사국의 비준으로 발효되도록 되어있었다. 동 협약은 남극지역에

이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남극광물자원개발에 관심을 두어 온 영국, 미국, 일본 등은 포괄적 남극환경보호조치제정에 따른 『남극광물자원활동규제협약』의 사문화를 우려하고 미해결로 남아있는 동 협약 제8조7항(광물자원개발에 따른 남극환경훼손배상절차)의 우선 타결을 주장하였다. 특히 영국대표는 『남극광물자원활동규제협약』자체가 남극환경보호를 주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자국정부는 1989년 동 협약을 비준할 목적으로 남극광물자원개발과 관련된 국내입법을 완료한 바 있다고 주장하였다.

남극광물자원개발에 관한 논의는 1991년 채택된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의 채택으로 종결되었다. 동의정서는 의정서 발효 후 남극지역에서의 모든 예상되는 탐험, 또는 상업적 자연자원의 개발을 50년간 금지(50-year window)하였다. 그리고 1998년 동 의정서가 발효함으로써 남극지역에서의 광물자원개발문제는 2047년에 가서야 개발여부에 대한 재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⁵⁰⁾ 기존의 남극광물자원개발협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대한 탐사에는 모든 협의당사국의 동의를 요구하는 만장일치제를 두고 있었다; Barry E. Carter · Phillip R. Trimble, *International Law*, 1995, p.1078.

50) 남극에서의 자연자원개발을 금지하는 동 규정의 폐지는 현재의 26개 협의당사국중 3분의2가 찬성하여야 하며 50년의 금지기간 이전에 동 규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남극조약당사국이 찬성하여야 한다; *Ibid.*, p.1079.

제 3 장 남극조약의 운영체제와 문제점

제 4 장 주요국가의 국내입법분석

제 1 절 미국의 남극보호법

1. 남극관련입법

미국은 1978년 남극보존법(Antarctic Conservation Act of 1978)과 이를 개정한 1996년 남극환경보호법(Antarctic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of 1996)과 1996년 남극과학·관광·보존법(Antarctic Science, Tourism, and Conservation Act of 1996), 1984년 남극해양생물자원협약법(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onvention Act of 1984) 및 1990년 남극보호법(Antarctic Protection Act of 1990), 선박에 의한 오염방지법을 통해 남극관련 미국민의 활동을 규율하고 있다.

미국의 남극환경보호를 위한 법적 기초는 1978년 남극보존법을 통하여 이루어져 있다. 동법은 남극조약 및 제3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에서 채택된 남극동식물군의 보존을 위한 합의규칙이 남극의 과학조사자유와 국제적 협력의 지속에 대한 확고한 기초를 수립하였음을 평가하고 남극동식물의 연구, 그들의 혹독한 자연환경에의 적응 및 자연과의 상호관계는 인류에게 특별한 과학적 중요성을 갖는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배경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동법의 입법목적은 남극조약, 남극동식물군의 보존을 위한 합의규칙, ATCM의 권고VIII-3 따라 남극동식물군 및 당해 동식물이 근거하고 있는 환경생태계의 보존과 보호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다.

1978년의 남극조약법 제정 이후 이루어진 남극조약체제의 발전을 반영하기 위하여 1996년 남극환경보호법과 1996년 남극과학, 관광 및 보존법이 제정되었다. 1996년에 입법된 두 개의 법률은 남극환경의 종합적 보호, 국제적 협력 등을 위한 남극조약의정서 채택에 따라 1978년의 남극보존법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개정하고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84년 남극해양생물자원협약법은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협약은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호 및 보존에 필요한 국제적 체계를 수립하고 법적 의무를 창설하였으며, 협약은 개별 서식물 및 종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리고 남극해양생태계 전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기준을 포함하여 남극해양생물자원의 관리에 대한 혁신적인 생태계 접근방식을 채택하여 미국의 환경 및 자원관리에 관한 관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평화적 국제협력지역으로서 남극의 유지라는 미국의 장기적인 법적·정치적 목표에 중대한 기여를 의미한다는 정책적 배경에서 입법이 이루어 졌다. 즉 미국의 남극해양생물자원에 대한 기초적이며 감독되어진 연구프로그램은 협약목적의 효율적인 이행에 대한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며 미국은 남극의 빙하지역에 있어서 쇄빙선의 효과적인 운행을 위한 선단의 개발과 유지에 중대한 안보적, 경제적, 환경적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적 권한을 제공하기 위하여 동법이 제정되었다.

1990년 남극보호법은 남극광물자원협약의 체결에 즈음하여 미국 내에서 미리 이에 대비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한 것으로 남극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남극광물자원활동으로서 탐사와 개발 및 견본탐사를 금지하고 모든 남극자원활동에 대한 영구적인 금지와 남극 및 남극의 독립적인 생태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협약에 미국이 즉시 적극적인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동법은 남극광물자원협약의 효력상실에도 불구하고 1996년 법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한 일부규정을 제외하고 그대로 효력을 갖고 있다.

1996년 남극환경보호법에 의한 1978년 남극보존법의 개정 내용은 입법목적과 정의규정의 확대, 금지행위의 확대,⁵¹⁾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1969년의 국가환경정책법 적용,⁵²⁾ 허가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인정,⁵³⁾ 감독관의 환경보호에 관한 규제권한부

51) Sec. 103

52)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42 U.S.C. 4321 et seq.)

53) Sec. 105

여,⁵⁴⁾ 동법의 이전에 제정된 법률로서 동법과 양립할 수 있는 법규의 내용에 대하여 동법의 제6조에 의하여 폐지되지 않는 한 유효하도록 하는 규정에⁵⁵⁾ 관한 것이다.

그리고 1996년 남극과학, 관광 및 보존법은 환경평가에 관한 남극의 정서 제1부속서의 내용을 국내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 남극보호법제의 주요내용

(1)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① 적용범위

남극보존법은 적용범위로서 “미국”이라 함은 연방구성주, 컬럼비아특별구, 푸에르토리코공화국, 미국령 사모아, 버진아일랜드, 괌, 북마리아나 정부를 포함하는 남태평양신탁지역 등을 말하며 “미국시민”이라 함은 미국 국민 또는 시민인 개인, 미국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조직된 회사, 조합, 신탁, 협회 또는 기타 법적 실체, 연방정부 또는 주 정부의 부처 또는 기구 및 당해 기구의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의 적용배제대상으로서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 국적의 개인, 외국법에 따라 설립되고 조직된 회사, 조합, 신탁, 협회, 또는 기타의 법적 실체, 외국의 정부부처, 또는 기구 및 그러한 기구의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을 말한다.

남극해양생물자원협약법에서는 당해 선박이 1958년 공해협약의 제5조에 따라 외국의 국적이 부여되지 않은 한 제46편의 제121장에 따른 등록을 한 선박 또는 이 편외의 제123장에 규정된 바에 포함되는 선박,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i) 미국 또는 미국의 영역, 연방 또는 미국연방의 재산, (ii) 주 또는 주의 정치적 하위 부서, (iii) 미국의 시민 또는 국민, (iv) 연방 또는 주법, 컬럼비아특별구 또는 미국의 영역의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또는 연방재산에 의하여 소유된 선박, 과거에 미국법에

54) Sec. 106

55) Sec. 107

따른 등록을 한 선박으로서 1958년 공해협약의 제5조에 따라 외국국적이 부여되었는가와 관계없이 미국시민이 아닌 개인에게 매도되거나 외국에 등록하거나 외국선적을 갖거나 한 선박을 미국선박으로 정의하고 동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관할권에 종속되는 선박으로서 1958년 공해협약의 제6조의 제(2)항에 따라 국적이 없는 선박 또는 국적이 없는 선박과 유사한 선박을 포함하고 있다.⁵⁶⁾

② 용어의 정의

남극보존법에 있어서 “합의규칙”이라 함은 제3차 ATCM에서 협의당사국들의 승인을 위해 권고되었으며, 남극조약의 제IX(1)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는 남극동식물군의 보존을 위한 합의규칙을 말한다. 또한 “사무총장”이라 함은 국립과학재단의 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에 의하여 임명된 과학재단의 임원 및 직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그 외에 “토착조류,” “토착포유류,” “토착식물,” “오염원,” “특별과학적관심지역,” “특별보호지역,” “특별보호종” 등에 관하여는 사무총장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1980년 호주의 캔버라에서 체결되고 1982년 4월 7일 미국에 효력을 발생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을 국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법으로서 남극해양생물자원협약법에서는 “남극수렵선,” “남극해양생물자원,” “위원회,” “어획” 및 “어획 또는 기타 관련된 활동,” 등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③ 남극조약체제의 시행을 위한 권한의 행사

남극보존법 및 동법에 따른 규칙 또는 발급된 허가의 규정은 국립과학재단사무총장, 재무장관, 상무장관, 내무장관 및 해안경비대를 소관하는 부의 장관에 의하여 시행된다. 사무총장 및 관계부처 장관은 당해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有償性的 원칙에 근거한 계약을 통하여 연방 또는 주 정부의 타부처 인력, 서비스,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사무총장, 재무장관, 상무장관, 내무장관, 해안경비대를 소관하는 부처의 장관 또는 사무총장 또는 동법의 규정에 따른 계약을 이행하는 연방

56) 16 USCA §2432 (11)

또는 주 정부부처의 장에 의하여 남극보전법 및 동법에 의한 규칙 또는 동법에 의하여 발급된 허가규정을 시행할 권한이 부여된 당국자는 미국의 권한하에 발부된 명령, 영장, 소환장 또는 기타의 수속을 집행할 수 있고, 당사자가 이 편의 제2403(a)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영장 없이 사람, 장소 또는 수송수단에 대한 수색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이 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하였거나 하려고 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영장 없이 증거물에 대한 압수를 할 수 있다.

또한 법규정의 시행에 관련된 문제에 관련된 조사, 선서의 시행, 증명서의 접수 등을 할 수 있으며, 미국으로 반입되거나 미국에서 반출되는 화물, 수화물, 또는 기타 물품 및 서류 등 모든 소지품에 대한 조사 및 조사를 위한 구금을 할 수 있고, 체포되어야 하는 자가 담당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당해 행위와 관련하여 영장을 제시하거나 영장 없이 당사자를 체포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시민과 관련하여 남극여행의 사전신고 제출을 포함한 남극조약 제7조의 제5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규칙은 국무장관이 제정하며,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법에서는 통상부 장관이 국무장관, 해안경비대를 소관하는 부처의 장, 관계 연방부처의 장과 협의한 후에 이 법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규칙을 공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⁵⁷⁾ 상무성을 주무부처로 규정하고 있다.

(2) 남극지역활동의 허가

① 허가권자

국립과학재단의 사무총장은 남극보전법의 제2403(a)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허용하는 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57) 16 USCA Sec. 2436 and Sec 2439; 하지만 보존조치와 감시 및 검사체제에 관하여는 국무장관에게 주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16 USCA 2434(a)

② 허가신청

남극보전법에 따른 허가신청은 사무총장이 정한 규칙에 의하여 일정한 방식과 형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일정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허가를 목적으로 제출된 각각의 신청에 대한 통지를 연방관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당해 통지는 통지의 공표 후 30일 이내에 이해관계당사자에 의하여 당해 신청에 대한 서면자료, 검토 또는 심사의견의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청의 일부로서 사무총장에 의하여 수합된 정보는 공공기록문제로서 일반에 공개되어야 한다.

사무총장이 해양포유류인 토착포유류, 1973년 멸종위험의 동식물법에 따른 멸종위험의 종 또는 위협받는 종인 토착포유류, 토착조류, 토착식물, 철새조약법에 따라 보호되는 토착조류 등에 관련하여 취해지는 조치 5를 위한 권한을 요청하는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사무총장은 관계장관으로서 상무부장관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신청서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허가의 발급

남극보전법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접수한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또는 동법의 규정을 적용할 신청이 있는 경우에 당해 항의 적용 가능한 요건이 수집되어진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사무총장은 허가를 발급하거나 거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허가의 발급 또는 거부 이후 10일 이내에 사무총장은 연방관보에 발급 또는 거부의 통지를 게재하여야 한다.

④ 허가의 조건

남극조약법에 의하여 발급되는 허가는 적용가능한 경우 (i) 허가가 적용되는 토착포유류, 토착 조류, 또는 토착식물의 숫자와 종류, (ii) 당해 포유류 또는 조류가 포획 또는 채취, 운송, 운반, 배송이 허용되어진 경우, 당해 행위가 취해지는 방식 및 당해 포획 등이 발생하는 지역, (iii) 당해 식물이 채취가 허용된 경우 채취가 이루어지는 지역 및 방법 등을 특정하여야 하며, 당해 허가의 유효기간,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기타 조건 및 당해 허가에 따라 권한이 부여된 조치는 동법의 목적, 기준 및 동법에 의한 규칙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다음의 행위에 대한 권한부여를 위하여 발급된 허가에 사무총장에 의하여 부과된 조건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특별보호종이 아닌 토착포유류 또는 토착조류의 특별보호지역 내가 아닌 남극지역 내에서의 포획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허가는 (i) 과학적 연구 또는 과학적 정보를 위한 견본, 박물관, 동물원 또는 기타 교육적 또는 문화적 연구소를 위한 견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발급될 수 있으며 (ii) 가능한 한 다음 산란기의 순수 자연적 재생산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대체될 수 있는 정도 이하로 토착포유류 또는 토착조류가 포획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종의 다양성 및 남극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특별보호종의 포획에 대한 허가증은 오로지 (i) 당해 포획에 필수적인 과학적 목적이 존재하고, (ii) 당해 허가에 따라 허가되는 행위는 현존하는 자연적 생태계 또는 당해 종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만 발급되어야 한다.

셋째, 특별보호지역에의 출입을 승인하는 허가는 (i) 다른 지역에서는 확보될 수 없으며 당해 출입을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는 불가피한 과학적 목적이 존재하고, 당해 허가에 따라 허용된 행위가 당해 지역의 자연적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만 발급될 수 있으며, (ii) 당해 지역에서 어떠한 육상운행수단의 운영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넷째, 특별한 과학적 관심지역에 대한 출입을 승인하는 허가는 당해 지역에 대하여 정해진 관리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⑤ 사법적 심사

허가신청자는 이 법에 따라 사무총장이 발급한 허가의 조건 또는 당해 허가의 발급거부에 대하여 사법적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한 심사는 허가신청자의 주소지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컬럼비아특별구 연방지방법원, 연방지방법원에 당해 허가가 발급된 후 또는 거부된 후 60일 이내에 심사를 위한 청원을 제출함으로써 개시된다.

⑥ 변경, 정지, 취소

사무총장은 허가가 발급된 이후에 이루어진 규칙의 개정에 일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허가를 이 법의 목적에 일치하도록 하는 조건에 변경이 있는 경우, 허가의 조건, 이 법에 따른 규칙, 이 법의 규정에 대한 위반이 있었던 경우에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발급된 허가에 대하여 변경하거나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사무총장이 동법규정에 따른 허가의 변경, 정지, 또는 취소를 제안한 경우, 허가를 받은 자는 적절한 통지 후에 당해 변경, 정지, 취소와 관련하여 사무총장에 의한 청문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청문이 요구되는 경우 사무총장에 의하여 제안된 행위는 제안된 조치가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에 의해 취하여 진 것이 아닌 한 청문 이후에 사무총장에 의하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당해 청문 이후 사무총장에 의하여 취해진 조치는 동일한 기초 위에서 이 법에 따른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규정된 바와 같이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다.

사무총장에 의한 허가의 변경, 정지 또는 취소의 통지는 사무총장의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방관보에 게재되어야 한다.

(3) 남극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① 금지되는 행위

남극보존법에 의하여 승인되거나 동법 제2404조에 따라 발급된 허가 없이 미국시민이 남극에서 토착포유류 또는 토착 조류를 포획하는 것, 특별보호지역에서 토착식물을 채취하는 것, 남극지역에 남극지역토착종이 아닌 동물이나 식물을 반입하는 것, 특별보호지역 또는 특별 과학적 관심지역에 들어가는 것, 남극지역에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폐기하는 것은 금지된다.⁵⁸⁾

또한 동법에 의하여 승인되거나 동법 제2404조에 따라 발급된 허가 없이 미국시민이나 외국인이 남극에서 포획한 토착포유류 또는 토착조류 또는 특별보호지역 내에서 채취된 토착식물을 보유, 매매, 매매의 제안, 배달, 수령, 운반, 운송 또는 배송 등의 방법에 의하여 행하는 모든 것, 미국 내로 수입, 미국 외로 수출 또는 수출입하고자 시도하는 행위도 금

58) Antarctic Conservation Act, Sec. 2403

지되는 행위이다. 그리고 미국시민이나 외국인이 동법에 따른 규칙을 위반하는 것, 미국시민 여부를 떠나 어떠한 자가 남극보존법의 제2404조에 의하여 발급된 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남극해양생물자원협약의 규정 또는 협약 제9조에 따라 미국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보존조치에 위반하여 어획 또는 이에 관련되는 행위에 종사하는 것, 동 협약의 국내적 시행을 위한 법에 따라 공포된 규칙을 위반하는 것, 남극해양생물자원을 어획한 당사자 또는 어획에 사용된 선박의 국적에 관계없이 협약의 제9조에 따라 미국에 효력을 발생한 보존조치에 위반하여 또는 이 법에 따라 공포된 규칙에 위반하여 어획한 남극해양생물자원(또는 그 일부 또는 果實)이라는 것을 알면서 또는 합리적이라면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배송, 운송, 매매·구매·수입·지출의 제안, 또는 보관, 관리, 소유하는 것, 미국선박 또는 미국의 관할 하에 있는 선박에 미국정부의 권한 있는 직원이 협약, 이 법, 이 법에 따라 공포된 규칙의 이행과 관련하여 수색 또는 감시를 하기 위하여 승선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수색 또는 검사를 수행하는 미국정부의 권한 있는 직원에 대한 공격, 저항, 반대, 방해, 협박 또는 간섭을 하는 것, 금지된 행위에 대한 체포 또는 구금에 저항하는 것, 다른 사람이 이 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알면서 당사자의 체포 또는 구금을 간섭하거나 지체시키거나 방해하는 것 등은 불법이다.⁵⁹⁾

② 예 외

사람의 생명보호를 위한 위급상황 시에 허용된 것이라면 남극보존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하여도 불법이 아니다. 또한 남극보존법은 1978년 10월 28일에 포획되거나 채취된 토착포유류, 토착조류, 또는 토착식물, 배아상태의 포유류, 조류, 식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간적 예외사유로는 1978년 12월 28일로부터 180일 이후에 발생한 동법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와 관련하여 당해 행위에 포함된 토착포유류, 토착조류, 토착식물은 당해 일에 포획 또는 채취되지 않았거나 배아상태가 아니라는 반증 가능한 추정을 인정한다.

59) 16 USCA Sec. 2435

(4) 사무총장의 권한

사무총장은 국무장관 및 다른 관계공무원과 협의 후에 이 법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규칙을 정하여야 한다. 남극보존법의 규정에 따라 정하도록 요구된 규칙으로서 남극 자생이며 남극에 분포되어 있는 각각의 조류의 종, 포유류의 종, 식물의 종과 같은 토착종, 특별 과학적 관심지역, 특별 보호지역, 합의규칙에 따라 미국이 특별보호를 위하여 승인한 토착 포유류 및 조류의 종, 사무총장이 당해 물질이 남극에 반입되는 경우 인간의 건강에 위협을 야기하거나 생물자원 또는 해양생물에 위협이 되거나, 적정한 상태에 피해를 입히거나 남극의 합법적 이용에 방해가 될 것으로 판단하는 오염물질, 남극 내에서 오염물질의 배출이나 폐기를 방지하거나 통제하기 위하여 취해져야 하는 조치, 남극자생종이 아닌 동물 또는 식물로서 남극에의 반입이 금지되거나 허용되는 동물 및 식물, 남극보존법의 위반에 대한 처벌의 배제조치와 관련하여 긴급상황 등을 지정하거나 특정하여야 한다.

또한 적용 가능한 경우 이 법 제2404조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를 위한 조치의 수행에 부수되어 요구되는 모든 통지, 보고, 자진신고 또는 다른 문서의 형식, 내용 및 제출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5) 벌칙규정

① 벌칙의 내용

남극보존법에 따른 청문결과 사무총장에 의하여 동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행하거나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자는 민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민사처벌은 금지된 행위가 고의로 행하여지지 않은 한 각각의 위반에 대하여 5,000달러를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고의행위에 대한 민사처벌의 합계는 각 위반에 대하여 10,000달러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지속적인 위반의 경우 각각의 날은 별개의 범법행위를 구성한다. 민사처벌의 합계는 사무총장에 의하여 서면통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결정된 민사처벌은 사무총장에 의하여 면제되거나 경감될 수 있다.

하지만 남극조약법의 제2403(a)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고의적으로 범하는 경우 당사자는 범법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이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⁶⁰⁾ 10,000달러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② 청 문

민사처벌의 결정을 위한 청문은 제5편의 제554조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 그러한 청문의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사무총장은 출석 및 증인의 신문, 관련 서류, 사적 및 문서의 제출을 위해 소환장을 발급할 수 있으며 선서를 실시할 수 있다. 소환된 증인에게는 미국의 법원에 소환된 다른 증인과 동일한 비용과 교통비를 지급한다. 이 항에 따라 발부된 소환에 항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당해 소환을 받은 자가 거주하거나 영업을 수행하는 지역의 연방지방법원은 연방정부가 당사자에게 통지를 한 후 연방정부의 신청에 근거하여 당사자에게 사무총장에게 출두하여 증언을 하거나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을 발하는 관할권을 갖는다. 이러한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은 범정모독죄로 처벌할 수 있다.

③ 심 사

민사처벌이 결정된 자가 그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무총장은 법무장관에게 당사자가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는 지역의 관할법원에 벌금의 징수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해 법원은 심리 및 재판관할권을 갖는다. 법원은 사무총장에게 제출된 기록에 근거하여 당해 조치에 대해 심리하며 사무총장의 결정이 기록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얻은 실질적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경우 승인하여야 한다.

④ 타법에 의한 처벌

어떠한 행위에 대한 민사처벌의 결정은 당해 행위에 대하여 1972년 해양포유류보호법, 1973년 멸종위기종보호법, 철새조약법 등을 포함하는 다른 법률에 의한 민사처벌의 결정을 금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60) 16 USCA Sec. 2408

(6) 압수 및 몰수

① 압 수

계류중인 민사 또는 형사소송절차의 처분에 따라 또는 몰수를 위한 대물적 소송의 개시에 따라 이 조의 제(b)항에 의하여 압수된 물품은 사무총장, 재무장관, 상무장관, 내무장관 또는 해안경비대를 소관하는 부처의 장관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의하여 보관되어야 한다. 다만 당해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당해 물품을 보관하는 대신에 물품의 소유자에게 채권 또는 다른 대체 가능한 보증증서를 우송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물품의 압수의 경우, 또는 당해 물품에 대한 청구의 포기 또는 면제의 경우, 규칙에 의하여 정하여 졌다면 당해 물품은 사무총장, 재무장관, 상무장관, 내무장관, 또는 해안경비대를 소관하는 부처의 장에 의하여 이 법의 목적에 일치되는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한다. 다만 토착포유류, 토착조류 또는 토착식물은 일반에 판매될 수 없다.

② 몰 수

남극보전법의 제2403(a)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의 위반과 관련된 동물 또는 식물은 미국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 되며 동 행위의 수행에 이용된 모든 총기, 밧, 그물망, 기타의 장비, 선박, 차량, 항공기 및 다른 교통수단도 미국정부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 된다.

(7) 연방정부 부처간의 협조

남극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는 각각의 연방정부 부처는 실행가능한 최대한의 범위까지 이 법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자신의 권한을 활용하여야 하며 이 법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총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⁶¹⁾

61) 16 USCA Sec. 2411

(8) 보존조치, 감시 및 검사체계

① 보존조치

통상부장관 및 국립과학재단사무총장의 동의 하에 국무장관은 협약의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된 조치를 미국이 수용할 수 없거나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지에 대한 결정, 협약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당해 결정의 통지를 할 권한이 있다.⁶²⁾

또한 국무장관은 실행가능한 경우 자신의 결정을 연방관보에 시의적절하게 공표하고 이에 대한 공공의 서면의견을 유도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제출된 각각의 통지를 연방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감시 및 검사체계

국무장관은 통상부장관과 국립과학재단 사무총장, 해안경비대를 소관하는 부처의 장의 동의하에 협약 제24조에 따른 감시 및 검사체계의 수립 및 당해 체계수립을 위한 잠정협정에 동의할 권한을 갖는다.

③ 위원회로부터의 답변

국무장관은 미국정부를 위하여 위원회로부터의 보고, 요청, 기타 통지사항을 수령할 권한을 갖으며 직접 또는 관계부처에 대한 사안 이관을 통하여 당해 통지사항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는다.

3. 미국의 남극관련법제의 특징

미국은 남극조약체제를 국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입법을 함에 있어서 분야별 개별법의 제정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1978년 남극보존법, 1990년 남극환경보호법으로 통칭되는 남극광물자원보호법, 선박에 의한 오염방지법, 남극해양생물자원협약법과 이들 법률의 내용 중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남극조약의정서에 상충되거나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1996년 남극과학·관광·보존법(Antarctic

62) 16 USCA Sec. 2434

Science, Tourism, Conservation Act of 1996)을 통해 남극관련 미국민의 활동을 규율하고 있다.

특히 1996년 남극과학·관광·보존법은 집행조치 및 위반에 대한 형벌을 포함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남극조약의정서 부속서Ⅳ에 정한 의무와 MARPOL 73/78 의정서 상에서 정한 미국의 의무를 연계시키고 있다.⁶³⁾ 따라서 미국의 선박들은 MARPOL 73/78의정서에 의하여 허가된 것을 제외하고 어떠한 기름 또는 유성혼합물의 배출도 해서는 안되며 합성박줄 및 합성어망,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포함한 모든 플라스틱류의 해양처분이 금지되는 등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제4부속서 상의 금지행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미국의 남극조약체제관련 국내입법은 동법령의 위반자에 대한 법익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익침해의 요건과 기준, 법익침해시 구제절차, 그리고 법익침해 행위로서 위반자의 물품에 대한 압수 및 몰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둔 점에서 다른 국가의 입법과 비교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영국의 남극조약법

1. 남극관련입법

영국은 1959년 12월 1일 워싱턴에서 서명된 남극조약에 따른 남극동식물군의 보존을 위한 조치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효력을 부여하는 법으로서 1967년 남극조약법(Antarctic Treaty Act 1967)을 통하여 자국민과 자국에 등록된 선박 등의 선주 및 선장, 승무원 등의 남극관련 행위를 규율하고 있었으나 1994년 남극법을 전면 개정하여 총 4개장 36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남극조약체제의 국내적 입법을 갖추고 있다.

1994년 남극법은 1980년의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과 1991년의 마드리드의정서채택에 따른 후속적 국내법규정을 마련하고 서경 150도

63) Antarctic Science, Tourism, Conservation Act of 1996, §201(e) and (f)

와 서경 90도 사이의 남극지역에 발생하는 영국민과 외국인의 각종 불법 행위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동법은 동법의 본문 규정뿐만 아니라 부속서(schedule)로서 『남극조약』과 『남극동식물의보존을위한합의규칙』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부속된 두 개의 조약도 영국의 남극조약체제의 국내적 입법으로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동법은 남극조사위원회가 동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부속서로서 두 개의 조약이 개정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는 국내적 입법조치를 위한 입법권을 행사하도록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동 위원회에 의하여 제정되고 공포되는 명령도 영국의 남극조약체제의 국내입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남극조약법의 주요내용

(1)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① 적용범위

동법은 영국민, 영국령의 신민, 또는 해외의 영국교민, 그리고 1981년 영국 국적법에 따른 영국민, 영국 국적법의 범위 내에 있는 영국의 보호민에게 적용되며, 영국에 등록된 영국선박의 소유주 또는 선원인 자에게도 적용된다.

하지만 체약당사국의 국민인 동시에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감시원으로 지명된 자, 체약국에 의하여 활동이 허가된 교환과학자 또는 당해 지명된 감시원이나 교환과학자를 수행하는 직원에게는 그가 감시원, 교환과학자 또는 그 직원의 구성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남극 내에 있는 동안 이 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동법의 지역적 적용범위는 남극에 있어 서경 150도와 서경 90도 사이의 지역이다.

② 용어의 정의

동법에 있어 본문이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조약”은 이 법의 부속서 1에 규정한 조약을 말하며, “합의규칙”은 체약국에 의하여 승인되

도록 권고된 이 법의 부속서 2에 의하여 규정된 규칙을 말한다.⁶⁴⁾

“남극”은 공해를 제외한 남위 60도의 남쪽지역을 의미하며 당해 지역의 모든 빙하를 포함하며, “교환 과학자”는 조약의 제3조제(1)항(b)에 따라 교환되는 자를 말하며 당사국이 활용하는 교환과학자에 대한 언급은 체약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체약당사국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고용된 교환과학자를 말한다.

“토착조류,” “토착포유류,” 그리고 “토착식물”은 합의규칙의 제2조에 의하여 각각 부여된 의미를 갖으며 “감시관”은 조약의 제7조 제(1)항에 따라 지명된 자를 말하며, “특별보호지역” 및 “특별보호종”은 각각 이 법의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과 종을 말한다. “운송수단”은 육지에 있는 항공기를 포함하며 운송수단의 운전은 운송수단이 기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와 관계없이 운행중인 운송수단의 책임자를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남극지역활동에 대한 허가

① 허가의 발급권자

영국의 남극조약법은 남극관련활동에 대하여 국무부장관(secretary of State)이 허가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즉 국무부장관은 이 법이 적용되는 자와 관련하여 남극관련활동을 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허가를 발급할 수 있으며, 국무부장관은 이에 따른 자신의 권한을 영국 남극조사위원회의 사무총장 또는 동법의 통과시에 명칭에 관계없이 당해 사무총장에 의하여 수행되는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영국정부가 남극에 설립하여 유지하고 있는 기지의 책임자, 영국 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영역에 의하여 조직되거나 진출하는 남극탐사대의 책임자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남극관련활동에 대한 주무부처는 국무부라 할 수 있으며 국무장관의 위임에 의하여 남극조사위원회의 사무총장, 남극내 영국기지의

64) 다만 동법의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의 행사 중에 동법의 부속서 2가 개정된 경우 “합의규칙”은 개정된 내용으로 당해 부속서에 규정된 규칙을 의미한다.

책임자, 영국법의 적용을 받는 남극탐험대의 대장이 남극활동에 대한 허가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실제에 있어서는 남극조사위원회의 사무총장이 남극관련 활동에 대한 명령제정권을 행사하는 등 총괄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허가의 절차

허가는 국무장관 또는 허가를 발급하는 자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바에 따른 조건과 제한 하에 발급될 수 있으며, 당해 허가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사항과 관련하여 허가는 허가가 발급된 사람에 대하여 국무장관 또는 허가를 발급하는 자에게 허가에서 정한 시기와 방법에 따라 허가에 정한 행위와 사례의 발생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동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의 행사와 관련하여 국무장관 또는 그 권한을 행사하는 자는 합의규칙⁶⁵⁾을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국무장관에 의하여 허가를 발급할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매년 국무장관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서는 매 연말 이후에 실행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국무장관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고서는 당해 연도에 이항에 의하여 허가된 상세항목과 당해 연도에 그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3) 남극지역에서 제한되는 활동

① 제한되는 활동

남극조약법이 적용되는 자는 어느 누구도 동법에 의하여 제정된 남극조사위원회의 명령으로 정해진 날부터⁶⁶⁾ 남극지역에 있는 동안 이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착포유류 또는 조류를 고의적으로 살상하거나, 학대하거나, 포획하여서는 안되며, 특별보호지역 내에 있는

65) “합의규칙(Agreed Measures)”이라 함은 제3차 ATCM에서 협의당사국들의 승인을 위해 권고되었으며, 남극조약의 제9(1)조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는 남극동식물군의 보존을 위한 합의규칙을 말한다.

66) 이하에서 정해진 날이라 함은 동법의 Sec. 10 (5)에 따라 남극조사위원회에 의한 명령으로 정한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토착식물을 채취하거나 당해 지역에 어떠한 운송수단을 통하여 운행할 수 없다. 또한 동법의 적용대상인 자는 어느 누구도 정해진 날로부터 이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극 고유종이 아닌 동물이나 식물을 남극에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영국의 남극조약법은 이와 같은 남극토착 동식물의 보호는 물론 광물 자원활동에 대한 제한과⁶⁷⁾ 마드리드의 정서에 의한 특별보호지역 및 역사적 장소와 기념물, 그리고 기타 남극조약체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지역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⁶⁸⁾ 제2장 환경보호에서 포함하고 있다.

② 남극조사위원회의 권한

국가는 동법의 제1조 내지 제5조에 의해 제정된 것 외에 남극동식물보존을 위한 합의규칙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명령에 의하여 당해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는 남극조사위원회의 명령을 통하여 계약당사국에 대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의규칙의 부속서A에서 정하거나 또는 남극조약의 제9조(1)항에 따라 부속서에 포함되도록 권고된 일정한 종류의 포유류 및 조류를 특별 보호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합의규칙의 부속서B에서 정하거나 또는 남극조약의 제9조(1)항에 따른 부속서에 포함되도록 권고된 일정 지역에 대하여 특별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국가는 위원회의 명령을 통하여 토착포유류 또는 조류의 살상, 학대, 포획과 관련하여 이 법의 제1조 내지 제4조를 지휘하며, 남위 60도 이남의 공해 전체를 포함하는 남극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국가는 위원회의 명령을 통하여 남극 내에서 동법에 의하여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자의 체포, 동법에 의하여 범죄행위로 소추될 수 있는 장소에서 체포된 자에 대한 구금을 위한 호송, 동법에 의한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물품의 압수 및 유치 그리고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범죄로 소추되어 질 수 있는 혐의로 기소된 자가 있는 곳으로 당해 물품을 운반하는 것, 동법의 규정에 따라 범죄행위로

67) Sec. 6

68) Sec. 9 to 11

소추되어질 수 있는 자로서 당해 범죄와 관련한 소송절차에 있어서 증거 또는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된 자의 법원출석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하지만 동법의 관련 규정⁶⁹⁾에 따라 제정된 위원회의 명령은 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무효화될 수 있다.

③ 처 벌

영국에 등록된 영국선박의 선주, 선장 또는 선원인 자가 동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개를 살상하거나 포획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또는 징역과 벌금의 병과를 할 수 있는 기소에 근거한 유죄선고에 처하며,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또는 징역과 벌금의 병과를 할 수 있는 약식유죄판결에 처하여 진다. 그리고 동법의 제12조에 위반하여 특별보호종의 포유류 또는 조류를 고의로 살생한 자는 벌금형의 약식유죄에 처한다.

또한 동법의 제3조(4)항⁷⁰⁾에 따른 허가에 의하여 부과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자, 고의 또는 과실로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를 한 자는 범죄를 행하는 것이며 벌금형의 약식유죄에 처해진다.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은 감시원 및 교환과학자에 대한 형법적용이다.⁷¹⁾ 즉 정부에 의하여 감시원 또는 정부의 교환과학자, 또는 감시원 또는 교환과학자의 수행직원으로 지명된 날 이후에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남극지역에 있는 동안 그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당해 행위가 영국 관할영역 내에서 발생한 경우 영국법의 당해 규정에 대한 위반이 되며, 당해 행위가 동법이 적용되는 다른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 당해 영역의 법에 대한 위반행위가 된다. 따라서 당해 행위를 행한 자는 당해 행위가 영국 또는 영국의 영역의 일부에서 발생한 경우와 같이 동

69) Sec. 7(2) to (5)

70) 당해 허가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사항과 관련하여 허가는 허가가 발급된 사람에 대하여 국무장관 또는 허가를 발급하는 자에게 허가에서 정한 시기와 방법에 따라 허가에 정한 행위와 사례의 발생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71) Sec. 5.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며 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을 통하여 처벌을 한다.

남극지역에서 불법행위를 행한 영국민에 대한 처벌 이외에도 남극조약과 마드리드의정서, 그리고 각종 남극관련협약에 근거하여 남극에서의 광물자원활동, 남극토착동식물의 보호, 남극특별보호지역 등에 관한 국제법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도 1994년 남극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⁷²⁾

④ 처벌의 면제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시도하는 자는 범죄행위를 범하는 것이다.

하지만 처벌되어야 하는 행위가 동법에 따라 발급된 허가가 유효한 기간에 당해 허가에 따른 조건이나 제한에 따라 행하여졌거나 행하려고 시도한 경우 동법에 의하여 또는 다른 체약국에 의하여 발급된 허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 또는 행하고자 하였던 시도에 대하여는 동법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자가 이 법의 제1조에 의한 범법행위로 기소된 경우, 문제된 행위가 사람의 생명손실의 가능성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과 관련된 극단적인 비상사태 하에서 행하여 졌거나 행하여지려고 시도되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처벌이 면제된다.⁷³⁾

(4) 소송절차 및 증거

동법과 분리하여 행사될 수 있는 관할권에 관계없이 동법의 규정에 따른 범죄에 대한 소송절차는 범죄자가 영국 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영역 내에 있는 경우 취해질 수 있으며, 그러한 소송절차에 있어서 동법의 제7조(1)항에 따른 위원회 명령은 명령에 의하여 증명된 사항에 대한 결정적 증거이며, 동법에 따른 허가의 발급을 위한 문서 또는 다른 체약국의 하나에 의하여 발급된 허가, 그리고 소송절차에 언급된 자의 성명을 포함한 자에게 발급된 허가는 반증이 없는 한 언급된 자에게 이 법에 따라

72) Pt. IV, Sec. 25 to 26

73) Sec. 2. (1), (2)

발급된 허가로서 보거나 또는 체약국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며, 영국 정부 또는 다른 체약국에 의하여 발급되는 증명서에 성명이 기재된 자가 영국정부 또는 체약국에 의하여 감시관 또는 교환과학자로서 지명되거나 활용되었고, 문서에 정한 시기에 감시관 또는 교환과학자이었다는 증명서의 발급을 위한 문서는 반증이 없는 한 당해 문서에 서술된 사실의 충분한 증거가 된다.

3. 영국의 남극관련법제의 특징

영국은 남극조약과 남극동식물의 보존을 위한 합의규칙을 남극조약법의 부속서로 포함하여 그대로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다만 그 구체적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명령의 제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동법의 위반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는 사유로서 어떠한 자가 이 법에 의한 범법행위로 인하여 기소된 경우, 문제된 행위가 사람의 생명손실의 가능성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과 관련된 극단적인 비상사태 하에서 행하여 졌거나 행하여지려고 시도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면 처벌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1994년 남극법을 통하여 동법의 적용지역을 서경 150도와 서경 90도 지역으로 명시함으로써 동 지역에 대한 영국의 특수한 이해를 표시한 것은 남극지역의 국제공역화 개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향후 남극지역에 대한 영유권주장의 가능성을 남겨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 3 절 일본의 남극관련법제

1. 남극관련입법

일본은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를 국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平成 9년 5월 28일에 법률 제61호로 『남극지역의 환경의 보호에 관

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남극지역활동계획의 확인, 제3장 남극지역에 있어서 행위의 제한, 제4장 감독, 제5장 잡칙, 제6장 벌칙 그리고 부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의 제정 이전에는 소화57년 5월 28일에 법률 제58호로 『남극 지역의 동물상 및 식물상의 보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같은 해 11월 1일 시행하였다. 동법은 남극 지역의 동물상 및 식물상의 보존을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남극조약협약국제회의가 남극조약 제9조 1의 규정에 기초를 두고 권고한 남극 지역의 동물상 및 식물상의 보존을 위한 권고조치를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기본적 규정의 토대는 새로운 『남극지역의 환경의 보호에 관한 법률』과 거의 유사하다. 하지만 이 법률은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가 일본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폐지한다는 경과 규정을 둔 남극지역의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러한 법령의 개정과정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과거 『남극 지역의 동물상 및 식물상의 보존에 관한 법률』이 외무성의 소관법률로서 남극지역에 관한 사항을 외무부장관이 관장하였던데 반하여 새로이 입법된 『남극 지역의 환경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환경청 소관법령으로서 환경청 장관이 남극지역의 환경보호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는 것이다.

2. 『남극지역의환경보호에관한법률』의 내용분석

(1)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일본의 『남극지역의환경의보호에관한법률』은 총칙적 내용으로서 동법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동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① 입법목적

동법의 제정목적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⁷⁴⁾

첫째, 국제적인 협력을 통하여 남극지역의 환경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

74) 『남극지역의 환경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해 남극지역활동계획의 확인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

둘째, 남극지역에 있어서 자국민의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강구하는 것

셋째, 동 의정서의 부속서 I 에서 부속서 V 까지를 포함하는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의 적확 또는 원활한 실시를 확보하는 것

넷째, 인류의 복지에 공헌하는 동시에 현재 및 장래의 국민건강으로부터 문화적인 생활의 확보에 기여하는 것.

② 적용범위

동법은 남극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본인 및 일본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남극관련행위를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동법의 적용범위는 인적 적용범위와 지리적 적용범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인적 적용범위로서 동법은 일본국민 및 일본의 법인, 일본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및 일본 내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외국의 법인에게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경우 일본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외국 사무소에 소속된 직원이 해당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남극지역활동을 하거나 또는 남극지역활동에 있어 중심이 되어 일을 진행시키는 경우에 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이 적용된다.

남극지역활동이라 함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남극지역활동에 관계된 하나의 계획으로서 남극지역활동계획에 따른 남극지역에 있어서 과학적 조사, 관광 그 외의 일정한 목적을 위해 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석탄, 아탄, 석유 및 천연가스를 포함한 광물의 탐광 및 채광 등 남극에 있어서의 광물자원활동이 포함된다. 그리고 남극지역활동 중에서 특별활동이라 함은 남극지역의 해역에 있어서 남극지역의 해역에 서식하거나 생활하는 수산동식물의 채집·포획에 있어서 해당 채집·포획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령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고 행하여지는 행위 및 그에 부수된 행위,⁷⁵⁾ 남극특별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외한 선박의 항행 또는 항공기의 비행 또는 그에 부수된 총리부령으로 정한 행위, 과학적 조사에 있어서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75) 남극지역활동 이외의 남극지역활동과 일체가 되어 행해진 행위는 제외된다.

동법의 적용을 통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은 남극지역의 환경으로서 남극에 의존하거나 남극과 관련된 생태계 및 환경과 함께 포괄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남극지역의 고유한 가치를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여기에서 남극지역의 고유한 가치라 함은 남극지역의 과학적, 역사적 또는 예술적인 가치 또는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의 가치를 말한다.⁷⁶⁾ 남극환경의 구성요소는 남극지역의 대기, 남극지역의 물, 남극지역에 서식하거나 또는 생육하는 동식물 그 외의 남극지역의 환경의 구성요소로서 총리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⁷⁷⁾

동법의 지리적 적용범위로서 남극지역은 남위60도 이남의 육지지역으로서 빙붕 및 그 상공의 부분과 해역을 포함한다. 해역의 경우 빙붕의 구역에 있어서는 그 아래의 해중의 부분이 적용대상영역이다. 또한 남극 특별보호구역에도 적용되는데 이 지역은 의정서부속서 V 제3조 1 또는 3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남극특별보호지역을 말한다.

③ 실효성의 확보

동법은 동법 규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하여 환경청장관은 의정서의 적확하고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해서 문부성 장관 및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남극지역활동계획에 대한 확인제도를 활용하여 남극지역활동을 주재하는 자 및 남극지역활동의 행위자가 남극지역의 환경의 보호를 위해 시행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공포하도록 하고 있다.

(2) 남극지역활동의 허가

남극지역활동계획의 확인제도는 환경청장관에 의하여 확인된 남극지역 활동 이외의 남극지역활동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즉 동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누구도 남극지역에 있어서 환경청장관의 확인을 받은 남극지역활동 계획에 포함된 남극지역활동 이외에는 남극지역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특정활동으로 동법에서 정의된 활동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의 체약국인 외국의 법령에 일 본의 동법률의 규정과 상응하는 규정이 있어서 이에 따라 당해 체약국에

76) 제3조 제2호

77) 남극지역의 기상 외에 그로부터 발생하는 구성요소의 현상 또는 상태를 포함한다.

서 동법의 확인에 유사한 허가 그 외의 행정처분을 받고 행하는 남극지역활동 또는 당해 처분을 받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남극지역활동에 대해서는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① 확인신청

남극지역활동계획의 확인에 대한 신청은 해당 남극지역활동계획에 포함된 남극지역활동을 주재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환경청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첫째, 주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당해 남극지역활동계획의 목적, 당해 남극지역활동계획에 포함된 남극지역활동의 행위자의 인원수

둘째, 당해 남극지역활동계획에 포함된 남극지역활동의 행위자의 성명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성명

셋째, 당해 남극지역활동계획에 포함된 남극지역활동의 행위자가 당해 남극지역활동을 그 업무에 관하여 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주소 또는 대표자의 성명, 당해 남극지역활동계획에 포함된 남극지역활동의 목적, 시기, 장소 및 실시방법

넷째, 당해 남극지역활동계획에 포함된 남극지역활동을 구성하는 행위의 상세한 내용 및 당해 행위의 행위자의 성명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성명 등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신청서를 환경청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자는 당해 신청서에 관계된 남극지역활동계획에 포함되는 남극지역활동의 남극환경영향에 관해 환경청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조사, 예측 및 평가를 행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圖書를 당해 신청서와 함께 환경청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때 신청자에 대신하여 신청중의 남극지역활동계획에 관계된 남극지역활동을 주재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경청장관에 신고하고 그 신청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신청자에 대하여 상속 또는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⁷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

78) 상속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 그 전원의 동의에 따라 당해 신청의 절차를 승계할 상속인을 선정한 때에는 그 선정된 자를 말한다.

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그 신청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에 따라 신청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환경청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⁷⁹⁾

하지만 남극지역활동을 주재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는 벌금이상의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을 종료하였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이거나 법인에 있어서 그 임원의 중에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을 받을 수 없다.

② 확인기준

환경청장관은 신청에 관한 남극지역활동계획에 포함된 전체의 남극지역활동이 다음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을 하여야 한다.⁸⁰⁾

첫째, 당해 남극지역활동을 구성하는 행위가 광물활동, 동식물의 보존에 해가 되는 활동, 일반폐기물 및 PCB등 특정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남극에 있는 각종 史的 記念物을 제거하거나 손상하거나 파괴하는 행위가 아닐 것

둘째, 당해 남극지역활동을 구성하는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과학적 조사, 교육자료의 수집 기타 이에 비슷한 목적이고 또한 당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 있는 행위로서 일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

셋째, 당해 남극지역활동을 구성하는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남극특별보호지구의 출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가 의정서부속서V 제6조의 지정에 관계된 관리계획에 따라 남극특별보호지구마다 일정한 요건에 적합한 것 즉, 당해 관리계획이 지정되어있지 않은 남극특별보호지구에 있어서는 과학적 조사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

넷째, 남극지역활동 내에 기타 남극환경영향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당해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그 시점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도달되어 있는 수준의 남극환경영향에 관한 과학적 지식에 비추어 현저한 우려가 없는 것

79) 제10조

80) 법 제7조 제1항

하지만 다음과 같은 남극지역활동은 환경청장관에 의한 확인이 금지된다.⁸¹⁾

첫째, 남극지역의 기후의 자연적인 변동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남극지역활동

둘째, 남극지역의 대기에 현저한 오염, 물의 상태 또는 물밑 수질의 현저한 악화를 포함하는 수질의 현저한 오탁, 또는 토양의 현저한 오염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남극지역활동

셋째, 남극지역의 대기의 조성을 변화시키고 또한 하천, 호소 등의 수위 또는 수량의 현저한 증감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남극지역활동

넷째, 남극지역에 생식하거나 생육하는 동식물의 종에 대해 그 종의 개체의 주요한 생식지 또는 생육지를 소멸시킬 우려가 있는 남극지역활동, 종의 존속에 지장을 주는 정도에 그 종의 개체의 수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남극지역활동 기타 그 종의 개체의 생식상태 또는 생육상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남극지역활동

다섯째, 남극지역의 고유의 가치에 있어 중요한 것을 보유하는 지역에 있어서 당해 가치를 현저히 감소시킬 염려가 있는 남극지역활동

③ 확인신청에 대한 조치

환경청장관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있어 당해 신청서에 관계된 남극지역활동계획에 포함된 남극지역활동이 확인요건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심사를 적정하게 행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신청서에 대해 상당한 기한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서를 정정하는 것, 법률상의 도서를 제출하는 것, 도서의 기재사항의 수정 또는 보충을 행하는 것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⁸²⁾ 이 경우에 당해 서면에는 당해 조치를 취하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명령을 하였음에도 신청자가 법률상의 기한까지 당해 명령에 관계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에는 환경청장관은 당해 신청을 각하시켜야 한다.

환경청장관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있어서 신청에 관계된 남극지역

81) 법 제7조 제2항

82) 법 제8조

활동계획이 다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일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첫째, 그에 포함된 전체의 남극지역활동이 제7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남극지역활동계획에 대하여는 당해 남극지역활동계획의 확인을 하며, 그 취지를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둘째, 그에 포함된 전체의 남극지역활동이 신청의 정정 사항에 해당하며 또한 그 것에 포함된 남극지역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서 체약국의 정부 또는 일본 국내 및 국외의 일반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는 남극지역활동계획에 대하여는 당해 남극지역활동계획의 확인을 거부하여 그 취지 및 그 이유를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⁸³⁾

환경청장관은 이와 같은 조치를 하는 경우에 필요에 따라 당해 남극지역활동계획에 포함된 남극지역활동에 관하여 남극지역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환경청장관은 남극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필요의 한도에 있어서 남극환경구성요소의 관측 또는 측정을 행하여 그 결과를 환경청장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남극지역에 있어서 환경청장관의 권한을 행하는 직원과의 사이에 연락 수단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청자는 신청에 관계된 남극지역활동계획에 관하여 확인을 하거나 또는 확인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받기까지는 언제라도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④ 남극지역활동계획의 열람

환경청장관은 남극활동계획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신청에 관계된 남극지역활동계획에 대해서 총리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공고하고 또한 해당 공고의 날로부터 기산하여 30일 동안, 당해 남극지역활동계획에 관한 신청서 및 제6조 제3항에 규정된 도서를 열람하도록 하고 또한 당해 남극지역활동계획에 대한 의견을 구하

83) 이 통지에 대해 불복이 있는 자는 行政不服審査法에 근거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기 위해 의정서부속서 I 제3조2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포괄적인 환경평가서를 작성하여 체약국의 정부 및 의정서 제11조의 환경보호위원회에 송부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⁸⁴⁾ 이 경우 누구라도 열람하도록 제공된 남극지역활동계획에 대해 공고의 날로부터 열람기간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60일을 경과한 날까지의 사이에 환경청장관에 대하여 남극지역의 환경의 보호의 측면에서의 의견을 의견서의 제출에 의해 진술할 수 있다. 환경청장관은 포괄적인 환경평가서에 대한 체약국의 정부의 의견 또는 전항의 의견의 내용에 비추어 남극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신청자에 관하여 상당한 기한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당해 남극지역활동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수정을 행하여야 한다고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당해 서면에는 해당 수정을 행하여야 하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환경청장관은 명령에 관계된 수정후의 남극지역활동계획이 확인기준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남극지역활동계획의 확인을 하고, 그 취지를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위자증의 교부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이름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청자 또는 주재자는 남극지역활동계획에 포함된 남극지역활동이 개시된 날의 30일 이내에 당해 이름을 확정하여 이를 환경청장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주재자 또는 확인을 받은 남극지역활동계획에 포함된 남극지역활동의 행위자는 행위자증을 亡失하였거나 또는 행위자증이 滅失된 경우에 그 행위자증의 재발행을 받을 수 있다. 확인을 받은 남극지역활동계획에 포함된 남극지역활동의 행위자는 남극지역에 있어서 제5항의 행위자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⑥ 주재자의 책무

주재자는 확인을 받은 남극지역활동에 포함된 자신이 주재하는 남극지역활동의 행위자에 대하여 적어도 당해 남극지역활동에 관계된 사항에⁸⁵⁾

84) 법 제9조

85) 법 제6조 제1항 및 제7조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대하여 설명하고 이 외에 법률 또는 그에 근거한 명령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필요한 지도를 행하여야 한다.

(3) 남극지역에 있어서 제한되는 행위

① 광물자원활동의 제한

누구도 남극지역에 있어서는 광물자원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과학적 조사에 있어서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⁸⁶⁾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이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이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 각 본 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고 있다.⁸⁷⁾

② 동물군 및 식물군의 보존을 위한 제한

누구도 총리부령으로 정한 검사를 받고 있는 경우 그 외 총리부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살아있지 않은 哺乳綱 또는 鳥綱에 속하는 종의 개체를 남극지역에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 또한 누구도 남극지역에 있어서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첫째, 남극포유류 또는 남극조류를 포획하거나 또는 살상하거나, 또는 남극조류의 알을 채취하거나, 또는 손상하는 행위⁸⁸⁾

둘째, 식용에 제공하기 위해 酵母 기타의 균류 또는 식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 및 그 이외에 남극환경영향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 바이러스를 포함하여 살아있는 생물을 남극지역에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셋째, 남극지역에 生息하거나 또는 生育하는 동식물의 生息狀態 또는 生育狀態 및 생식환경 또는 생육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86) 제29조 제1항

87) 제33조

88) 하지만 특정활동에 관계된 행위 또는 확인을 받은 남극지역활동계획에 포함된 남극지역활동을 구성하는 행위(체약국의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해 체약국에 있어서 당해 행위에 관한 허가 기타 이것과 비슷한 행정처분을 받게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남극지역에 동식물의 일부 및 가공품을 포함하여 동식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자는 남극지역의 동물군 및 식물군의 보존에 지장을 미치지 않도록 당해 동식물을 적절히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⁸⁹⁾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이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이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 각 본 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고 있다.⁹⁰⁾

③ 폐기물의 적정한 처분 및 관리

㉠ 폐기물의 발생의 억제

남극지역에 있어서는 폐기물의 발생의 억제에 노력하는 동시에 발생한 폐기물을 남극지역에서 제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폐기물의 처분의 제한

남극지역에 있어서는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장하거나 배출하거나 또는 유기하거나 또는 그 외의 방법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의 어느 것에 의한 방법에 따른 경우에는 허용된다.

첫째, 고행상의 폐기물⁹¹⁾ 중에서 가연성인 것을 육지 지역에서 소각하는 경우 총리부령으로 정한 소각의 방법에 관한 기준에 따른 경우

둘째, 분뇨를 포함한 액상의 폐기물⁹²⁾ 대하여는 氷床에 덮혀 있으며 끝에서 내륙의 방향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을 당해 지역에서 매립에 따른 처분을 함에 있어 총리

89) 제29조 제1항

90) 제33조

91) 고행상의 폐기물이라 함은 고행상의 폐유, 석탄, 연탄 기타 이와 유사한 고행연료로서 석탄으로부터 제조된 것, 방제용 약제 및 유효성분이 화학물질로 제조된 고행상의 불요물, 폐 플라스틱류, 고무쓰레기, 나무쓰레기 등을 말한다; 남극지역의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92) 액상폐기물이라 함은 액상의 폐유, 驅除劑로서 액상의 불요물, 액상 폐기물, 미생물의 폐 배양물을 말한다. 단 멸균된 폐 배양물은 액상 폐기물에서 제외된다; 남극지역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부령으로 정한 매립방법에 관한 기준에 따른 것

셋째, 액상폐기물로서 사람의 일상생활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것⁹³⁾ 및 그 외 법령으로 정한 것으로서 육지 지역에서 해역으로 배출함에 있어서 총리부령으로 정한 배출의 방법에 관한 기준에 따른 것

넷째, 액상폐기물의 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汚泥를 선박에서 해역으로의 배출하는 경우에는 해양오염 및 해상화재의 방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

다섯째, 폐기물을 제거하는 작업에 수반되는 남극환경에 대한 영향의 정도가 폐기물을 유기 하는 것에 의한 남극환경영향의 정도보다도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총리부령으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폐기물을 당해 장소에 유기 하는 것

여섯째, 앞에서 언급한 것 외에 액상폐기물의 육지 지역에 있어서 처분 또는 육지 지역으로부터 해역으로 배출함에 있어서 남극지역에서 행위를 하는 것이 부득이 하거나 남극환경영향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서 총리부령으로 정한 것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⁹⁴⁾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이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이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 각 본 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고 있다.⁹⁵⁾

㉔ 폐기물의 보관

폐기물이 남극지역에서 제거되거나 또는 폐기물의 처분이 되기까지의 기간 동안은 폐기물이 공중에 날리거나 유출되거나 또는 지하에 침투하지 않도록 적절한 장소 또는 시설에 있어서 적절히 보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93) 해역으로 배출이 가능한 액상폐기물은 사람의 일상생활에 따라 발생하는 액상폐기물, 과학적 조사, 의료 또는 차량, 발전기 기타 남극지역에 있어 생활에 필요한 기계의 유지 또는 수리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액상폐기물을 말한다; 남극지역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94) 제29조 제1항

95) 제33조

㉔ 반입금지 물건

남극환경영향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로서 총리부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폴리염화비페닐(PCB) 및 그 외 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제거 또는 처분함에 있어 남극환경영향의 정도가 현저한 물질은⁹⁶⁾ 남극지역에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⁹⁷⁾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이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이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 각 본 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고 있다.⁹⁸⁾

(4) 남극특별보호지역 및 남극사적기념물의 보호

① 남극특별보호지구로의 출입제한

누구도 남극특별보호지구로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⁹⁹⁾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이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이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 각 본 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고 있다.¹⁰⁰⁾

다만 특정활동으로서 출입하는 경우에 법률에 따라 환경청장관에 의하여 확인된 남극지역활동계획에 포함된 남극지역활동에 관련된 출입 또는 남극조약 체결국의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해 체결국에서 당해 출입에 관한 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고 하는 출입에 해당하는 경우는 출입이 허가된다.

96) 반입이 금지된 물건은 폴리스티렌,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포장용 재료, 과학적 조사 또는 사람의 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 驅除劑 등을 말한다; 남극지역환경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97) 제29조 제1항

98) 제33조

99) 제29조 제1항

100) 제33조

환경청장관에 의하여 확인된 남극지역활동계획에 따라 남극지역을 출입한다고 하더라도 동 활동계획에 의하여 정해진 지역이 아닌 지역을 출입하거나 잔류하는 행위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¹⁰¹⁾ 남극활동지역을 신청 없이 출입하는 경우에도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¹⁰²⁾

② 남극사적기념물의 제거금지

누구도 남극지역에 존재하는 각종 南極史跡記念物을 제거하거나 손상하거나 또는 파괴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¹⁰³⁾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이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이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 각 본 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고 있다.¹⁰⁴⁾

(5) 감독 및 보고요구

① 보고요구

환경청장관은 남극지역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 있어서 주재자 또는 남극지역에 있어서 행위를 하는 자에게 당해 행위의 실시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¹⁰⁵⁾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이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이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 각 본 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고 있다.¹⁰⁶⁾

101) 동법 제30조

102) 동법 제31조

103) 제29조 제1항

104) 제33조

105) 제32조

106) 제33조

② 남극지역 출입검사

환경청장관은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환경청의 직원에게 남극지역에 있는 건축물, 일본선박 또는 일본항공기로 남극활동계획의 주재자가 관리하는 곳에 출입하는 차량,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고 또한 관계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남극조약협약 당사국이 자국민 중에서 지명한 감시원, 남극조약협약 당사국회의에 의하여 확립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남극조약협약 당사국회의에 의해 지명된 감시원은¹⁰⁷⁾ 의정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남극지역에 있는 건축물, 선박 또는 항공기로 전조에 규정한 자가 관리하는 곳에 출입하는 차량,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고 또한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이러한 출입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해 서는 행사할 수 없다.¹⁰⁸⁾

③ 조치명령

환경청장관은 남극지역에 있어서 행위를 하는 사람이 광물자원활동의 제한, 동물군 및 식물군의 보존을 위한 제한, 폐기물의 처분제한 등 각종 폐기물관련 법규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또는 과학적 조사 등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남극지역의 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해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주재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또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또는 원상회복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이를 대신할 만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또한 환경청장관은 확인의 때에 예상할 수 없었던 남극지역의 환경의 변화 또는 확인의 때에 알지 못했던 남극지역 환경의 과학적 발견의 내용에 의해 확인을 받은 남극지역활동계획에 포함된 남극지역활동이 제7조제2항 각호

107)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제14조 제2항

108) 하지만 출입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하거나 또는 질문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자에 대하여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32조 제4항.

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 남극지역의 환경을 현저히 손상하거나 또는 손상할 우려가 있어서 당해 남극지역활동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남극지역활동의 주재자 또는 당해 남극지역활동을 구성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하고자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남극지역활동 또는 당해 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기타 남극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환경청장관은 원상회복 또는 이를 대신할 만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한 경우에 당해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에 관계된 기한까지 그 명령에 관계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에는 스스로 원상회복을 하거나 또는 원상회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이를 대신할 만한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적용제외

남극지역환경보호를 위한 법률의 규정은 방사성물질에 의한 남극지역의 대기의 오염, 수질 이외의 물의 상태 또는 물밑의 상태의 악화를 포함한 수질의 오염 및 토양의 오염 및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남극지역의 해역에 있어서 선박 및 항공기에서 당해 해역으로 폐기물의 배출 및 남극지역의 해역에 있는 선박에 있어서 폐기물의 소각에 대해서는 출입검사에 관한 법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긴급 시에 있어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해 행한 행위 기타 긴급한 사유로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총리부령으로 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남극지역활동에 관계된 규정, 행위자중의 요구, 동물군 및 식물군의 보존을 위한 제한, 남극에 있어 폐기물의 처분제한, PCB반입제한, 남극특별보호지구출입제한 그리고 남극사적기념물의 제거금지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당해 행위가 종료된 후 지체없이 환경청장관에 대하여 당해 행위를 한 취지 및 그 실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¹⁰⁹⁾

109) 동법 제24조

⑤ 국가의 법령홍보의무

국가는 남극지역에 있어서 행위를 하는 자 기타의 관계자에게 환경보호를 위한 남극조약의정서 및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국내 법률, 그리고 이에 기초한 명령 및 환경청장관이 정한 내규의 요지를 주지시키기 위해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법률의 규정에 기초한 명령을 제정하거나 또는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으로 그 제정 또는 개폐에 수반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에 있어서 요구되는 경과조치를 정할 수 있다.¹¹⁰⁾

3. 일본 남극관련법제의 특징

일본의 『남극지역의환경보호에관한법률』은 주요 선진국의 남극관련 국내입법 중에서 가장 최근에 입법된 것으로서 그 시기적 최신성과 대륙법 체계로서 일본법의 법체계적 유사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관련 입법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동법률의 시행은 동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하여 구체화되어 있으며 남극조약체제를 구성하는 국제법규 중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의 내용을 수용하기 위한 규정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의 미국이나 영국의 남극관련법제와 차이가 있다. 남극관련법제의 소관부처에 있어서도 미국이나 영국과 달리 환경청으로 단일화하고 별도의 남극관련위원회를 설립하고 있지 아니하다. 특히 종전의 『남극지역의동물상 및역물상의보존에관한법률』의 소관부처가 외무성이었으나 새로이 『남극지역의환경의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면서 소관부처를 환경청으로 이관한 것은 남극관련법제의 소관부처결정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할 것이다.

또한 동법은 남극활동과 관련한 법률상의 용어와 각종 행정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남극지역활동계획, 남극환경영향평가, 행위자증명서의 발급, 남극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로서 폐기물

110) 제27조

제 4 장 주요국가의 국내입법분석

의 처분, 남극사적기념물의 제거금지, 벌칙 등에 관하여 다른 국가의 국내법과는 달리 상세하거나 다른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중 특히 폐기물에 관하여는 동법의 시행령에서 더욱 상세한 규정들을 두어 남극활동에 따른 남극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최대한의 입법적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 5 장 남극조약체제의 국내입법방향

남극조약체제의 국가의무사항으로서 국내입법이 요구되는 내용으로서 는 남극활동의 허가에 관한 사항, 남극환경의 보호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보칙 및 벌칙에 관한 사항등이 있으며 이들 사항은 남극관련 국내입법에 필수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필수적인 입법사항 외에 남극조약, 남극활동과 관련된 국제조약,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등과 주요국의 남극관련입법을 참고하여 국내적 입법을 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는 전문 및 27개조로 구성된 본문과 13개조로 구성된 중재재판에 관한 부록,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남극동식물군보존·폐기물처리 및 관리·해양오염방지·남극에서의 광물자원개발 등에 관한 5개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이들 의정서 및 부속서의 이행을 위한 어떠한 국내적 입법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남극조약체제의 국내입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남극조약체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이 필요함에도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 정서의 부속서마저도 전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지 않다.

또한 남극에서의 과학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극연구의 진흥을 위한 제반조치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삽입하는 것도 향후 남극활동의 체계화 및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확고히 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남극관련 국내입법시에 국가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우선적 사항을 정책적 판단사항으로서 검토하고 남극조약체제의 국가의무사항으로서 미국, 영국, 일본등의 국내법에서 공동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사항을 분석·확인하여 열거하고자 한다.

제 1 절 국내입법시 정책적 판단사항

1. 남극조약의 국내입법체계

남극조약체제를 국내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입법체계에 있어서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일본은 각각의 국내적 입장에 따라 상이한 입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즉 종합적인 단일의 남극환경보호관련법을 제정하거나 개별법을 통하여 남극조약체제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수용하는 입법을 하는 등 각각의 국내적 입장에 따라 상이한 입법체계를 통하여 남극조약체제를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과 영국보다 한발 앞서 나간 입법태도로서 기존의 남극조약체제를 포괄하는 환경보호를 위한 남극조약의정서가 1991년 10월 채택되고 1998년 효력을 발생에 따라 이에 발맞추어 종래의 『남극지역의동물상및식물상의보존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입법으로서 『남극지역의환경의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동법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상세한 정의를 위해 동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1959년에 체결된 남극조약의 평화적 이용과 영유권주장의 동결이라는 기본적인 정신과 남극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서 감시 및 통보체제와 재판관할권, 그리고 남극보호를 위한 체약당사국의 회합 및 결정을 승인하고 이에 입각하여 남극지역의 동물 및 식물의 보존에 관한 합의규칙¹¹¹⁾ 및 1981년에 체결된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한 협약,¹¹²⁾ 그리고 남극광물자원보호협약을¹¹³⁾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을 개별법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996년에는 남극과학·관광·보존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남극관련 개별법률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기존의 법률에 포함되어 있지 않

111) Ch. 44. Antarctic Conservation §2401 (a)

112) Ch. 44A.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onvention §2431

113) Ch. 44B. §§2461~2466

은 남극활동의 환경영향평가, 남극관광 등 새로운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1967년 남극조약법을 통하여 남극동물 및 식물보존에 관한 합의규칙을 국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입법을 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영국의 경우 1967년 남극조약법을 제정한 이래 1994년까지 수 차례의 개정을 거치고 남극조사위원회에 부여된 명령 제정권을 통하여 새로이 합의되는 남극조약체제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나 현재의 남극조약체제를 종합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별도의 국내법을 제정하기보다는 남극조약체제의 주요내용을 1994년 남극조약법에 포함하고 상세한 남극조약체제의 국가의무사항에 대해서는 부속서(schedule)로써 남극관련 조약을 포함시켜 국내적 이행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남극조약체제를 국내입법화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남극관련활동이나 남극에 대한 장기적 국가정책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남극관련법을 제정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의 남극조약체제의 규정내용이 종합적인 법률로 체계화하기 어려운 경우 몇 개의 분야별 개별법을 입법하여 국내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남극의 환경보호에 대한 적극적 관심의 표현, 우리 국민의 남극활동에 대한 국가적 규제, 남극조약체제 특히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의 충실한 실시, 남극활동을 통한 국제사회에의 기여 등 국내 입법의 필요성과 대륙법체제로서 우리나라 법제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일본의 사례와 같이 (가칭)『남극환경보호및자원보존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2. 남극관련법령의 소관부처

남극활동에 관한 허가서의 발급, 발급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부처에 관하여는 몇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우선은 원칙적으로 외교통상부를 남극관련활동 및 법령의 소관부처로 하고 외교통상부의 장관이 남극활동을 주관하는 국가기관으로써 설립되는 (가칭)남극과학위원회에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

적인 남극활동에 대한 행정을 당해 위임기관이 수행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남극활동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재원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 장관, 남극과학위원회 및 우리 국민의 남극출입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 장관, 남극환경보존을 위한 사항에 관하여는 환경부 장관 등 각각의 구체적인 남극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종합·조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효율적인 남극활동의 지원과 규제가 조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남극조약의 국내적 시행을 위한 입법에서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주도적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남극활동이 남극조약체제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국제적 성격의 행위이기 때문이지만 실질적인 남극활동관련 행정명령은 국가남극위원회에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가남극위원회의 법적 설치근거와 행정명령의 제정권 부여를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두번째로는 해양수산부가 남극관련활동과 법령을 소관하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남극관련활동을 전담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가칭) 남극과학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해양수산부가 관장하며 동 위원회에 주요권한을 위함하고 동 위원회가 행정주체가 되어 타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방안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남극관련활동을 주관하던 부처로서 해양수산부의 행정적 경험과 지식을 유지하는 방안으로서 지속적인 남극활동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할 것이다.

미국과 영국에서 자국민의 남극활동을 규율하는 법률은 근본적으로 자국의 남극에 대한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향후 전개될지도 모르는 남극관련 각국의 국익주장에 있어서 주도적 위치를 확보한다는 국가적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지원법인 동시에 타면 국제적인 환경보호를 위한 법제의 일환으로서 남극조약체제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국민의 남극환경 훼손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하는 규제법의 양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국립과학재단의 사무총장이 남극관련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되 재무장관, 상무장관 및 해안경비대를 소관하는 부처의 장이 당해 부처와 관련된 분야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으

며, 영국은 국무장관이 남극관련활동의 허가권을 포함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남극조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국무장관의 권한위임에 의해 일정한 권한을 행사한다. 미국과 영국은 공통적으로 국립과학재단의 사무총장 또는 남극조사위원회의 사무총장이 남극관련규칙 또는 규정을 제정하여 공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일본의 경우에는 환경청장관이 남극지역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문부성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포하도록 하고 남극관련 활동에 대한 각종 행정의 소관부처로 규정하고 있다.¹¹⁴⁾

이는 일본의 남극관련활동이 남극의 환경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어느 국가의 사례를 따르던 간에 직접적으로 남극활동을 하는 기관에 의해 자국민의 남극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통제하는 것이 법률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며 남극에 있어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요와 남극조약체제의 이행을 효율적으로 조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3. 남극활동지원을 위한 사항

대한민국 국민의 남극에서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구심점으로서 국립남극과학위원회의 설립과¹¹⁵⁾ 종합적인 남극활동 및 연구계획의 수립, 남극활동지원을 위한 시책의 강구 등의 규정이 남극조약체제의 국내적 시행을 위한 입법에 포함되어야 한다. 남극은 어느 국가에 의한 국가관할권이 배제되는 지역으로서 과학적·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군사적·국제정치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서 남극지역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활동은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3년 또는 5년 단위의 기간을 설정하여 종합적인 남극활동

114) 일본 『남극지역의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기본적 배려사항의 공표)

115) 국제기구로서 남극과학위원회(SCAR)는 1957년 국제과학연맹(ICSU)에 의하여 설립되어 2년 마다 개최되는 남극조약회의에 과학자료를 제공하고 각 국가의 과학정보 교환센터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0년 동 기구에 정식회원으로 가입하고 국가남극과학위원회를 설치하였다. 현재 국가남극과학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수행할 남극활동에 대한 연례보고를 SCAR에 하고 있으나 동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및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주무부처의 장관이 수립하도록 하며 종합적인 남극활동 및 연구계획의 수립에는 관계부처의 장관과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협의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제 2 절 국내입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 법의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총칙적 규정사항에서는 국내법제정의 목적, 법률상 용어의 정의, 당해 법률의 적용범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법의 적용범위로서 동법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및 사무소를 두고 활동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동법에 따른 허가대상자 이외에 동법의 규정에 따른 규제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에 복종하여야하는 모든 사람과 사물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이 남극조약협약당사국의 일원으로서 남극조약의 이행을 위해 ACTM에서 채택되는 관련조치와 권고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므로¹¹⁶⁾ 조약법상의 국가의 일반적 의무사항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¹¹⁷⁾

남극지역 내에서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활동으로는 남극조약 제1조의 군사적 성질의 모든 활동, 남극조약 제5조의 핵실험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분활동,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제7조의 과학조사를 제외한 남극광물자원개발과 관련된 모든 활동,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제5부속서 제8조 제4항의 남극사적지 및 기념물의 훼손 등이 있다.

2. 남극활동의 허가

남극활동의 허가에 관한 사항에는 허가의 신청, 허가의 발급, 허가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허가신청을 함에 있어서

116) 남극조약 제10조

117) 권문상 외, 앞의 논문, 16면

는 남극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신청서, 남극활동계획서, 환경영향평가서, 폐기물관리계획서, 비상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허가신청에 대하여는 남극지역활동의 남극관련 국제조약합치여부, 남극관련국내법과의 합치여부, 남극지역활동이 남극환경에 대한 영향평가에 있어 법령상의 기준에 일치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국제적인 과학수준에 비추어 남극환경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은가 등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는 규정뿐만 아니라 금지되는 남극지역활동으로서 남극지역 기후의 자연적인 변동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남극지역의 환경에 대한 오염우려가 있는 활동, 환경오염은 아니지만 남극지역의 대기조성을 변화시키거나 하천, 湖沼의 수위 또는 수량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활동, 남극동식물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남극고유가치를 해하는 활동 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허가신청의 처리절차를 상세히 포함하여 법령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허가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하여 정부는 남극조약체제 하에서 대한민국민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이 남극조약체제에 위반되지 않도록 보장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동 책임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남극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된 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발급하고 남극활동을 주재하는 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허위 또는 부정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은 후 허가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를 제재하기 위한 강제조치로서 벌칙조항의 규정이 필요하다. 다만 이 경우에 남극활동관련 법령위반행위가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위급한 상황 또는 천재지변의 상황에서 이를 피하기 위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벌칙을 면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동법령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처벌행위에 대하여는 사법적 심사에 의한 재심기회를 부여하여 행정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남극지역의 보호를 위한 행위

남극지역의 보호를 위한 행위로는 남극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남

극동식물군의 보호, 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 해양오염방지, 구역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다루어져야 한다. 이들 사항은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서 남극조약체제의 국내적 입법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이다.¹¹⁸⁾

이를 위해서는 남극지역에 있어서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을 별도의 장으로 편성하여 남극에서의 광물자원활동에 관한 규정, 동물군 및 식물군의 보존활동에 관한 규정,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 남극특별보호지구의 출입제한에 관한 규정, 남극사적기념물의 제거 및 훼손금지에 관한 규정 등을 두어야 한다.

4.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에는 남극활동감시관의 임명, 남극출입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체계의 수립, 남극활동을 허가 받은 자에 대한 보고요구, 시정명령, 사법경찰권의 행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¹¹⁹⁾

남극활동감시관의 임명은 남극지역 내에서 대한민국국민에 의하여 수행되는 남극활동을 적절히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서 남극지역에 체재하며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규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는 대한민국의 남극과학기지인 세종기지의 장을 남극활동감시관으로 정부가 임명하여 남극 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활동을 조사 및 감독하게 하고, 남극지역 내에서 대외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현지에서 외국 또는 외국의 과학기지와 필요한 협조체제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남극활동에 대한 보고는 남극조약체제에 의한 국가적 의무사항이다.¹²⁰⁾ 즉 우리나라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에 의한 남극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등 관련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 남극활동결과를 취합하여 향후

118)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제8조 제1항 및 제2항, 동 의정서 제3 부속서(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 제1조, 동 의정서 제4부속서(해양오염방지) 제2조 등 참조.

119) 권문상 외, 앞의 논문, 17면

120) 남극조약 제3조 제1항,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제22조 제2항

남극활동에 대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의 조건으로서 정기적 또는 수시적인 보고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남극에서의 국가관할권행사와 관련하여 남극지역에서는 동 지역에서 발생한 일반범죄 및 남극관련 국내법령 또는 허가조건의 위반에 대한 행정권의 행사를 위한 관련업무로써 위반혐의자의 신병확보, 증거의 확보, 증인확보를 위한 권한의 행사를 남극활동감시관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남극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검사에 관한 규정을 두어 남극활동감시관이 남극지역에 출입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차량 및 화물, 서류 등의 검사는 물론이고 남극에 있는 시설물 내에서의 검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벌칙 및 보칙규정

남극조약체제의 이행을 위한 국내입법사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규위반자에 대한 제재로서 징역 또는 벌금형, 또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조항의 설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벌칙의 내용으로서 징역의 기간 또는 벌금의 액수는 위반활동의 내용에 따라 차별을 두되 주요국의 벌칙조항과 비교하여 균형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에는 광물자원활동, 동물군 및 식물군의 보존, 폐기물의 처리, 남극특별보호지역 및 남극사적기념물의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등으로 매우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으며, 확인을 받은 남극활동계획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활동을 하거나 출입하거나 다른 시기에 하는 경우 그리고 허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한 남극지역활동을 허가받지 않고 남극에 출입한 경우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확인에 참가된 조건을 위반하거나 행위자허가증을 휴대하지 않거나 남극활동을 허가받은 자가 자신이 행한 남극활동을 보고하지 않거나 남극출입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답변을 한 경

우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미국의 경우 남극토착동식물의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달러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민사처벌로서 1만달러 또는 5천달러의 벌금 외에 형사처벌로서 5만달러의 벌금 또는 10년 미만의 징역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남극관련법의 실체적 규정에 대한 전제로서 그 전반에 걸쳐 적용되어야 하나 총칙규정으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항은 보칙으로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남극관련 국내입법의 홍보를 통한 자국민의 남극조약체제 이행확보, 자국민과 외국인의 남극관련활동을 감시하고 남극의 환경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자국정부 및 자국민 또는 외국정부 및 외국인의 남극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남극환경오염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상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을¹²¹⁾ 보칙의 내용으로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121)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제15조

부 록

부 록

○ 남극조약(The Antarctic Treaty)

아르헨티나, 호주, 벨지움, 칠레, 불란서,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남아프리카연방, 소련, 영국 및 미합중국 정부는, 남극지역이 오로지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서만 항구적으로 이용되고, 또한 국제적 불화의 무대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모든 인류의 이익이 됨을 인식하고, 남극지역에서의 과학적 조사에 관한 국제협력이 과학적 지식에 대한 실질적인 공헌을 가져옴을 인정하며, 국제지구관측년동안 적용되었던 남극지역에서의 과학적 조사의 자유의 기초 위에서 그러한 협력을 계속하고, 또한 발전시키기 위한 확고한 토대를 확립하는 것이 과학상의 이익 및 모든 인류의 진보에 합치함을 확신하며, 또한 남극지역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남극지역에서의 계속적인 국제조화를 확보하는 조약이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목적과 원칙을 조장하는 것임을 확신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남극지역은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서만 이용된다. 특히, 군사기지와 방비시설의 설치, 어떠한 형태의 무기실험 및 군사훈련의 시행과 같은 군사적 성격의 조치는 금지된다.
2. 이 조약은 과학적 연구를 위하여나 또는 기타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군의 요원 또는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한다.

제 2 조

국제지구관측년동안 적용되었던 바와 같은, 남극지역에서의 과학적 조사의 자유와 그러한 목적을 위한 협력은 이 조약의 제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계속된다.

제 3 조

1. 이 조약의 제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남극지역에서의 과학적 조사에 관한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아래 사항을 최대한 실현 가능하도록 할 것에 합의한다.

부 록

- (a) 남극지역에서의 과학적 계획을 가장 경제적이고 능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계획에 관한 정보를 교환함
 - (b) 남극지역에서 탐험대 및 기지간에 과학요원을 교환함
 - (c) 남극지역으로부터의 과학적 관측 및 결과를 교환하고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
2. 이 조를 실시함에 있어서 남극지역에 과학적 또는 기술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및 기타 국제기구와 협조적인 업무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모든 방법으로 장려된다.

제 4 조

1. 이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과 같이 해석되지 아니한다.
- (a) 어느 체약당사국이 종전에 주장한 바 있는 남극지역에서의 영토주권 또는 영토에 관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
 - (b) 어느 체약당사국이 남극지역에서의 그 국가의 활동 또는 그 국민의 활동의 결과 또는 기타의 결과로서 가지고 있는 남극지역의 영토주권에 관한 청구권의 근거를 포기하는 것 또는 감소시키는 것
 - (c) 남극지역에서의 타국의 영토주권, 영토주권에 관한 청구권 또는 그 청구권의 근거를 승인하거나 또는 승인하지 않는 것에 관하여 어느 체약당사국의 입장을 손상하는 것
2. 이 조약의 발효 중에 발생하는 여하한 행위 또는 활동도 남극지역에서의 영토주권에 관한 청구권을 주장하거나 지지하거나 또는 부인하기 위한 근거가 되지 아니하며, 또한 남극지역에서의 어떠한 주권적 권리도 설정하지 아니한다. 이 조약의 발효 중에는 남극지역에서의 영토주권에 관한 새로운 청구권 또는 기존 청구권의 확대를 주장할 수 없다.

제 5 조

1. 남극지역에서의 모든 핵폭발과 방사선 폐기물의 동 지역에서의 처분은 금지된다.
2. 핵폭발과 방사선 폐기물의 처분을 포함하는 핵에너지의 이용에 관한 국제협정이 체결되고, 제9조에 규정된 회의에 대표를 참가시킬

권리를 가지는 모든 체약당사국이 동 협정의 당사국일 경우, 그러한 협정에 따라 정해진 규칙은 남극지역에 적용된다.

제 6 조

이 조약의 제 규정은 모든 빙산을 포함하여 남위 60도 이남의 지역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동 지역내의 공해에 관한 국제법상의 어느 국가의 권리 또는 권리의 행사를 침해하거나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동 권리 또는 동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7 조

1. 이 조약의 목적을 증진하고, 또한 이 조약의 제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조약의 제9조에 언급된 회의에 대표를 참가시킬 권리를 가지는 각 체약당사국은 이 조에 규정된 조사를 행할 감시원을 지명할 권리를 가진다. 감시원은 그를 지명하는 체약당사국의 국민이어야 한다. 감시원의 이름은 감시원을 지명할 권리를 가지는 다른 모든 체약당사국에게 통보되며, 또한 그들의 임명의 종료에 관하여도 똑같이 통고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명된 각 감시원은 남극지역의 어느 지역 또는 모든 지역에 언제든지 접근할 완전한 자유를 가진다.
3. 남극지역내의 모든 기지, 시설 및 장비와 남극지역에서 화물 또는 사람의 양륙 또는 적재지점의 모든 선박과 항공기를 포함하여 남극지역의 모든 지역은 이 조 제1항에 따라 지명된 감시원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언제든지 개방된다.
4. 감시원을 지명할 권리를 가지는 어느 체약당사국도 남극지역의 어느 지역 또는 모든 지역에 대한 공중감시를 언제든지 행할 수 있다.
5. 각 체약당사국은 이 조약이 자국에 대하여 발효할 때 다른 당사국에게 아래사항을 통보하고, 그 이후에도 사전에 통고한다.
 - (a) 자국의 선박 또는 국민이 참가하는 남극지역을 향한, 또는 남극지역 내에서의 모든 탐험대 및 자국의 영역 내에서 조직되거나 또는 자국의 영역으로부터 출발하는 남극지역을 향한 모든 탐험대

부 록

- (b) 자국의 국민이 점거하는 남극지역에서의 모든 기지 및
- (c) 이 조약 제1조제2항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남극지역에 들어가게 될 군의 요원 또는 장비

제 8 조

1. 이 조약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명된 감시원과 제3조제1항(b)에 따라 교환된 과학요원 및 그러한 사람을 동행하는 직원은, 이 조약에 따른 자기의 임무의 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남극지역에서의 모든 사람에 대한 관할권에 관한 체약당사국의 각자 입장을 침해함이 없이, 남극지역에 있는 동안 자기의 임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들의 국적국인 체약당사국의 관할권에만 복종한다.
2. 남극지역에서의 관할권의 행사에 관한 분쟁에 관계된 체약당사국은 이 조 제1항의 규정을 침해하지 않고, 제9조제1항(e)에 따른 조치가 채택될 때까지 상호 수락할 만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즉시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 9 조

1. 이 조약의 전문에 명시된 체약당사국의 대표는 정보를 교환하고, 남극지역에 관한 공동관심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아래 사항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이 조약의 원칙과 목적을 조장하는 조치를 입안하고, 심의하고, 각자의 정부에 권고하기 위하여 이 조약의 발효후 2개월 이내에 캔버라시에서, 그 이후에는 적당한 간격을 두어 적당한 장소에서 회합한다.
 - (a) 남극지역을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서만 이용하는 것
 - (b) 남극지역에서의 과학적 연구를 용이하게 하는 것
 - (c) 남극지역에서의 국제적 과학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것
 - (d) 이 조약 제7조에 규정된 조사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것
 - (e) 남극지역에서의 관할권의 행사에 관한 문제
 - (f) 남극지역에서 생물자원을 보존하는 것

2. 제13조에 따른 가입에 의하여 이 조약의 당사국이 된 각 체약당사국은 과학기지의 설치 또는 과학탐험대의 파견과 같은 남극지역에서 실질적인 과학적 연구활동을 행함으로써 남극지역에 대한 자국의 관심을 표명하는 동안,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회의에 참가할 대표를 임명할 권리를 가진다.
3. 이 조약의 제7조에 언급된 감시원으로부터의 보고는 이 조제1항에 언급된 회의에 참가하는 체약당사국의 대표에게 전달된다.
4. 이 조제1항에 언급된 조치는 그 조치를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회의에 대표를 참가시킬 권리를 가지는 모든 체약당사국이 승인하였을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5. 이 조약에서 설정된 어느 권리 또는 모든 권리는 이 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러한 권리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어떠한 조치가 제안되었거나 심의되었거나 또는 승인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 조약의 발효일자로부터 행사될 수 있다.

제10조

각 체약당사국은 어느 누구도 남극지역에서 이 조약의 원칙 또는 목적에 반대되는 어떠한 활동에 종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적절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한다.

제11조

1. 이 조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둘 이상의 체약당사국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동 체약당사국은 교섭, 심사, 중개, 조정, 중재, 사법적 해결 또는 그들이 선택하는 다른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위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상기와 같은 성격의 분쟁은, 각각의 경우에 모든 분쟁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도록 회부되어야 한다. 그러나 분쟁당사국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일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 조제1항에 언급된 평화적 수단중 어느 것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계속 노력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2조

1. (a) 이 조약은 제9조에 규정된 회의에 대표를 참가시킬 권리를 가지는 체약당사국의 일치된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수정 또는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수정 또는 개정은 수탁국 정부가 전기한 모든 체약당사국으로부터 그것을 비준하였다는 통고를 접수한 때에 발효한다.
(b) 그 이후의 그러한 수정 또는 개정은 수탁국 정부가 다른 체약당사국으로부터 비준하였다는 통고를 접수한 때에 다른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다른 체약당사국중 이 조 제1항(a)의 규정에 따라 수정 또는 개정의 발효일자로부터 2년의 기간 내에 비준통고가 접수되지 않은 국가는 동 기간의 만료일자에 이 조약으로부터 탈퇴한 것으로 간주된다.
2. (a) 이 조약의 발효일자로부터 30년이 경과한 후, 제9조에 규정된 회의에 대표를 참가시킬 권리를 가지는 어느 체약당사국이 수탁국 정부에 대한 통보에 의하여 요청할 경우, 이 조약의 운영을 재검토하기 위한 모든 체약당사국회의가 될 수 있는 한 조속히 개최된다.
(b) 상기 회의에서 제9조에 규정된 회의에 대표를 참가시킬 권리를 가지는 체약당사국의 과반수를 포함하여, 그 회의에 참가한 체약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승인된 이 조약의 수정 또는 개정은 회의종료 즉시 수탁국 정부에 의하여 모든 체약당사국에 통보되고, 또한 이 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효한다.
(c) 위와 같은 수정 또는 개정이 모든 체약당사국에 통보된 일자로부터 2년의 기간이내에 이 조 제1항(a)의 규정에 따라 발효하지 않을 경우, 어느 체약당사국도 동기간의 만료후 언제든지 수탁국 정부에게 이 조약으로부터의 탈퇴를 통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탈퇴는 수탁국 정부가 통고를 접수한 2년 후에 발효한다.

제13조

1. 이 조약은 서명국에 의하여 비준되어야 한다. 이 조약은 국제연합 회원국 또는 이 조약 제9조에 규정된 회의에 대표를 참가시킬 권리

를 가지는 모든 체약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이 조약에 가입하도록 초청받은 다른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조약의 비준 또는 가입은 각국이 그 헌법절차에 따라 행한다.
3. 비준서 및 가입서는 이 조약에서 수탁국 정부로 지정된 미합중국 정부에 기탁된다.
4. 수탁국 정부는 모든 서명국 및 가입국에 대하여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자 및 이 조약의 발효일자와 조약의 수정 또는 개정의 발효일자를 통보한다.
5. 이 조약은 모든 서명국이 비준서를 기탁한 때에 그들 국가 및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에 대하여 발효한다. 그 이후 이 조약은 어느 가입국이 가입서를 기탁한 때에 그 가입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6. 이 조약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수탁국 정부에 의하여 등록된다.

제14조

이 조약은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이며, 미합중국정부 기록보존소에 기탁된다. 미합중국정부는 서명국 정부 및 가입국 정부에게 이 조약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미국의 남극관련법제>

○ 제16편 제44장 - 남극보존

제2401조 입법의 목적

(a) 배 경

- (1) 남극조약 및 제3차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ATCM)에서 채택된 남극동식물군의 보존을 위한 합의규칙은 남극의 과학조사자유와 국제적 협력의 지속에 대한 확고한 기초를 수립하였다.
- (2) 남극동식물의 연구, 그들의 혹독한 자연환경에의 적응 및 자연과의 상호관계는 인류에게 특별한 과학적 중요성을 갖는다.

(b) 목 적

이 법의 목적은 남극조약, 남극동식물군의 보존을 위한 합의규칙, ATCM의 권고VIII-3 따라 남극동식물군 및 당해 동식물이 근거하고 있는 환경생태계의 보존과 보호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2402조 정의

이 법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합의규칙”이라 함은 (A) 제3차 ATCM에서 협의당사국들의 승인을 위해 권고되었으며, (B) 남극조약의 제IX(1)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는 남극동식물군의 보존을 위한 합의규칙을 말한다.
- (2) “남극”이라 함은 남위 60도 이남의 지역을 말한다.
- (3) “채취”라 함은 잘라내기, 분리, 이동 또는 그러한 행위와 연계되고자 하는 시도를 말한다.
- (4) “사무총장”이라 함은 국립과학재단의 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에 의하여 임명된 과학재단의 임원 및 직원을 말한다.
- (5) “외국인”이라 함은 (A) 외국 국적의 개인, (B) 외국법에 따라 설립되고 조직된 회사, 조합, 신탁, 협회, 또는 기타의 법적 실체, (C) 외국의 정부부처, 또는 기구 및 그러한 기구의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을 말한다.

- (6) “토착조류”라 함은 그 일생의 어느 단계에서(알을 포함한다) 어느 특정한 부류의 조류의 구성원으로 제2405(b)(1)에 따라 사무총장에 의해 토착종으로 지정된 조류를 말한다.
- (7) “토착포유류”라 함은 그 일생의 어느 단계에서 국제고래위원회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 아닌 어느 특정한 부류의 포유류의 구성원으로 제2405(b)(1)에 따라 사무총장에 의해 토착종으로 지정된 포유류를 말한다.
- (8) “토착식물”은 그 일생의 어느 단계에서(씨앗을 포함한다) 어느 식물의 구성원으로 제2405(b)(1)에 따라 사무총장에 의해 토착종으로 지정된 식물을 말한다.
- (9) “오염원”은 제2405(b)(6)에 따라 사무총장에 의해 오염물질로 지정된 물질을 말한다.
- (10) “특별과학적관심지역”이라 함은 제2405(b)(3)에 따라 사무총장에 의해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11) “특별보호지역”이라 함은 제2405(b)(4)에 따라 사무총장에 의해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12) “특별보호종”이라 함은 제2405(b)(3)에 따라 사무총장에 의해 지정된 토착포유류 및 조류를 말한다.
- (13) “포획”이라 함은 공격, 위해, 추적, 사냥, 사격, 살생, 덫 또는 생포 등 하는 행위 및 이들 행위에 연관된 시도를 말한다.
- (14) “조약”은 1959년 12월 1일 워싱턴 D.C.에서 서명된 남극조약을 말한다.
- (15) “미국”이라 함은 연방구성주, 컬럼비아특별구, 푸에르토리코공화국, 미국령 사모아, 버진아일랜드, 괌, 북마리아나 정부를 포함하는 남태평양 신탁지역 등을 말한다.
- (16) “미국시민”이라 함은 (A) 미국 국민 또는 시민인 개인, (B) 미국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조직된 회사, 조합, 신탁, 협회 또는 기타 법적 실체, (C) 연방정부 또는 주 정부의 부처 또는 기구 및 당해 기구의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을 말한다.

제2403조 금지되는 행위

(a) 총 칙

다음의 행위는 불법이다.

- (1) 이 법에 의하여 승인되거나 이 법 제2404조에 따라 발급된 허가 없이 미국시민이 (A) 남극에서 토착포유류 또는 토착 조류를 포획하는 것, (B) 특별보호지역에서 토착식물을 채취하는 것, (C) 남극지역에 남극지역토착종이 아닌 동물이나 식물을 반입하는 것, (D) 특별보호지역 또는 특별 과학적 관심지역에 들어가는 것, (E) 남극지역에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폐기하는 것
- (2) 이 법에 의하여 승인되거나 이 법 제2404조에 따라 발급된 허가 없이 미국시민이나 외국인이 남극에서 포획한 토착포유류 또는 토착조류 또는 특별보호지역 내에서 채취된 토착식물을 (A) 보유, 매매, 매매의 제안, 배달, 수령, 운반, 운송 또는 배송 등의 방법에 의하여 행하는 모든 것, (B) 미국 내로 수입, 미국 외로 수출 또는 수출입의 시도
- (3) 미국시민이나 외국인이 이 법에 따른 규칙을 위반하는 것, (4) 미국시민 여부를 떠나 어떠한 자가 이 법의 제2404조에 의하여 발급된 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것

사람의 생명보호를 위한 위급상황시에 허용된 것이라면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어떠한 행위도 불법이 아니다.

(b) 예 외

이 조의 (a)항은 (1) 1978년 10월 28일에 포획되거나 채취된 토착포유류, 토착조류, 또는 토착식물, (2) 배아상태의 포유류, 조류, 식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978년 12월 28일로부터 180일 이후에 발생한 이 조의 (a)항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와 관련하여 당해 행위에 포함된 토착포유류, 토착조류, 토착식물은 당해 일에 포획 또는 채취되지 않았다거나 제(2)항에 언급된 배아상태가 아니라는 반증가능한 추정이 존재한다.

제2404조 허가

(a) 총 론

사무총장은 이 법의 제2403(a)에 의하여 다르게 금지되는 행위를 허용하는 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b) 허가신청

(1) 이 법에 따른 허가신청은 사무총장이 정한 규칙에 의하여 일정한 방식과 형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일정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사무총장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목적으로 제출된 각각의 신청에 대한 통지를 연방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당해 통지는 통지의 공표 후 30일 이내에 이해관계당사자에 의하여 당해 신청에 대한 서면자료, 검토 또는 심사의견의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신청의 일부로서 사무총장에 의하여 수합된 정보는 공공기록문제로서 일반에 공개되어야 한다.

(c) 특정 허가신청에 대한 관계장관의 조치

(1) 사무총장이 이 법에 따라 (A) 이 편의 제1362(5)조의 의미에 해당하는 해양포유류인 토착포유류, (B) 1973년 멸종위험의 동식물법에 따른 멸종위험의 종 또는 위협받는 종인 토착포유류, 토착조류, 토착식물, (C) 철새조약법에 따라 보호되는 토착조류 등에 관련하여 취해지는 조치를 위한 권한을 요청하는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사무총장은 관계장관으로서 통상부장관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신청서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관계장관”이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사무총장으로부터 신청서의 사본을 접수한 후 신청서에 제안된 조치에 관계없이 관계장관은 즉시 결정하고 이를 사무총장에게 통지하고 관계장관에 의하여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다른 권한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3) 관계장관이 사무총장에게 신청서에 제안된 조치가 관계장관에

부 록

의해 시행되는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다른 권한부여를 요청하는 것인 경우, 사무총장은 필요한 허가 권한부여가 관계장관에 의하여 발급되지 않고 그에 의한 사본이 사무총장에게 제출되지 않는 한 당해 조치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발급할 수 없다. 토착포유류, 토착조류, 또는 토착 식물과 관련된 조치의 수행을 위한 관계장관에 의한 허가 또는 권한부여는 관련된 신청인이 이 법에 따른 허가를 사무총장에게 발급하도록 요청하기 위한 권한부여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d) 허가의 발급

이 법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접수한 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또는 이 법의 제(c)항을 적용할 신청이 있는 경우에 당해 항의 적용 가능한 요건이 수집되어진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사무총장은 허가를 발급하거나 거부하거나 하여야 한다. 이 항에 따른 허가의 발급 또는 거부 이후 10일 이내에 사무총장은 연방관보에 발급 또는 거부의 통지를 게재하여야 한다.

(e) 허가의 조건

- (1) 이 법에 의하여 발급되는 허가는 (A) 적용가능한 경우 (i) 허가가 적용되는 토착포유류, 토착 조류, 또는 토착식물의 숫자와 종류, (ii) 당해 포유류 또는 조류가 포획 또는 채취, 운송, 운반, 배송이 허용되어진 경우, 당해 행위가 취해지는 방식 및 당해 포획 등이 발생하는 지역, (iii) 당해 식물이 채취가 허용된 경우 채취가 이루어지는 지역 및 방법 등을 특정하여야 하며; (B) 당해 허가의 유효기간; (C)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기타 조건 및 당해 허가에 따라 권한이 부여된 조치는 이 법의 목적, 제(2)항에 정한 기준 및 이 법에 의한 규칙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 (2) 다음의 행위에 대한 권한부여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발급된 허가에 사무총장에 의하여 부과된 조건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A) (당해 포유류 및 조류가 특별보호종이 아닌) 토착포유류 또는 토착조류의 (특별보호지역 내가 아닌) 남극지역 내에서의 포획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허가는 (i) (I) 과학적 연구 또는 과학적 정보를 위한 견본, (II) 박물관, 동물원 또는 기타 교육적 또는 문화적 연구소를 위한 견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발급될 수 있으며 (ii) 가능한 한 (I) 다음 산란기의 순수 자연적 재생산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대체될 수 있는 정도 이하로 토착포유류 또는 토착조류가 포획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II) 종의 다양성 및 남극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B) 특별보호종의 포획에 대한 허가증은 오로지 (i) 당해 포획에 필수적인 과학적 목적이 존재하고, (ii) 당해 허가에 따라 허가되는 행위는 현존하는 자연적 생태계 또는 당해 종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만 발급되어야 한다.

(C) 특별보호지역에의 출입을 승인하는 허가는 (i) (I) 다른 지역에서는 확보될 수 없으며 당해 출입을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는 불가피한 과학적 목적이 존재하고, (II) 당해 허가에 따라 허용된 행위가 당해 지역의 자연적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만 발급될 수 있으며, (ii) 당해 지역에서 어떠한 지면운행수단의 운영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D) 특별한 과학적 관심지역에 대한 출입을 승인하는 허가는 당해 지역에 대하여 이 법의 제2405(b)(3)에 따라 정해진 관리 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f) 사법적 심사

허가신청자는 이 법에 따라 사무총장이 발급한 허가의 조건 또는 당해 허가의 발급거부에 대하여 사법적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한 심사는 허가신청자의 주소지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컬럼비아특별구 연방지방법원 연방지방법원에 당해 허가가 발급된 후 또는 거부된 후 60일 이내에 심사를 위한 청원을 제출함으로써 개시된다.

(g) 변경, 정지, 취소

- (1) 사무총장은 (A) 허가가 발급된 이후에 이루어진 이 편 제2405조에 따른 규칙의 개정에 일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B) 허가를 이 법의 목적에 일치하도록 하는 조건에 변경이 있는 경우, (C) 허가의 조건, 이 법에 따른 규칙, 이 법의 규정에 대한 위반이 있었던 경우에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발급된 허가에 대하여 변경하거나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2) 사무총장이 이 법에 따른 허가의 변경, 정지, 또는 취소를 제안한 경우, 허가를 받은 자는 적절한 통지 후에 당해 변경, 정지, 취소와 관련하여 사무총장에 의한 청문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청문이 요구되는 경우 사무총장에 의하여 제안된 행위는 제안된 조치가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에 의해 취하여진 것이 아닌 한 청문 이후에 사무총장에 의하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당해 청문 이후 사무총장에 의하여 취해진 조치는 동일한 기초 위에서 이 법의 제(e)항에 따른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규정된 바와 같이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다.
- (3) 사무총장에 의한 허가의 변경, 정지 또는 취소의 통지는 사무총장의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방관보에 게재되어야 한다.

(h) 허가수수료

사무총장은 이 법에 의한 허가신청을 수리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당해 수수료의 총액은 당해 신청서를 수리하는데 있어 사무총장에 의한 행정비용에 상응한 정도이어야 한다.

제2405조 규칙

(a) 총론

사무총장은 국무장관 및 다른 관계공무원과 협의 후에 이 법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규칙을 정하여야 한다.

(b) 특정규칙

이 법의 제(a)항에 따라 정하도록 요구된 규칙은

- (1) 남극 자생이며 남극에 분포되어 있는 (A) 각각의 조류의 종, (B) 포유류의 종, (C) 식물의 종과 같은 토착종을 지정하여야 한다.
- (2) 적용 가능한 합의규칙의 규정에 따라 보호를 위하여 제(a)항에 따라 지정된 토착종의 구성원이 남극 내에서 포획되어지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특정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 (3) 특별 과학적 관심지역으로서 과학적 조사를 위해 독특한 가치를 갖고 있으며 간섭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제8차 ATCM의 권고VIII-3에 따라 미국에 의해 승인된 지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당해 권고에 따라 미국이 당해 지역을 위해 승인한 관리계획에 따라 당해 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정하여야 한다.
- (4) 특별 보호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의 현저한 과학적 또는 생태적 관심으로 인하여 합의규칙에 따라 특별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 (5) 합의규칙에 따라 미국이 특별보호를 위하여 승인한 토착 포유류 및 조류의 종을 특별 보호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6) 사무총장이 당해 물질이 남극에 반입되는 경우 인간의 건강에 위협을 야기하거나 생물자원 또는 해양생물에 위협이 되거나, 적정한 상태에 피해를 입히거나 남극의 합법적 이용에 방해가 될 것으로 판단하는 오염물질을 지정하여야 한다.
- (7) 남극 내에서 오염물질의 배출이나 폐기를 방지하거나 통제하기 위하여 취해져야하는 조치를 특정하여야 한다.
- (8) 남극자생종이 아닌 동물 또는 식물로서 남극에의 반입이 금지되거나 허용되는 동물 및 식물을 지정하여야 하며, 남극에 반입되는 것이 허용된 동식물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통제조치를 특정하여야 한다.
- (9) 이 법의 제2403(a)조의 본문 후단에 정한 배제조치와 관련하여 긴급상황을 특정하여야 한다.

부 록

- (10) 적용 가능한 경우 이 법 제2404조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를 위한 조치의 수행에 부수되어 요구되는 모든 통지, 보고, 자진신고 또는 다른 문서의 형식, 내용 및 제출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제2406조 남극방문의 신고

국무총장은 미국시민과 관련하여 남극여행의 사전신고 제출을 포함한 남극조약 제7조의 제5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있어서 “미국시민”은 미국 내에서 미국으로부터 남극으로의 여행을 조직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제2407조 민사처벌

(a) 처벌의 평가

이 조의 제(b)항에 따른 청문결과 사무총장에 의하여 이 법의 제2403(a)조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행하거나 제2406조에 따라 정한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자는 민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민사처벌은 금지된 행위가 고의로 행하여지지 않은 한 각각의 위반에 대하여 5,000달러를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고의행위에 대한 민사처벌의 합계는 각 위반에 대하여 10,000달러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지속적인 위반의 경우 각각의 날은 별개의 범법행위를 구성한다. 민사처벌의 합계는 사무총장에 의하여 서면통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결정된 민사처벌은 사무총장에 의하여 면제되거나 경감될 수 있다.

(b) 청문

(a)항에 따른 민사처벌의 결정을 위한 청문은 제5편의 제554조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 그러한 청문의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사무총장은 출석 및 증인의 신문, 관련 서류, 사적 및 문서의 제출을 위해 소환장을 발급할 수 있으며 선서를 실시할 수 있다. 소환된 증인에게는 미국의 법원에 소환된 다른 증인과 동일한 비용과 교통비를 지급한다. 이 항에 따라 발부된 소환에 항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당해 소환을 받은 자가 거주하거나 영업을 수행하는 지역의 연방지방법원

은 연방정부가 당사자에게 통지를 한 후 연방정부의 신청에 근거하여 당사자에게 사무총장에게 출두하여 증언을 하거나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을 발하는 관할권을 갖는다. 이러한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은 법정모독죄로 처벌할 수 있다.

(c) 심 사

이 조의 (a)에 따라 민사처벌이 결정된 자가 그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무총장은 법무장관에게 당사자가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는 지역의 관할법원에 벌금의 징수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해 법원은 심리 및 재판관할권을 갖는다. 법원은 사무총장에게 제출된 기록에 근거하여 당해 조치에 대해 심리하며 사무총장의 결정이 기록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얻은 실질적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경우 승인하여야 한다.

(d) 타법에 의한 처벌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이 조의 (a)항에 의한 민사처벌의 결정은 당해 행위에 대하여 1972년 해양포유류보호법, 1973년 멸종위기종보호법, 철새조약법 등을 포함하는 다른 법률에 의한 민사처벌의 결정을 금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제2408조 형사범죄

(a) 범법행위

이 편의 제2403(a)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고의적으로 범하는 경우 당사자는 범법행위에 대한 유죄이다.

(b) 처 벌

이 조의 (a)항에 정한 범법행위는 10,000달러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c) 타법의 위반행위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이 조의 (a)항에 따른 유죄결정은 1972년 해양포유류보호법, 1973년 멸종위기종보호법, 철새조약법 등을 포함하

부 록

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당해 행위에 대한 유죄결정을 금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제2409조 시행

(a) 책 임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규칙 또는 발급된 허가의 규정은 사무총장, 재무장관, 상무장관, 내무장관 및 해안경비대를 소관하는 부의 장관에 의하여 시행된다. 사무총장 및 관계부처 장관은 당해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有償性的 원칙에 근거한 계약을 통하여 연방 또는 주 정부의 타 부처 인력, 서비스,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b) 당국자의 권한

(사무총장, 재무장관, 통상장관, 내무장관, 해안경비대를 소관하는 부처의 장관 또는 사무총장 또는 이 조 (a)항에 따른 계약을 이행하는 연방 또는 주 정부부처의 장에 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규칙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급된 허가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이 부여된 당국자는

- (1) 미국의 권한하에 발부된 명령, 영장, 소환장 또는 기타의 수속을 집행할 수 있다.
- (2) 당사자가 이 편의 제2403(a)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영장 없이 사람, 장소 또는 수송수단에 대한 수색을 할 수 있다.
- (3) 당사자가 이 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하였거나 하려고 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영장 없이 증거물에 대한 압수를 할 수 있다.
- (4) 법규의 위반자에 대한 체포에 단서가 되는 정보제공 및 체포과정의 협력에 대한 보상의 제안 및 지급
- (5) 이 법규정의 시행에 관련된 문제에 관련된 조사, 선서의 시행, 증명서의 접수 등을 할 수 있다.
- (6) 미국으로 반입되거나 미국에서 반출되는 화물, 수화물, 또는 기타 물품 및 서류 등 모든 소지품에 대한 조사 및 조사를 위한 구

금을 할 수 있다.

- (7) 체포되어야 하는 어떤 자가 담당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이 편의 제2303(a)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당해 행위와 관련하여 영장을 제시하거나 영장 없이 당사를 체포할 수 있다.

(c) 압 수

계류중인 민사 또는 형사소송절차의 처분에 따라 또는 몰수를 위한 대물적 소송의 개시에 따라 이 조의 제(b)항에 의하여 압수된 물품은 사무총장, 재무장관, 상무장관, 내무장관 또는 해안경비대를 소관하는 부처의 장관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의하여 보관되어야 한다. 다만 당해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당해 물품을 보관하는 대신에 물품의 소유자에게 채권 또는 다른 대체 가능한 보증증서를 우송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d) 몰 수

- (1) 이 편의 제2403(a)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의 위반과 관련된 동물 또는 식물은 미국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 된다.
- (2) 이 편의 제2403(a)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의 수행에 이용된 모든 총기, 덧, 그물망, 기타의 장비, 선박, 차량, 항공기 및 다른 교통수단은 미국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 된다.
-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압수의 경우, 또는 당해 물품에 대한 청구의 포기 또는 면제의 경우, 규칙에 의하여 정하여 졌다면 당해 물품은 사무총장, 재무장관, 상무장관, 내무장관, 또는 해안경비대를 소관하는 부처의 장에 의하여 이 법의 목적에 일치되는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한다. 다만 토착포유류, 토착조류 또는 토착식물은 일반에 판매될 수 없다.

(e) 관세법의 적용

압수, 몰수 및 관세법 위반에 사용된 선박의 몰수, 당해 선박의 처분 및 그 매도로부터 발생한 이익금, 몰수의 면제 또는 경감에 관련된

부 록

모든 법규정은 당해 법 규정이 적용가능하고 이 법의 규정에 일치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압수 및 몰수에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관세법에 의하여 세관직원에게 양도되거나 부과된 모든 권한, 권리 및 의무는 사무총장, 통상부장관, 내무부장관, 해안경비대를 소관하는 부처의 장관 또는 이들이 지명한 사람에 의하여 행사되거나 이행될 수 있다.

(f) 규 칙

사무총장, 재무부장관, 통상부장관, 내무부장관, 해안경비대를 소관하는 부처의 장관은 이 법의 규정 및 이 법에 의하여 제정된 규칙 또는 발급된 허가의 규정의 이행을 위한 적절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라 검사를 수행함에 있어 그리고 토착포유류, 토착조류, 토착식물, 남극의 고유종이 아닌 동물 및 식물의 이전, 탑재, 처리, 또는 저장, 기타 이 법에 따라 압수 또는 몰수된 증거물에 있어서 발생한 미국정부의 비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410조 지방법원의 관할권

연방지방법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제정된 규칙 및 발급된 허가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사건과 분쟁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갖는다.

제2411조 연방정부 부처의 협조

남극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는 각각의 연방정부 부처는 실행가능한 최대한의 범위까지 이 법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자신의 권한을 활용하여야 하며 이 법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총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2412조 현행 조약과의 관계

이 법의 어느 규정도 당해 국제조약, 협약 또는 협정이 1978년 10월 28일 미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 경우 국제조약, 협약 또는 협정 또는 당해 조약, 협약, 협정을 이행하는 제정법의 규정에 반하거나 대체하는 것으로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2413조 예외규정

(a) 규 칙

1996년 10월 이전에 이 장에 따라 공포된 모든 규칙은 이 편의 제 2405조에 따라 대체규칙이 공포되기까지 효력을 갖는다.

(b) 허 가

이 장에 의하여 발급된 모든 허가는 당해 허가의 조건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기까지 효력을 갖는다.

○ 제16편 제44A장 - 『1984년 남극해양생물자원협약법』

제2431조 입법배경 및 목적

(a) 배 경

- (1)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협약은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호 및 보존에 필요한 국제적 체계를 수립하고 법적 의무를 창설하였다.
- (2) 협약은 개별 서식물 및 종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리고 남극해양생태계 전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기준을 포함하여 남극해양생물자원의 관리에 대한 혁신적인 생태계 접근방식을 채택하였다.
- (3) 협약은 미국의 환경 및 자원관리에 관한 관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4) 협약은 평화적 국제협력지역으로서 남극의 유지라는 미국의 장기적인 법적 정치적 목표에 중대한 기여를 의미한다.
- (5) 미국의 남극해양생물자원에 대한 기초적이며 감독되어진 연구프로그램은 협약목적의 효율적인 이행에 대한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다.
- (6) 미국은 남극의 빙하지역에 있어서 쇄빙선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선단의 개발과 유지에 중대한 안보적, 경제적, 환경적 이해를 가지고 있다.

(b) 목 적

이 법의 목적은 미국과 관련하여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적 권한을 제공하는데 있다.

제2432조 정의

이 법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남극수렴선

“남극수렴선”이라 함은 위도선과 자오선에 따라 다음의 점을 연결한 선을 말한다. 남위 50도·경도0도, 남위50도·동경30도, 남위45도·동경

30도, 남위45도·동경80도, 남위55도·동경80도, 남위55도·동경150도, 남위60도·동경150도, 남위60도·서경50도, 남위50도·서경50도, 남위50도·경도0도

(2) 남극해양생물자원

“남극해양생물자원”이라 함은 남극수렴선 이남에서 발견되는 지느러미 있는 어류, 연체동물, 갑각류동물 및 조류를 포함한 기타 모든 종류의 생물자원을 말한다.

(3) 위원회

“위원회”라 함은 협약의 제7조에 따라 설립된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한 위원회를 의미한다.

(4) 협 약

“협약”은 1980년 호주의 캔버라에서 체결되고 1982년 4월 7일 미국에 효력을 발생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을 의미한다.

(5) 어획 또는 기타 관련된 활동

“어획” 및 “어획 또는 기타 관련된 활동”은 (A) 남극해양생물자원에 대한 방해, 추적, 사냥, 사격, 상해, 살상, 덧사냥 또는 어획, (B) (A)항에 규정한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시도, (C) (A)항에 정한 활동으로 귀결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기타의 활동, (D) 바다에서 (A)항 내지 (C)항에 정한 활동을 지원하거나 준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6) 어 획

“어획”은 어업 및 기타 관련활동에 종사는 것을 의미한다.

(7) 수 입

“수입”이라 함은 당해 수입이 미국의 관세법에 의한 수입을 구성하는지와 관계없이 미국의 관할권내의 지역에 상륙, 반입, 도입 또는 상륙, 반입, 도입의 시도를 의미한다.

(8) 사 랫

“사람”이라 함은 개인, 조합, 회사, 신탁, 협회 그리고 미국의 관할권에 종속되는 다른 법적 실체를 의미한다.

부 록

(9) 과학위원회

“과학위원회”는 협약의 제14조에 의하여 설립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을 위한 과학위원회를 의미한다.

(10) 미국선박

“미국선박”이라 함은 당해 선박이 1958년 공해협약의 제5조에 따라 외국의 국적이 부여되지 않은 한 (A) 제46편의 제121장에 따른 등록을 한 선박 또는 이 편의 제123장에 규정된 바에 포함되는 선박, (B)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i) 미국 또는 미국의 영역, 연방 또는 미국연방의 재산, (ii) 주 또는 주의 정치적 하위 부서, (iii) 미국의 시민 또는 국민, (iv) 연방 또는 주법, 컬럼비아 특별구 또는 미국의 영역의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또는 연방재산에 의하여 소유된 선박, (C) 과거에 미국법에 따른 등록을 한 선박으로서 1958년 공해협약의 제5조에 따라 외국국적이 부여되었는가와 관계없이 미국시민이 아닌 개인에게 매도되거나 외국에 등록하거나 외국선적을 갖거나 한 선박을 말한다.

(11) 미국의 관할권에 종속되는 선박

“미국의 관할권에 종속되는 선박”이라 함은 1958년 공해협약의 제6조의 제(2)항에 따라 국적이 없는 선박 또는 국적이 없는 선박과 유사한 선박을 포함한다.

제2433조 대표

(a) 위원회 대표

국무장관은 통상부장관 및 국립과학재단의 사무총장의 동의하에 위원회에서 미국을 대표할 연방직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b) 과학위원회 대표

통상부장관 및 국립과학재단 사무총장은 국무장관의 동의하에 과학위원회의 미국대표를 지명하여야 한다.

(3) 보 상

위원회 및 과학위원회의 미국대표는 대표로서 자신의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추가적인 보상도 받지 못한다.

제2434조 보존조치, 감시 및 검사체계

(a) 보존조치

- (1) 통상부장관 및 국립과학재단 사무총장의 동의하에 국무장관은 (A) 협약의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된 조치를 미국이 수용할 수 없거나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지에 대한 결정, (B) 협약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당해 결정의 통지를 할 권한이 있다.
- (2) 국무장관은 (A) 실행가능한 경우 제(1)항에 의한 각각의 결정을 연방관보에 시의 적절하게 공표하고 이에 대한 공공의 서면의견을 유도하여야 하며, (B)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 제출된 각각의 통지를 연방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b) 감시 및 검사체계

국무장관은 통상부장관과 국립과학재단 사무총장, 해안경비대를 소관하는 부처의 장의 동의하에 협약 제24조에 따른 감시 및 검사체계의 수립 및 당해 체계수립을 위한 잠정협정에 동의할 권한을 갖는다.

(c) 위원회로부터의 답변

국무장관은 미국정부를 위하여 위원회로부터의 보고, 요청, 기타 통지사항을 수령할 권한을 갖으며 직접 또는 관계부처에 대한 사안 이관을 통하여 당해 통지사항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는다.

제2435조 불법행위

- (1) 협약의 규정 또는 협약 제9조에 따라 미국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보존조치에 위반하여 어획 또는 이에 관련되는 행위에 종사하는 것,
- (2) 이 법에 따라 공포된 규칙을 위반하는 것,
- (3) 남극해양생물자원을 어획한 당사자 또는 어획에 사용된 선박의 국적에 관계없이 협약의 제9조에 따라 미국에 효력을 발생한 보존조치에 위반하여 또는 이 법에 따라 공포된 규칙에 위반하여 어획한

부 록

남극해양생물자원(또는 그 일부 또는 果實)이라는 것을 알면서 또는 합리적이려면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배송, 운송, 매매·구매·수입·지출의 제안, 또는 보관, 관리, 소유하는 것

- (4) 미국선박 또는 미국의 관할 하에 있는 선박에 미국정부의 권한 있는 직원이 협약, 이 법, 이 법에 따라 공포된 규칙의 이행과 관련하여 수색 또는 감시를 하기 위하여 승선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 (5) 제(4)항에 정한 수색 또는 검사를 수행하는 미국정부의 권한 있는 직원에 대한 공격, 저항, 반대, 방해, 협박 또는 간섭을 하는 것
- (6) 이 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에 대한 체포 또는 구금에 저항하는 것
- (7) 다른 사람이 이 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알면서 당사자의 체포 또는 구금을 간섭하거나 지체시키거나 방해하는 것 등은 불법이다.

제2436조 규칙

통상부장관은 국무장관, 해안경비대를 소관하는 부처의 장, 관계 연방부처의 장과 협의한 후에 이 법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규칙을 공포하여야 한다.

제2437조 민사처벌

(a) 처벌의 부과

- (1) 이 조의 제(b)항에 따른 청문회이후에 통상부장관에 의하여 이 편의 제2435조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범하였다고 확인된 자는 민사처벌에 처해져야 한다. 위반행위가 고의적으로 행하여지지 않은 이상 민사벌금액은 각각의 위반에 대하여 5,000달러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위반행위가 고의로 이루어진 경우 벌금액은 각각의 위반에 대하여 10,000달러를 초과하지 못한다. 위반행위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의 각각의 날마다 별도의 범법행위를 구성한다. 민사벌금의 금액은 통상부장관에 의하여 서면통지로 부과되어야 한다. 당해 벌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통상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성격, 상황, 범위, 중요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위반행위자와 관련하여 장관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내

에서 고의성의 정도, 전과경력, 지급능력, 법관이 요청할 수 있는 기타 다른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2) 통상부 장관은 이 조의 (c)항에 의하여 사안이 법무장관에게 이관되기 전에 조건부 또는 아무 조건없이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또는 이미 부과된 민사처벌을 타협, 수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b) 청문회

이 조의 제(a)항에 따른 민사처벌의 부과를 위한 청문회는 제5편의 제554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청문회의 수행을 위해서 통상부 장관은 증인의 출석 및 증언, 관련 서류, 서적 및 문서의 제출을 위한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선서를 실시할 수 있다. 소환된 증인은 미국연방법원에 소환된 증인과 동일한 비용 및 교통비를 지급 받는다. 이 항에 따른 소환장에 의한 소환을 거부하는 경우 당사자가 발견되거나 거주하거나 사업을 하는 지역의 연방지방법원은 미국연방법무장관의 신청에 따라 그리고 당사자에 대한 통지 이후에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통상부 장관에게 증언하도록 하거나 통상부 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명령서를 발부하는 관할권을 갖는다. 당해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법원은 범정모독죄로 처벌할 수 있다.

(c) 민사처벌의 심사

이 조의 제(a)항에 의하여 민사처벌이 부과된 자는 당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항소통지서를 제출하고 당해 통지의 사본을 통상장관, 법무장관 및 관계 장관에게 등기우편으로 동시에 우송하여 그에 대한 심리를 받을 수 있다. 통상장관은 신속하게 이 사안을 연방법무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하며 법무장관은 제28편의 제211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위반 또는 부과된 처벌에 관한 기록의 공증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은 사실관계와 명령서가 제5편의 제706(2)(E)에 의한 실질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무효화하여야 한다.

부 록

(d) 민사처벌에 대한 손실배상

연방법무장관은 관련 연방지방법원에 대하여 (1)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항소할 수 없는 명령이 되었고 통상부장관에 의하여 법무장관에게 이관된 이 법에 따라 부과된 민사처벌 또는 (2) 관련 법원에 의하여 연방정부의 승소를 부여한 최종적인 판결에 대하여 손실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 타법에 의한 처벌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이 조의 (a)항에 따른 민사처벌의 부과는 당해 행위에 대한 타법에 의한 민사처벌의 부과를 배제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제2438조 형사범죄

(a) 위법행위

이 편외 제2435조의 제(4),(5),(6) 또는 (7)항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행한 자는 범죄행위를 하는 것이다.

(b) 처 벌

이 조의 (a)항에 정한 위반행위는 50,000달러의 벌금 또는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다.

(c) 타법에 의한 위법행위

어떠한 행위에 대한 이 조의 (A)항에 의한 유죄판결은 당해 행위에 대한 타법에 의한 유죄판결을 배제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제2439조 집행

(a) 책 임

이 법의 규정은 상무장관 및 해안경비대를 소관하는 부처의 장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당해 장관은 이 업무의 수행에 있어 유상성에 기초한 협정에 근거하여 타 연방부처의 인력, 서비스, 설비를 활용할 수 있다.

(b) 당국자의 권한

(상무장관, 해안경비대를 소관하는 부처의 장관 또는 이들 장관과 이 조의 제(a)항에 따른 협정을 체결한 연방부처의 장관에 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의하여 제정된 규칙의 규정을 집행할 권한이 부여된 연방직원은 당해 규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 (1) 연방의 권한하에서 발부된 영장, 소환장 또는 다른 소송절차를 확보하고 집행할 수 있다.
- (2) 당사자가 이 편의 제2435조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미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사람, 장소, 운송수단에 대하여 영장없이 수색할 수 있다.
- (3) 영장 없이 미국의 선박 또는 관할권하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승선하여 수색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 (4) 영장 없이 (A) 당사자가 이 편의 제2435조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이 근거가 있는 경우 증거물, (B) 당해 범법행위에 관련된 남극해양생물자원(그 일부 또는 과실), (C) 연방의 선박(선박의 장비, 가구, 부속물, 창고, 화물을 포함한다), 연방의 관할권에 속하는 선박(선박의 장비, 가구, 부속물, 창고, 화물을 포함한다), 차량, 항공기 또는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사용된 운송수단, (D) 범죄행위와 관련된 총기, 덧, 그물망, 장비 등을 압수할 수 있다.
- (5) 당해 규정들을 위반한 자들을 체포하는데 단서가 된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 (6) 당해 규정의 집행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당사자를 조사하고 그에 대한 선서를 시행하며 증서를 수령할 수 있다.
- (7) 재무부장관과 협력하여 미국으로부터 반출되거나 미국에 반입되는 가방, 짐, 또는 기타 화물 및 모든 문서에 대하여 검사를 위한 유치 또는 검사를 행할 수 있다.
- (8) 체포하려는 자가 연방직원 앞에서 금지행위를 하려고 하거나 하

부 록

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경우 이편의 제 2435조의 제(4),(5),(6) 및 (7)항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와 관련하여 체포할 수 있다.

- (9) 이 편 의 제2434(b)조에 따라 미국정부가 합의한 감시 및 검사 체제 하에서 또는 감시 및 검사체제가 미결정인 상태에서의 잠정 협정 하에서 당해 연방직원에게 부여된 권한집행을 할 수 있다.
- (10) 법률에 의하여 행사가 허용된 기타 다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c) 압 수

이 항의 후속규정에 따라 이 조의 제(b)항에 의하여 압수된 재산이나 물품은 당해 재산이나 물품이 관련된 위반행위에 관한 민·형사상의 소송절차가 계류되어 있는 동안 또는 당해 재산이나 물품에 관한 대물 소송이 개시되어 있는 동안 상무장관 또는 해안경비대를 소관하는 부처의 장에 의하여 지명된 연방직원에게 의하여 보관되어야 한다. 당해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 및 그의 지휘하에 활동하는 모든 직원은 당해 재산 또는 물품의 방면 또는 손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처벌이나 기소 당하지 않는다. 당해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은 당해 재산이나 물품을 보관하는 대신에 그 소유자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채권 또는 다른 충분한 재산적 증서의 송부를 허용할 수 있다.

(d) 몰 수

- (1) 아 편의 제2435조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와 관련된 남극해양생물 자원(그 일부 또는 과실), 미국의 선박(그 장비, 가구, 부속물, 창고, 화물을 포함한다), 미국의 관할 하에 있는 선박(그 장비, 가구, 부속물, 창고, 화물을 포함한다), 또는 선박, 차량, 항공기 또는 미국의 관할 하에 있는 이 편 의 제2435조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와 관련된 기타 운송수단, 모든 총기류, 덧, 그물망, 기타 당해 불법행위에 사용된 다른 장비는 미국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다.
- (2) 제(1)항에 규정된 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몰수 또는 당해 재산이나 물품에 대한 청구권의 면제나 포기에 근거하여 통상부장관 또는 해안경비대를 소관하는 부처의 장관에 의하여 이 법의 목적에 부합

되도록 규칙에 의하여 정해진 방식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e) 관세법의 적용

관세법의 위반을 이유로 한 압수, 몰수 그리고 재산(선박을 포함한다)의 몰수선고에 관한 모든 규정은 당해 법규정이 적용가능하고 이 법의 규정에 일치하는 한 당해 재산의 처분 또는 매개로 얻은 수익금, 그리고 당해 몰수의 면제 또는 완화는 행하여졌거나 행하여졌다고 주장되는 압수와 몰수, 이 장의 규정에 의한 화해에 적용된다. 다만 이 법을 위하여 세관직원에게 관세법에 의하여 부여되거나 부과된 모든 권한, 권리 및 의무는 통상부장관 또는 해안경비대를 소관하는 부처의 장관, 또는 이들 장관이 지명한 공무원에 의하여 행사되고 이행될 수 있다.

제2440조 법원의 관할권

연방지방법원은 이 법의 규정, 또는 이 법에 따라 공포된 규칙에 의하여 발생한 사건과 분쟁에 대하여 배타적인 관할권을 갖는다.

제2441조 연방부처간의 협력

(a) 책 임

(1) 협약의 시책과 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A) 국립과학재단의 사무총장은 국무장관 및 연방부처의 관계장관과 협의하여 미국의 남극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남극해양생물 생태계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조사를 지원하여야 한다.

(B) 통상부장관은 국립과학재단 사무총장, 국무장관 및 관계부처의 장관과 협의하여 보칙의 제2항에서 정하고 미국의 남극프로그램과 조화되는 과학적 연구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C) 통상부장관 및 국립과학재단의 사무총장은 국무장관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설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부 록

(2) (A) 통상부장관은 국무장관, 국립과학재단 사무총장, 그리고 기타 관계부처의 공무원과 협의하여 1985년 10월 1일에 시작하여 1991년 9월 30일 종료하는 기간동안 각각의 3 회계 년의 기간에 대하여 제(1)(B)항에 따라 요구되는 연구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수정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당해 계획은 (i)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우선적인 연구의 수요를 서술하고, (ii) 미국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하는 수요를 확인하며, (iii) 제(1)(B)항에서 언급된 연구기획과 특히 향상된 선적능력의 비용을 위한 요구를 포함하여 당해 연구에 필요한 자금, 인력, 및 시설을 명시하여야 한다.

(B) (A)항에 언급된 계획을 준비함에 있어 통상부장관은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다른 사항에 추가하여 생산적인 결과를 확보할 가능성, 복제의 최소화, 그리고 연구의 통제 및 평가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C) 통상부장관은 매년 의회에 제(A)항에 따라 요구되는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986년부터 1988년을 포함하는 계획부분은 1985년 10월 1일 이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그 이후 각각의 3 회계년 기간을 포함하는 계획부분은 당해 계획부분에 포함된 첫회계년의 2월 1일 이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b) 다른 기관과의 협의

이 법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국무장관, 상무장관, 그리고 국립과학재단의 사무총장은 해양포유류위원회 및 연방의 다른 부처와 적절히 협의하여야 한다.

(c) 쇄빙

교통장관은 남극연구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쇄빙선의 설계, 조달, 유지,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2442조 현행 조약 및 제정법과의 관계

(a) 총 칙

이 법의 어느 규정도 (1) 당해 조약, 협약, 협정이 1984년 11월 8일 현재 미국에 효력을 발생한 경우 국제조약, 협약, 협정의 규정, (2) 국제조약, 협약, 협정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제정법의 규정에 반하거나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 법의 어느 규정도 남극해양생물자원에 적용될 수 있는 1984년 11월 8일 이전에 입법된 법규의 규정에 반하거나 대체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b) 제한적 규정의 적용

이 법의 어느 규정도 이 법의 제(a)항에 정한 조약 또는 제정법의 규정, 이에 따라 채택된 조치, 이에 따라 공포된 규칙 보다 제한적인 협약의 규정, 협약의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된 보존조치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제정된 규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2443조 전용권한

(1) 이 편의 제2433조에 언급된 미국대표, 제5편의 제5701조 내지 제5708조 및 제5733조에 따른 자문위원 및 전문가의 필요 여행경비, (2) 협약 제19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예산에 대한 미국의 분담금, (3) 이 편의 제2441조에 언급된 연구프로그램 및 위원회에 대한 시설 및 인력지원 등 이 법의 규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에 대하여 재무성의 재정으로부터 전용할 권한을 부여한다.

제2444조 효력의 분리

어떠한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이 법의 어느 규정 또는 이 법의 적용이 무효화되는 경우 다른 사람 또는 상황에 대한 이 법의 나머지 규정 또는 동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16편 제44B장 - 『1990년 남극보호법』

제2461조 입법배경 및 목적

(a) 입법배경

- (1) 독립적인 생태계를 갖고 있는 남극대륙은 다수의 독특한 種에게 서식지를 제공하며 성층권의 오존 감소와 지구환경변화의 중요한 측면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적인 실험실을 제공하는 특유의 환경이다.
- (2) 남극은 남극조약 및 그에 따른 권고, 남극물개보존협약,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협약 등 남극의 재생 가능한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과학적 조사의 수행을 위한 남극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일련의 국제적 합의에 의하여 보호되어진다.
- (3) 과학기지의 증가, 열악한 폐기물처리관행, 기름유출, 관광객의 증가, 그리고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과도한 탐사 등을 포함하는 남극에 대한 최근의 반복적인 개발은 남극환경의 보호 및 남극의 해양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현행 조약과 국내법의 적절성 및 이행에 관하여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여 왔다.
- (4) 남극조약의 체약당사국들은 미국이 아직 서명하지 않은 남극광물자원활동제한에 관한 협약을 협의해 왔다.
- (5) 남극광물자원활동제한에 관한 협약은 취약한 남극환경의 보존을 보장하지 않으며 실제로는 남극광물자원활동을 위한 움직임을 자극하는 것이다.
- (6) 남극광물자원의 탐사는 기름의 유출을 포함하는 추가적인 남극환경의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
- (7) 남극조약협약당사국들은 법적 구속력 있는 수단에 의하여 남극광물자원활동을 자율적으로 금지하기로 합의하였다.
- (8) 필요한 지원시설을 포함하여 과학적 연구의 수준은 일부 과학적 연구계획이 남극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향상되었다.
- (9) 계획된 남극조약당사국의 특별협의회 및 다가온 남극조약의 30

주년 기념식은 미국 정부에게 남극의 보호와 건전한 관리를 향한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b) 목 적

이 장의 목적은 (1) 실제로 전체적인 남극환경의 보호를 강화하고, (2) 미국의 시민과 미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자들에 의한 남극광물자원의 탐사와 개발 및 건본탐사를 금지하며, (3) 모든 남극자원활동에 대한 영구적인 금지와 남극 및 남극의 독립적인 생태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새로운 협정을 위해 즉시 협상에 임하도록 다른 국가들을 미국과 합류하도록 촉구하며, (4) 모든 국가들에게 남극광물자원활동에 대한 영구적인 금지를 고려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제2462조 정의

이 법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남극”은 이 편의 제2432(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남극수렴선의 남쪽지역을 의미한다.
- (2) “남극광물자원활동”은 남극광물자원의 건본탐사, 탐사 및 개발을 의미하지만 1959년 12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남극조약 제3조의 의미에 해당하는 과학적 연구를 포함하지 않는다.
- (3) “개발”은 공정, 저장, 운송활동을 포함하는 특정한 광물자원의 鑛床에 대한 탐사에 따라 발생하는 물자지원을 포함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 (4) “탐사”는 특정 광물자원의 매장에 대한 확인과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물자지원을 포함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탐사를 위한 천공, 준설, 기타 매장된 광물자원의 성격과 매장량 및 그 개발가능성의 결정을 위해 요구되는 육지표면의 굴착을 포함한다.
- (5) “광물자원”이라 함은 얼음, 물, 눈(雪)을 제외하고 화석연료, 금속성 및 비금속성의 광물을 포함하는 모든 무생물의 재생 불가능한 자연자원을 말한다.
- (6) “사람”이라 함은 개인, 법인, 조합, 신탁, 협회, 또는 기타 미국 법

부 록

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조직된 실체 또는 연방 또는 주정부 및 그 하위의 자치단체의 공무원, 직원, 대리인, 부서 또는 기타 기구를 말한다.

- (7) “견본탐사”라 함은 물자지원을 포함하여 가능한 탐사 및 개발을 위한 잠재적 광물자원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 (8) “차관”이라 함은 상무부의 해양 및 대기담당차관을 의미한다.

제2463조 남극광물자원활동의 금지

상원이 자문과 동의를 하였고 의회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되었으며 남극광물자원활동에 관한 영구적인 금지를 규정하고 미국에 대한 효력발생이 임박해 있는 남극조약협약당사국간의 새로운 합의하에서 남극광물자원활동에 대한 재원조달에 연계되거나 또는 기타 의도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다.

제2464조 국제적 협약

삭제(Pub. L. 104-227, Title II. Sec. 202(B). Oct. 2., 1996. 110 Stat. 3044)

제2465조 집행

(a) 총론

이 장 또는 이 장에 의하여 공포된 규칙의 위반은 남극해양생물자원 협약법(16 U.S.C. 2431-2444)의 위반으로 간주되며 차관 및 차관이 자신의 책임을 위임한 연방공무원에 의하여 동범에 따라 집행된다.

(b) 벌칙

어떠한 자가 이 편의 제2463조를 위반했다고 차관이 결정한 경우,(1) 당사자는 연방의 광산법에 따른 광업권청구를 할 자격을 상실하며, (2) 차관이 당해 결정을 내린 후에 그와 같은 특허나 임차신청을 하려고 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내무장관은 연방광업법에 따른 특허 또는 광업이나 지열(geothermal) 임차와 관련된 연방법에 따른 임차권의 발급을 거부하여야 하여야 한다.

제2466조

삭제(Pub. L. 104-227, Title II. Sec. 202(B). Oct. 2,
1996. 110 Stat. 3044)

부 록

○ 1996년 남극환경보호법

제 1 조 약식 법률명

이 법은 ‘1996년 남극환경보호법’으로 인용될 수 있다.

제 1 편 1978년 남극보존법의 개정

제101조 입법배경 및 목적

1978년 남극보존법의 제2조(16 U.S.C. 2401)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입법배경과 목적

- (a) 입법배경 - 의회는 남극조약과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가 남극환경의 종합적 보호, 국제적 협력, 남극에 있어서 과학적 조사의 자유를 위한 확고한 기초를 설립하였음을 인정한다.
- (b) 목적 - 이 법의 목적은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의 이행을 위하여 연방정부에 입법적 권한을 제공하는 것이다.

제102조 정의

1978년 남극보존법의 제3조(16 U.S.C. 2402)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 정의

이 법에 있어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청장’이라 함은 환경보호청의 청장을 의미한다.
- (2) ‘남극’이라 함은 남위 60도 이하의 지역을 말한다.
- (3) ‘남극특별보호지역’이라 함은 의정서 제5부속서에 따라 확인된 지역을 말한다.
- (4) ‘사무총장’이라 함은 국가과학위원회의 사무총장을 의미한다.
- (5) ‘유해한 간섭’이라 함은 (A) 새 또는 물개의 밀집을 방해하는 헬기 또는 기타 항공수단의 비행 및 착륙, (B) 새 또는 물개의 밀집을

방해하는 비행선 및 소형선박을 포함하는 해상선박수단의 이용, (C) 새 또는 물개의 밀집을 방해하는 폭발물 또는 무기의 사용, (D) 사람을 밭길에 의하여 새들의 번식 및 털갈이 또는 새 및 물개의 밀집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 (E) 착륙비행기, 자동차, 도보 또는 기타 수단에 의하여 토착육지식물의 밀집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 (F) 어떤 특정 서식종 또는 토착포유류, 토착조류, 토착식물 또는 토착무척추동물의 수에 심각한 부정적 변화로 귀결되는 행위를 말한다.

- (6) ‘역사적 장소 또는 기념물’이라 함은 의정서의 제5부속서에 역사적 장소 또는 기념물로 기재된 장소 또는 기념물을 말한다.
- (7) ‘충격’이라 함은 남극환경 및 이에 부속 및 관련된 생태계에 대한 충격을 말한다.
- (8) ‘반입’이라 함은 미국 관세법상의 의미에 포함되는 수입을 구성하는 행위인가와는 무관하게 미국의 12마일 영해를 포함하는 미국의 관할권내에 있는 지역에 물건을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
- (9) ‘토착조류’라 함은 생명주기의 어느 단계에 있는 남극토착 또는 자연적인 이동을 통하여 계절적으로 서식하는 조류의 종을 말한다.
- (10) ‘토착무척추동물’이라 함은 생명주기의 어느 단계에 있는 남극토착의 육지 또는 민물무척추동물을 의미한다.
- (11) ‘토착포유류’라 함은 생명주기의 어느 단계에 있는 남극토착 또는 자연적인 이동을 통하여 남극에 계절적으로 서식하는 포유류의 종을 말한다.
- (12) ‘토착식물’이라 함은 남극토착인 선대류, 지의류, 균류 및 해초류를 포함하는 육지 및 민물식물을 말한다.
- (13) ‘비토착종’이라 함은 남극에 토착이 아니며 자연적 이동을 통하여 남극에 계절적으로 서식하지 않는 동물 또는 식물의 종을 말한다.
- (14) ‘인(人)’이라 함은 연방법령집 제1편 제1조에서 정의된 용어를 의미하며 연방의 관할하에 있는 모든 사람과 부처 및 연방 또는 주의 기구를 포함한다.
- (15) ‘금지된 물품’이라 함은 의정서의 제3부속서에 의하여 남극내의

부 록

육지, 빙봉, 하천으로 반인이 금지된 물질을 의미한다.

- (16) ‘금지된 폐기물’이라 함은 의정서 제3부속서에 의하여 남극에서 제거되어야 하는 물질로서 과학적 연구 및 기상예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氣球)를 위한 재료들을 포함하지 않는다.
- (17) ‘의정서’라 함은 1991년 10월 4일 마드리드에서 서명된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및 이에 부속된 모든 부속서, 기타 향후 미국이 당사자인 남극의정서의 개정안을 말한다.
- (18) ‘장관’은 상무성장관을 의미한다.
- (19) ‘특별보호종’은 의정서의 제2부속서에 의하여 특별히 보호되는 종으로 지정된 토착종을 의미한다.
- (20) ‘포획’은 토착포유류 또는 조류에 대한 살상, 나포, 처리, 박해 또는 토착식물을 제거하거나 그 수량에 피해를 입혀 그 지역적 분포 또는 풍부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 (21) ‘조약’은 1959년 12월 1일 워싱턴에서 서명된 남극조약을 말한다.
- (22) ‘연방’은 연방구성주, 컬럼비아특별구, 푸에르토리코, 미국령사모아, 버진아일랜드, 괌, 북마리아나섬, 기타 미국령의 영역을 말한다.
- (23) ‘미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선박’은 1984년 남극해양생물자원협약법의 제303조(16 U.S.C. 2432)에 정의된 ‘미국의 선박’ 및 ‘미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선박’을 포함한다.

제103조 금지된 행위

1978년 남극보존법의 제4조(16 U.S.C. 2403)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 금지된 행위

- (a) 총론 - 누구든지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 (1) 남극의 육지 또는 빙봉 또는 수역에 금지된 물품을 반입하는 것
 - (2) 남극의 비동결지역 또는 민물체계에 폐기물을 처분하는 것
 - (3) 남극에 금지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것
 - (4) 공개적으로 폐기물을 태우는 데 연루되는 것
 - (5) 선박에 의한 오염방지법(33 U.S.C. 1901 이하)을 준수하도록

요구되지 않은 선박에 의하여 남극에 여객을 실어 나르는 것, 의정서의 제4부속서를 준수하도록 요구되는 선박의 소유주 또는 운영자와 계약한 자는 제외한다.

- (6)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자로서 정부에 의하지 않은 남극탐험을 조직하거나 지원하거나 운영하거나 장려하면서 이 법에 의한 환경보호의무 및 환경보호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참가자가 반드시 행하여야 할 행동 또는 행하여서는 안 되는 행위를 탐험의 모든 참가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자
 - (7) 역사적 장소 또는 기념물에 피해를 입히거나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것
 - (8) 미국 또는 미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공포된 규칙 또는 발급된 허가의 이행과 관련된 수색 또는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탐승하려는 미국의 권한있는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탐승허가를 거부하는 것
 - (9) 제(8)항에 기술된 수색 또는 조사를 수행하는 미국의 권한 있는 공무원 또는 직원을 힘으로 공격하거나, 저항하거나 반대하거나 방해하거나 협박하거나 간섭하는 것
 - (10) 이 조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에 대한 합법적 체포 또는 구금에 저항하는 것
 - (11) 타인이 이 법에 의한 금지된 행위를 범하였다는 것을 알면서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든 그가 체포되거나 구금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막는 것
 - (12) 이 법에 의하여 공포된 규칙 또는 이 법에 따라 발급된 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것
 - (13) 이 조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범하려고 시도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것
- (b) 허가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한 금지되는 행위 - 이 법에 의하여 발급된 허가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한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부 록

- (1) 다음의 행위를 포함하여 남극에 폐기물을 처분하는 것(선박에 의한 오염방지법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경우를 제외한다)
 - (A) 남극의 육지에서 바다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것
 - (B) 멀리 떨어진 분노소각화장실을 이용하지 않고 남극의 육지 또는 빙붕, 또는 승객의 승선 및 하선 시에 선박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
 - (2) 남극에 비토착종을 반입하는 것
 - (3) 남극특별보호지역 내에 들어가거나 동 지역 내에서의 활동에 관련되는 것
 - (4) 남극에서의 포획 또는 유해한 간섭에 관련되는 것
 - (5) 알고서 또는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았을 이 법에 위반하여 포획된 토착조류, 토착 포유류 또는 토착식물을 받거나 획득하거나 이송하거나 매매, 수출입을 제안하거나 감금하거나 관리하거나 소유하는 것
- (c) 비상시의 예외 - (a)의 (1),(2),(3),(4),(5),(7),(12) 또는 (13) 또는 (b)에 기술된 행위는 행위자가 인간생명의 안전 또는 선박, 항공기, 장비, 높은 가치의 시설의 안전 또는 환경의 보호를 포함하는 위급 상황에서 행하였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행위인 경우에는 위법행위가 아니다.

제104조 환경영향평가

1978년 남극보존법은 제4조(16 U.S.C. 2403)의 뒤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삽입하여 개정한다.

제4A조 환경영향평가

(a) 연방의 활동 -

- (1)(A) 의정서의 제8조 및 제1부속서에 의한 연방의 의무는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42 U.S.C. 4321 이하)을 이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남극에서의 연방정부의 활동을 위한 제안에 적용하여 이행되어야 한다.

- (B)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 제102(2)(C)조 (42 U.S.C. 4332 (2)(C))에 포함된 의무는 이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남극에서 발생하며 남극에서의 인간환경의 질 또는 부수적인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연방의 활동에 대한 모든 제안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 항에 의한 제102(2)(C)조의 적용을 위하여 ‘인간환경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이라는 용어는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영향 이상’이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 (2)(A) 남극에서의 연방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제안을 하는 부처가 당해 행위가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영향 이하의 영향을 갖는다고 결정하거나 종합적인 환경평가가 제(C)항에 따라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한 당해 부처는 의정서의 제1부속서 제2조에 따른 기초환경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 (B) 기초환경영향평가의 작성을 통해서 환경보호청이 제안된 연방활동이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영향을 넘어서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한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당해 활동의 영향을 입증하여 당해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 (C) 기초적인 환경영향평가 또는 다른 것의 작성을 통해서 부처가 제안된 연방활동이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영향 이상일 것으로 판단한 경우 당해 부처는 의정서의 제1부속서 제3조에 따라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배포하여야 하며, 당해 종합적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일반의 토론이 가능하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3) 이조에 따라 제(2)(C)가 적용되는 제안된 연방활동에 대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 진행되어야 한다면 원안대로 인가 아니면 수정된 형태로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어느 부처의 결정은 당해 부처의 재량권행사에 있어 관련된다고 간주하는 다른 고려사항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에 기초하여야 한다.
- (4) 이 조에 있어서 ‘연방활동’은 연방정부부처에 의해 수행되는가와 관계없이 남극에서의 연방연구프로그램에 따라 행하여지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부 록

(b) 외국정부와 연합하여 수행하는 연방활동 -

- (1) 이 항에 있어서 '남극연합활동'이라 함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외국정부와 연합 또는 협력하여 수행되도록 제안되거나 수행되는 남극에서의 연방활동을 말한다. 당해 용어는 대통령이 지정한 바에 따른 부처에 의해 공포되는 규칙에서 정의된다.
- (2) 남극연합활동을 계획하는 연방부처와 협력하여 국무장관이 (A) 연합활동의 주요부분이 연방정부 또는 연방정부 이외의 정부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B) 연합활동을 하는 정부의 하나가 당해 활동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의 이행을 조정하고 있으며, (C) 당해 정부가 의정서에 서명하거나, 비준하거나 가입하였다고 판단한 경우가 조의 (a)항의 요건은 관계된 당해 활동에 적용되지 않는다.
- (3) 제(2)항에 기술된 연합활동 이외의 모든 남극연합활동에 있어서 이 조의 제(a)항의 요건은 제(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활동에 적용된다.
- (4) 제(2)항에 기술된 결정 및 남극연합활동에 대한 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부의 조치 및 결정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c) 정부가 수행하지 않는 활동 -

- (1) 환경청장은 1996년 남극환경보호법의 입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규율하는 규칙을 공포하여야 한다.
 - (A) 남극조약의 제7조 제5항에 따라 연방정부가 사전통지를 하도록 되어있는 관광을 포함하여 정부가 수행하지 않는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 (B) 의정서에 따라 다른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수령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정보심사에 대한 조정
- (2) 당해 규칙은 의정서의 제1부속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d) 진행결정 -

- (1) 남극조약당사국회의(ATCM)에서 종합적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심의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한 이 조에 의하여 보고된 중

합적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 활동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다만 이 항의 운영을 통하여 제안된 활동의 진행결정은 의정서의 제1부속서 제3조(3)항에 따른 종합적 환경영향평가초안의 배포일로부터 15개월 이상 지체되어 질 수 없다.

- (2) 국무장관은 의정서의 제1부속서 제3조(6)항에 따라 최종적인 종합적 환경영향평가서를 최소한 남극에서의 활동시작 60일 전에 배포하여야 한다.
- (e) 긴급사황의 경우 - 이 조 및 이 조에 따라 공포된 규칙에 의한 요건은 사람의 생명 또는 선박, 항공기, 또는 고도의 가치를 갖는 장비의 안전, 또는 이들 요건의 이행 없이 수행되어지는 활동을 필요로 하는 환경의 보호와 관련된 긴급 사황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f) 배타적 체제 - 법률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의 요건은 남극에서 발생하는 제안된 연방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연방정부에 대한 유일하고 배타적인 법정 의무를 구성한다.
- (g) 허가신청에 대한 결정 - 환경영향평가(기초적 환경영향평가 및 종합적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다)를 요구하는 이 조의 규정은 제5조에 따라 발급되는 허가 와 관련된 연방의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h) 통지의 공표 - 국무장관이 이 조의 (b)(2)에 따른 결정을 내리는 경우 또는 의정서의 제1부속서 제3조(3)항에 따른 종합적 환경영향평가의 초안을 접수하는 경우 국무장관은 적절한 시기에 이를 연방관보에 게재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제105조 허가

1978년 남극보존법은 제5조(16 U.S.C. 2404)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제(a)항에서 '제4(a)조'를 삭제하고 대신에 '제4(b)조'를 삽입한다.

부 록

- (2) (c)(1)(B)에 ‘특별’을 삭제하고 대신에 ‘종’을 삽입한다.
- (3) (e)항에 (A) (1)(A)(i)항에 ‘또는 허가가 적용되는 토착식물’을 삭제하고 대신에 ‘허가가 적용되는 토착식물 또는 토착무척추동물, 그리고’를 삽입하며, (B) (1)(A)(ii) 및 (iii)을 삭제하고 대신에 그 다음에 새로운 조항을 삽입한다.

○ 1996년 남극과학, 관광 및 보존법

제 1 조 법률명 축약

이 법은 ‘1996년 남극과학, 관광 및 보존법’으로 인용될 수 있다.

제 1 편 1978년 남극보존법의 개정

제101조 입법배경 및 목적

(a) 입법배경 - 1978년 남극보존법의 제2조(a)(16 U.S.C. 2401(a))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1) 제(1)항 및 (2)항을 각각 제(4)항 및 (5)항으로 번호를 다시 고치고 고쳐진 제(4)항 앞에 다음의 항을 삽입한다. ‘(1) 4반세기 이상의 기간동안 과학적 조사는 남극에서 있어서 연방정부 및 미국민의 주된 활동이었다. (2) 더욱이 최근에는 남극에 대한 미국민의 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다. (3) 남극에 대한 주요 민간기관인 국립과학재단은 오랜 기간 동안 미국의 과학활동 및 관광을 보장하기 위한 책무를 부담해 왔으며 그들의 보급지원활동은 남극지역의 독특한 가치를 보존한다는 시각에서 수행되어 왔다.’

(2) 제(4)항에서 ‘남극조약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된 남극동식물보존에 관한 합의규칙은 확고한 기초를 수립해 왔다’를 삭제하고 ‘의정서는 남극자원의 보존을 위한 확고한 기초를 수립한다’를 삽입한다.

(3) 제(5)항을 삭제하고 다음을 삽입한다. ‘(5) 남극조약과 의정서는 국제적 체제를 수립하며 평화와 과학을 위해 기여하는 자연적 보존구역으로서 남극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법적인 의무를 창설한다.’

(b) 목적 - 동법의 제2조(b)(16 U.S.C. 2401(b))는 ‘조약, 남극동식물의 보존을 위한 합의규칙, 제8차 남극조약당사국회의의 권고VIII-3’을 삭제하고 ‘조약과 의정서’를 삽입한다.

제102조 정의

1978년 남극보존법의 제3조(16 U.S.C. 2402)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 정의

이 법에 있어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청장’은 환경보호청의 청장을 말한다.
- (2) ‘남극’은 남위 60도 이남을 말한다.
- (3) ‘남극특별보호지역’은 의정서의 제5부속서에 따라 확인되는 지역을 말한다.
- (4) ‘사무국장’은 국립과학재단의 사무총장을 말한다.
- (5) ‘유해한 간섭’은 (A) 조류 또는 물개의 밀집을 방해하는 헬리콥터와 기타 비행수단의 이착륙, (B) 조류 또는 물개의 밀집을 방해하는 수상부양선박 및 소형선박을 포함하는 차량 및 선박의 사용, (C) 조류 및 물개의 밀집을 방해하는 폭발물 및 무기의 사용, (D) 사람의 발걸음에 의한 조류의 번식 및 털갈이 또는 조류 및 물개의 밀집을 고의로 방해하는 것, (E) 비행기의 착륙, 자동차의 운전, 발걸음 또는 기타의 수단으로 토착육상식물의 군락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 (F) 토착포유류, 토착조류, 토착식물, 또는 토착 무척추 동물의 종이나 개체 수에 대하여 부정적 수정으로 귀결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6) ‘역사적 장소 또는 기념물’은 의정서의 제5부속서에 의하여 역사적 장소 또는 기념물로 기재된 장소 또는 기념물을 말한다.
- (7) ‘영향’은 남극의 환경 및 그에 부수된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말한다.
- (8) ‘반입’은 당해 행위가 미국의 관세법상의 의미에 해당되는 수입을 구성하는 것인지와 관계없이 미국의 12마일 영해를 포함하여 미국의 관할권에 종속되는 지역에 들여오거나 들여오려는 시도를 말한다.
- (9) ‘토착조류’라 함은 그 일생의 어느 단계에서(알을 포함한다) 어느 특정한 부류의 조류의 구성원으로 남극토착이거나 자연적 이동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일부가 계절적으로 남극에 존재하는 조류를 말한다.

- (10) ‘토착무척추 동물’은 그 일생의 어느 단계에서 남극에 토착인 육지 또는 민물 무척추 동물을 말한다.
- (11) ‘토착포유류’라 함은 그 일생의 어느 단계에서 어느 부류의 포유류의 구성원으로 남극토착이거나 자연적 이동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일부가 계절적으로 남극에 존재하는 포유류를 말한다.
- (12) ‘토착식물’은 그 일생의 어느 단계에서(씨앗을 포함한다) 당해 식물의 일부를 포함하여 남극토착인 선대류, 지의류, 균류 및 해초류를 포함하는 육지 또는 민물식물을 말한다.
- (13) ‘비토착종’은 남극토착이 아니며 자연적 이동을 통하여 계절적으로 남극에 존재하지 않는 동물 또는 식물의 종을 말한다.
- (14) ‘사람’은 미국의 관할권에 종속되는 모든 사람 및 연방 또는 지방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처 또는 기구를 포함하는 연방법령집 제1편 제1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 (15) ‘금지된 행위’는 의정서의 제3부속서에 따라 남극의 육지, 빙봉 또는 수역에 반입이 금지된 모든 물질을 말한다.
- (16) ‘금지된 폐기물’은 의정서의 제3부속서에 따라 남극으로부터 제거되어야 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 다만 과학적 조사 및 일기예보를 위해 요구되는 기구(氣球)포장물을 위해 사용되는 재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 (17) ‘의정서’는 1991년 10월 4일 마드리드에서 서명된 남극환경보호를 위한 의정서 및 그에 부속된 문서와 미국이 당사자가 되는 그 개정문서를 말한다.
- (18) ‘장관’은 상무부장관을 말한다.
- (19) ‘특별보호종’은 의정서의 제2부속서에 따라 특별히 보호되는 종으로서 지어된 토착종을 말한다.
- (20) ‘포획’은 그 지역적 분포 또는 풍부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토착포유류 및 조류에 대한 살상, 포획, 통제, 학대 또는 토착식물의 개체 수에 대한 제거 또는 해악을 말한다.
- (21) ‘조약’은 1959년 12월 1일 워싱턴에서 서명된 남극조약을 말한다.
- (22) ‘미국’은 연방구성주, 컬럼비아특별구,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사모

부 록

아, 버진아일랜드, 괌, 북마리아나, 기타 미국의 구성주, 영역, 소유영역을 말한다.

- (23) '미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선박'은 1984년 남극해양생물자원협약 법의 제303조(16 U.S.C. 2432)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모든 '미국선박' 및 모든 '미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선박'을 포함한다.

제103조 금지된 행위

1978년 남극보존법의 제4조(16 U.S.C. 2403)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 금지된 행위

- (a) 총론 - 누구든지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 (1) 남극의 육지, 빙봉 또는 수역에 금지된 물품을 반입하는 것
 - (2) 남극의 비 동결지역 또는 민물 체계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
 - (3) 남극에 금지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
 - (4) 폐기물의 노천소각에 관련되는 것
 - (5) 당사자가 당해 선박의 소유주 또는 운영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의정서의 제4부속서를 준수하도록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에 의한 오염방지법(33 U.S.C. 1901 이하)를 준수할 필요가 없는 선박에 의하여 남극에 여객을 운송하는 것
 - (6) 정부에 의하지 않은 남극탐사를 조직하거나 후원하거나 운영하거나 장려하는 자 및 미국 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로서 탐사의 모든 구성원에게 이 법의 환경보호의무 및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탐사의 구성원들이 취하거나 취하지 말아야 하는 조치를 통지하지 않은 자
 - (7) 역사적 장소 또는 기념물에 피해를 주거나,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것
 - (8) 권한 있는 미국의 공무원 또는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공포된 규칙 또는 발급된 허가의 이행을 위하여 수색이나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 또는 미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선박, 자동차, 또는 비행기에 승선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 (9) 미국의 권한 있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제(8)항에 규정된 수색이나 조사의 수행을 함에 있어 힘으로 공격하거나, 저항하거나,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협박하거나, 간섭하는 것
 - (10) 이 조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로 인한 합법적인 체포나 구금에 저항하는 것
 - (11) 그 자가 이 조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범하였다는 것을 알면서 어떤 수단에 의하여 타인의 체포 또는 구금에 간섭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
 - (12) 이 법에 의하여 공포된 규칙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발급된 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것
 - (13) 이 조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위반하려고 시도하거나 위반하도록 유도하는 것
- (b) 허가에 의하여 권한부여가 되지 않는 한 금지되는 행위 - 이 법에 의하여 발급된 허가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한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 (1) 다음의 것을 포함한 폐기물을 남극에 처분하는 것(다만 선박에 의한 오염방지법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것은 예외로 한다)
 - (A) 남극의 육지로부터 바다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것
 - (B) 원거리 인분소각화장실지역을 이용하지 않고 지역남극의 육지 또는 빙봉 또는 승객이 타고 내리는 지점의 선박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
 - (2) 남극에 남극토착이 아닌 종을 반입하는 것
 - (3) 남극특별보호지역 내에서의 활동에 관련되는 것
 - (4) 남극에서의 포획이나 유해한 간섭에 연루되는 것
 - (5) 이 법에 위반하여 토착조류, 토착포유류, 또는 토착식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또는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렵하거나, 획득하거나, 운송하거나, 매매의 제안을 하거나, 구매하거나 수출입하거나, 구금하거나, 통제하거나 소유하는 것

부 록

- (c) 긴급상황에 대한 예외 - 제(a)항의 (1),(2),(3),(4),(5),(7),(12) 또는 (13) 또는 제(b)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사람의 생명 또는 선박, 항공기, 고가의 장비 및 시설의 안전 또는 환경의 보호를 포함하는 긴급상황하에서 당해 행위를 하였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제104조 환경영향평가

1978년 남극보존법은 제4조 뒤에 다음의 새로운 규정을 삽입하여 개정한다.

제4A조 환경영향평가

(a) 연방활동 -

(1)(A) 의정서의 제1부속서의 제8조에 따른 연방정부의 의무는 이 조에 정한 바와 같이 남극에 있어 연방정부의 활동을 위한 제안에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42 U.S.C. 4321 이하)을 적용함으로써 이행되어야 한다.

(B)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의 제102(2)(C)(42 U.S.C. 4332(2)(C))에 포함된 의무는 남극에서 이루어지며 남극 또는 이에 부속된 생태체계의 인간환경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연방정부활동의 모든 제안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 항에 의한 제102(2)(C)의 적용을 위하여 '인간환경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이라는 용어는 '사소하고 일시적인 영향 이상'이라는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2)(A) 남극에서의 활동을 제안한 부처가 당해 활동이 사소하고 일시적인 영향을 갖을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 또는 종합적인 환경평가가 제(C)에 따라 준비되지 않는 한, 당해 부처는 의정서의 제1부속서 제2조에 따라 기초적 환경영향평가를 마련하여야 한다.

(B) 기초환경평가의 준비를 통하여 당해 부처가 제안된 연방활동이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영향 이상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당해 활동은 평가와 활동의 영향을 증명할 적절한 절차가 존재하는 경우 진행이 허가되어질 수 있다.

(C) 기초 영향평가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하여 당해 부처가 제안된 연방활동이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영향 이상을 갖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당해 부처는 의정서 제1부속서의 제3조에 따른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마련하고 배포하여야 하며, 그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일반의 논의를 위해 공개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C)항이 적용되는 제안된 연방활동이 진행되어야 하는 가 그리고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 그 원안에 따를 것인가 아니면 수정안에 따를 것인가에 관한 이 조에 따른 부처의 결정은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 뿐만 아니라 기타 당해 부처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관련 있다고 간주하는 사항에 근거하여야 한다,

(4) 이 법에 있어서 '연방활동'이라는 용어는 연방정부에 의하여 수행되는가와 관계없이 남극에서의 연방정부연구활동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b) 외국정부와 함께 수행하는 연방활동 -

(1) 이 항에 있어서 '남극연합활동'이라 함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외국정부와 연합 또는 협력하여 수행하고자 하거나 수행되어지는 남극에서의 연방활동을 말한다. 이 용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부처에 의하여 공포되는 규칙에서 정의한다.

(2) 남극연합활동을 계획하는 연방정부와 협력하여 국무장관이 (A) 연합활동의 주된 부분이 미국이 아닌 정부에 의하여 이행되고, (B) 연합활동을 하는 정부의 하나가 당해 활동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절차의 이행에 협력하며, (C) 당해 정부가 의정서에 서명하거나, 비준하거나 또는 가입하였다고 결정하는 경우 이 조의 제(a)항에 의한 요건은 당해 활동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3) 제(2)항에 의하지 않은 모든 남극연합활동의 경우에, 이 조의 제(a)항의 요건은 제(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행

부 록

위와 관련하여 적용된다.

- (4) 남극연합활동에 대한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제(2)항에서 정한 결정 및 부처의 활동과 결정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c) 정부에 의하지 않은 활동 -

- (1) 사무국장은 1996년 남극과학, 관광 및 보존법의 제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A) 남극조약의 제7조 제5항에 따라 미국정부가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는 관광을 포함하는 정부에 의하지 않은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B) 의정서에 따라 다른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정보의 심의에 관한 협력 등을 규정하는 규칙을 공포하여야 한다.
- (2) 당해 규칙은 의정서의 제1부속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d) 진행결정 -

- (1) 남극조약당사국회에서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의 초안을 심의하기 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한, 이 조에 따라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가 마련된 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결정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 다만 제안된 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결정은 이 항의 운영을 통하여 의정서의 제1부속서 제3조(3)항에 따른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배포일로부터 15개월 이상 지체될 수 없다.
- (2) 국무장관은 의정서 제1부속서의 제3조(6)항에 따라 남극에서의 활동을 시작하기 최소한 60일 이전에 남극에서의 최종 종합적 환경영향평가서를 배포하여야한다.

(e) 긴급상황 - 이 조 및 이 조에 의하여 공포된 규칙의 요건은 인간의 생명, 선박, 항공기 또는 고가의 장비, 환경의 보호에 대한 안전과 관련한 긴급상황에 적용되지 않는다.

(f) 배타적 체계 -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의 요건은 남극에서의 연방활동제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연방정부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법정 의무를 구성한다.

- (g) 허가신청의 결정 - 환경영향평가(기초영향평가 및 최종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다)를 요구하는 이 조의 규정은 제5조에 의한 허가의 발급과 관련한 연방의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국의 남극관련법제>

○ 『1967년 남극조약법』

이 법은 1959년 12월 1일 워싱턴에서 서명된 남극조약에 따른 남극동식물군의 보존을 위한 조치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효력을 부여하는 법으로서 당해 조약의 체결당사국들에게 승인을 요청해왔으며 남극조약에 관련된 다른 목적들을 위한 것이다.

1. 남극 동식물의 보존

- (1) 이 조항이 적용되는 어느 누구도 정해진 날부터 남극지역에 있는 동안 이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 토착포유류 또는 토착조류를 고의적으로 살상하거나, 괴롭히거나 포획하여서는 안되며, (b) 특별보호지역 내에 있는 토착식물을 채취하거나 당해 지역에 어떠한 운송수단을 통하여 운행할 수 없다.
- (2) 이 조항이 적용되는 어느 누구도 정해진 날로부터 이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극 고유종이 아닌 동물이나 식물을 남극에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 (3) 이 법은 (a) 영국민, 영국령의 국민, 또는 해외의 영국교민, (b) 1981년 영국 국적법에 따른 영국민, (c) 영국 국적법의 범위내에 있는 영국의 보호민에게 적용되며, (이 항의 (a) 내지 (c)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영국에 등록된 영국선박의 소유주 또는 선원인 자에게 적용된다.
- (4) 전항의 후단에도 불구하고 체결당사국의 국민인 동시에 체결당사국에 의하여 감시원으로 지명된 자, 체결국에 의하여 활동이 허가된 교환과학자 또는 당해 지명된 감시원이나 교환과학자를 수행하는 직원에게는 그가 감시원, 교환과학자 또는 그 직원의 구성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남극 내에 있는 동안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5)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시도하는 자는 범죄행위를 범하는 것이다.

2. 1항의 면제

- (1) 이 법의 제1조는 허가가 유효한 기간에 당해 허가에 따른 조건이나 제한에 따라 행하여졌거나 행하려고 시도한 경우 (1) 이 법에 의하여, 또는 (2) 다른 체약국에 의하여 자신에게 발급된 허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 또는 행하고자 하였던 시도에 의하여 위반되었던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 (2) 전항의 규정에 대한 침해없이 어떠한 자가 이 법의 제1조에 의한 범법행위로 기소된 경우, 문제된 행위가 사람의 생명손실의 가능성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과 관련된 극단적인 비상사태 하에서 행하여 졌거나 행하여지려고 시도되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변호되어야 한다.

3. 허가의 발급

- (1) 국무부장은 이 법의 제1조가 적용되는 자와 관련하여 동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사항을 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 (2) 국무부장은 전항에 따른 자신의 권한을 (1) 영국남극조사위원회의 사무총장 또는 이 법의 통과시에 (명칭에 관계없이) 당해 사무총장에 의하여 수행되는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b) 영국정부가 남극에 설립하여 유지하고 있는 기지의 책임자, (c) 영국 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영역에 의하여 조직되거나 진출하는 남극탐사대의 책임자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 (3) 이 조에 의한 허가는 (이 조의 제(5)항에 따라) 국무장관 또는 허가를 발급하는 자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바에 따른 조건과 제한 하에 발급될 수 있다.
- (4) 당해 허가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사항과 관련하여 허가는 허가

가 발급된 사람에 대하여 국무장관 또는 허가를 발급하는 자에게 허가에서 정한 시기와 방법에 따라 허가에 정한 행위와 사례의 발생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5) 이 조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의 행사와 관련하여 국무장관 또는 그 권한을 행사하는 자는 합의규칙¹²²⁾을 존중하여야 한다.
- (6) 이 조의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발급할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매년 국무장관에게 다음 항에 따른 보고를 하여야 한다. 매 보고서는 매 연말 이후에 실행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국무장관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 (7) 전 항의 후단에 의한 보고서는 당해 연도에 이항에 의하여 허가된 상세항목과 이 조의 제(4)항에 따라 당해 연도에 그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8) 이 조에서 “연도”는 6월을 마지막 달로 하는 12개월의 기간을 말한다.

4. 벌 칙

- (1) 영국에 등록된 영국선박의 선주, 선장 또는 선원인 자가 이 법의 제1조에 위반하여 물개를 살상하거나 포획한 경우 (a)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또는 징역과 벌금의 병과를 할 수 있는 기소에 근거한 유죄선고에 처하여 지며 (b)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또는 징역과 벌금의 병과를 할 수 있는 약식유죄판결에 처하여 진다.
- (2) 전항의 규정을 해치지 않고 이 법의 제12조에 위반하여 특별보호종의 포유류 또는 조류를 고의로 살생한 자는 (기준표의 3등급)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의 약식유죄에 처한다.
- (3) 이 조의 전항 규정들에 의하여 다르게 규정되지 않은 한 이 법의 제1항에 따른 범죄를 범한 자는 (기준표의 3등급)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의 약식유죄에 처한다.

122) “합의규칙(Agreed Measures)”이라 함은 제3차 ATCM에서 협의당사국들의 승인을 위해 권고되었으며, 남극조약의 제9(1)조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는 남극동식물군의 보존을 위한 합의규칙을 말한다.

- (4) (a) 이 법의 제3조(4)항에 따른 허가에 의하여 부과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자, (b) 고의 또는 과실로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를 한 자는 범죄를 행하는 것이며 (기준표의 3등급)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의 약식유죄에 처해진다.

5. 감시원 및 교환과학자에 대한 형법의 적용

- (1) 정부에 의하여 감시원 또는 정부의 교환과학자, 또는 감시원 또는 교환과학자의 수행직원으로 지명된 날 이후에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남극지역에 있는 동안 이 법의 제1조가 적용되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부작위는 (a) 당해 행위 또는 부작위가 영국 내에서 발생한 경우 영국법의 당해 규정에 대한 위반이 되며, (b) 당해 행위 또는 부작위가 이 법이 적용되는 다른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 당해 영역의 법에 대한 위반행위가 되며, 당해 행위 또는 부작위를 행한 자는 당해 행위가 영국 또는 영국의 영역의 일부에서 발생한 경우와 같이 이 조에 의하여 범죄가 되며 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 (2) 전항의 규정은 이 법의 제1조 내지 제4조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 합의규칙에 영향을 주는 규정의 제정권한

- (1) 이 법의 제1조 내지 제5조에 의해 제정된 것 외에 합의규칙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는 위원회의 명령에 의하여 당해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2) 이 조에 따른 위원회의 명령은 명령에 의하여 부과된 금지사항의 위반에 대한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 단 그에 따른 벌칙은 이 법의 제4조(1)항의 (a) 및 (b)호에 각각 정해진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
- (3) 명령의 초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의회 양원의 결의에 의하여 승인되지 않은 한 이 조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명령을 제정하도록 정부에게 권고를 할 수 없다.

7. 위원회의 명령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

- (1) 국가는 위원회의 명령을 통하여 체약당사국에게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2) 국가는 위원회의 명령으로 (a) 합의규칙의 부속서A에서 정하거나 또는 남극조약의 제9조(1)항에 따른 부속서에 포함되도록 권고된 일정한 종류의 포유류 및 조류를 특별 보호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b) (지도 또는 다른 것을 참조하여) 합의규칙의 부속서B에서 정하거나 또는 남극조약의 제9조(1)항에 따른 부속서에 포함되도록 권고된 일정 지역에 대하여 특별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3) 국가는 위원회의 명령을 통하여 토착포유류 또는 조류의 살상, 학대, 포획과 관련하여 이 법의 제1조 내지 제4조를 지휘하며, 남위 60도 이남의 공해전체를 포함하는 남극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4) 남극조약의 제9조(1)항 또는 타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제정된 특별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권고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는 위원회의 명령을 통하여 명령에 정한 예외 및 수정사항에 따라 이 법의 당해 규정을 이 항의 (a) 내지 (c)의 하나 또는 그 이상에 따라 효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즉 (a) 이 법의 제1조가 적용되는 자에 대한 언급은 명령에 정한 국적과 같은 조건을 이행한 자를 포함하며, (b) 명령에 정한 이 법의 규정에 있어서 당해 조항에 규정한 설명에서의 언급은 영국에서 조직되거나 영국으로부터 출발하는 탐험의 구성원인 자들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며, (c) 명령에 정한 이 법의 규정에 있어서 영국에 등록된 영국선박에 대한 언급은 당해 법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로 규정된 영역으로 정해진 기타 영역에 등록된 영국선박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또한 국가는 명령에 정하여진 예외 및 수정에 따라 이 법의 제5조가 “지명된 자”에서부터 “당해 직원의 일원”에 이르기까지의 문구에 대하여 효력을 갖도록 위원회의 명령을 통하여 감독한다.
- (5) 국가는 위원회의 명령을 통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제정

할 수 있다. 즉 (a) 남극 내에서 이 법에 의하여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자의 체포, (b) 이 법에 의하여 범죄행위로 소추될 수 있는 장소에서 체포된 자에 대한 구금을 위한 호송, (c) 이 법에 의한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물품의 압수 및 유치 그리고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범죄로 소추되어 질 수 있는 혐의로 기소된 자가 있는 곳으로 당해 물품을 운반하는 것, (d)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범죄행위로 소추되어질 수 있는 자로서 당해 범죄와 관련한 소송절차에 있어서 증거 또는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된 자의 법원출석을 확보하는 것

- (6) 전항의 후단에 있어서 이 법에 대한 언급은 이 법의 제6조에 따라 제정된 위원회의 명령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 (7) 이 조의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제정된 위원회의 명령은 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무효화된다.

8. 소송절차 및 증거

- (1) 이 조와 분리하여 행사될 수 있는 관할권에 대한 침해없이 이 조의 규정에 따른 범죄에 대한 소송절차는 범죄자가 영국 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영역 내에 있는 경우 취해질 수 있다.
- (2) 그러한 소송절차에 있어서 (a) 이 법의 제7조(1)항에 따른 위원회 명령은 명령에 의하여 증명된 사항에 대한 결정적 증거이며, (b) 이 법에 따른 허가의 발급을 위한 문서 또는 다른 체약국의 하나에 의하여 발급된 허가, 그리고 소송절차에 언급된 자의 성명을 포함한 자에게 발급된 허가는 반증이 없는 한 언급된 자에게 이 법에 따라 발급된 허가로 보거나 또는 체약국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며. (c) 영국정부 또는 다른 체약국에 의하여 발급되는 증명서에 성명이 기재된 자가 가 영국정부 또는 체약국에 의하여 감시관 또는 교환과학자로서 지명되거나 활용되었고, 문서에 정한 시기에 감시관 또는 교환과학자이었다는 증명서의 발급을 위한 문서는 반증이 없는 한 당해 문서에 서술된 사실의 충분한 증거가 된다.

9. 법의 확대

국가는 위원회의 명령을 통하여 명령에 명시된 이 법의 규정이 명령에 명시된 바와 같은 예외와 개정에 의하여 (a) Isle of man, (b) Channel Islands, (c) 식민지에 적용되도록 할 수 있다.

10. 해석 및 보충규정

- (1) 이 법에 있어서 “조약”은 이 법의 부속서 1에 규정한 조약을 말하며, “합의규칙”은 체결국에 의하여 승인되도록 권고된 이 법의 부속서 2에 의하여 규정된 규칙을 말한다. 다만 이 조의 다음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의 행사 중에 이 법의 부속서 2가 개정된 경우 “합의규칙”은 개정된 내용으로 당해 부속서에 규정된 규칙을 의미한다.
- (2) 이 법의 부속서 2의 규칙이 조약의 제9조제(4)항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개정된 경우 국가는 위원회의 명령을 통하여 그러한 개정사항에 대한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에 따른 방식으로 이 법의 부속서 2를 개정할 수 있다.
- (3) 조약의 제9조 제(4)항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한 당해 부속서에 규정한 조치가 후에 개정된 경우 국가는 이들 조치의 후속적인 개정 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명령을 통하여 개정을 하거나 부속서 2를 이 법에 맞게 개정할 수 있다.
- (4) 이 조의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정된 위원회의 명령은 의회의 결의에 따라 무효화될 수 있다.
- (5) 이 법에 있어 본문이 다르게 요구하고 있지 않은 한 다음의 표현 은 여기에서 각각에 대하여 부여한 의미를 갖는다.

“남극”은 공해를 제외한 남위 60도의 남쪽지역을 의미하며 당해 지역의 모든 빙하를 포함한다.

“지명된 날”은 국가가 위원회의 명령에 의하여 지명한 날을 의미한다.

“체약당사국”은 조약의 체약당사국을 의미하며 “기타 체약당사국”은 영

국정부가 아닌 계약당사국을 의미한다.

“교환 과학자”는 조약의 제3조제(1)항(π)에 따라 교환되는 자를 말하며 당사국이 활용하는 교환과학자에 대한 언급은 계약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계약당사국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계약당사국에 의하여 고용된 교환과학자를 말한다.

“토착조류,” “토착포유류,” 그리고 “토착식물”은 합의규칙의 제2조에 의하여 각각 부여된 의미를 갖는다.

“감시관”은 조약의 제7조 제(1)항에 따라 지명된 자를 말하며, “특별보호지역” 및 “특별보호종”은 각각 이 법의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과 종을 말한다.

“영역”은 국가를 포함한다.

“운송수단”은 육지에 있는 항공기를 포함하며 운송수단의 운전은 운송수단이 기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와 관계없이 운행중인 운송수단의 책임자를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6) 이 법의 어느 규정에 대한 위반행위, 이 법의 제5조에 의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유죄인 자의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언급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당해 조항에 의한 위법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

(7) 위원회의 명령을 제정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부여는 위원회의 후속적인 명령에 의하여 당해 명령을 개정하거나 취소하기 위한 권한을 포함한다.

(8) 1948년 영국국적법의 제3조제(1)항은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위법행위에 관련해서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11. 법률명 축약

이 법은 1967년 남극조약법으로 인용될 수 있다.

부속서 1 남극조약

<생략>

부속서 2 남극동식물의 보존을 위한 합의규칙

<생략>

<일본의 남극관련법제>

○ 『남극지역의환경의보호에관한법률』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률은 국제적인 협력을 통하여 남극지역의 환경(이에 의존하거나 관련된 생태계 및 환경과 함께 포괄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남극지역의 고유한 가치를 포함한다. 이하에서는 단지 『남극지역의 환경』이라고 한다.)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남극지역활동계획의 확인의 제도를 만드는 외에 남극지역에 있어서 행위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동 의정서의 부속서 I 에서 부속서 V 까지를 포함한다. 이하 『의정서』라고 한다.)의 적확 또는 원활한 실시를 확보하며, 따라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하는 동시에 현재 및 장래의 국민건강에서 문화적인 생활의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법률은 일본국민 및 일본의 법인, 일본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및 일본 내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외국의 법인(해당 외국사무소에 소속된 직원이 해당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남극지역활동을 하거나 또는 남극지역활동에 있어 중심이 되어 일을 진행시키는 경우에 관여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적용된다.

제 3 조 (정의)

이 법률에 있어서 다음의 각호에 언급한 용어의 정의는 각각 그 해당 각호에 정한 것에 따른다.

1. 남극지역

남위60도 이남의 육지지역(빙봉 및 그 상공의 부분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 또는 해역(빙봉의 구역에 관해서는 그 아래의 해중의 부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남극지역의 고유한 가치

남극지역의 과학적, 역사적 또는 예술적인 가치 또는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의 가치를 말한다.

3. 남극지역활동

남극지역에 있어서 과학적 조사, 관광 그 외의 활동(일정한 목적을 위해 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을 말한다.

4. 남극지역활동계획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남극지역활동에 관계된 하나의 계획을 말한다.

5. 남극특별보호구역

의정서부속서V 제3조1 또는 3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남극특별보호지역에 있어 총리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6. 특별활동

남극지역의 해역에 있어서 다음에 언급한 남극지역활동(다음에 언급한 남극지역활동이외의 남극지역활동과 일체가 되어 행해진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남극지역의 해역에 서식하거나 생활하는 수산동식물의 채집·포획에 있어서 해당 채집·포획을 제한하며, 또한 금지하는 법령의 규정(정령에서 정한 것에 한한다.)에 반하는 것이 아닌 행하여지는 것 및 그에 부수된 총리부령으로 정한 행위

나. 선박의 항행 또는 항공기의 비행(남극특별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그에 부수된 총리부령으로 정한 행위)

다. 과학적 조사에 있어서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 (가.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한다.)

7. 남극환경구성요소

남극지역의 대기, 남극지역의 물, 남극지역에 서식하거나 또는 생육하는 동식물 그 외의 남극지역의 환경의 구성요소(남극지역의 기상 그 외의 그것으로부터의 구성요소의 현상 또는 상태를 포함한다.)에

부 록

있어서, 총리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8. 남극환경영향

남극지역활동이 남극환경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9. 광물자원활동

광물(석탄, 아탄, 석유 및 천연가스를 포함한다.)의 탐광 및 채광을 말한다.

10. 남극포유류

포유강에 속한 종에 있어 그 개체가 남극지역에 서식하는 것으로서 총리부령으로 정한 것이 살고 있는 개체를 말한다.

11. 남극조류

조강에 속하는 종에 있어 그 개체가 남극지역에 서식하는 것으로서 총리부령으로 정한 것이 살고 있는 개체를 말한다.

12. 폐기물

남극지역의 육지지역(상공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 있어서 동일하다.)에 있어서 발생하거나 또는 남극지역의 육지지역에 갖고 들어온 고체 또는 액체의 불요물(不要物)을 말한다.

13. 남극사적기념물

의정서부속서V 제8조 5후단에 규정하는 사적 및 역사적 기념물의 일람표에 언급된 사적 및 역사적 기념물에 있어 총리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위임 : 제5호의 총리부령은 본법시행규칙1조, 6호 가의 총리부령은 동3조, 6호 나의 총리부령은 동4조, 7호의 총리부령은 동5조, 10호의 총리부령은 동6조, 11호의 총리부령은 동7조, 13호의 총리부령은 동8조, 6호 가의 정령은 본법시행령1조>

제 4 조 기본적 배려사항의 공표

환경청장관은 의정서의 적확 또는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 조 제1항에 규정한 확인을 받아 남극지역활동을 주재하는 자(이하 '주재자'라 한다.) 및 남극지역활동의 행위자가 남극지역의 환경의 보호를

위해 배려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이하 이 조에 있어 ‘기본적 배려사항’이라고 한다.)을 정해 공표하여야 한다.

② 환경청장관은 기본적 배려사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문부대신과 그 외의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전 2항의 규정은 기본적 배려사항의 변경에 대해 준용한다.

<위임: 1항의 정하는 것은 남극지역의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기하여 남극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배려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말한다.>

제 2 장 남극지역활동계획의 확인

제 5 조 (확인에 관계된 남극지역활동 이외의 남극지역활동의 제한)

누구도 남극지역에 있어서는 제7조 제1항 각호에 언급한 요건에 해당하는 취지의 환경청장관의 확인(다음 항을 제외하고 이하에서는 단지 ‘확인’이라고 한다.)을 받은 남극지역활동계획에 포함된 남극지역활동 이외의 남극지역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특정활동에 대해서는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의정서의 체약국인 외국(이하 ‘체약국’이라 한다.)의 법령에 있어 이 법률에 상당하는 것(이하 ‘체약국의 상당법령’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따라 당해 체약국에 있어서 전항에 규정한 확인에 유사한 허가 그 외의 행정처분을 받고 하는 남극지역활동 또는 당해 처분을 받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남극지역활동에 대해서는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전항에 규정한 남극지역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총리부령으로 정한 것에 의해 환경청장관에 그 취지를 신고해야 한다.

<위임: 3항의 총리부령은 본법 시행규칙 제9조, 별칙: 1항 관련은 본법 제30조1호, 3항 관계는 본법 31조, 33조>

제 6 조 (남극지역활동계획의 확인의 신청)

남극지역활동계획의 확인에 대한 신청(이하 이 조에서 제10조까지에 있어서 단지 ‘신청’이라고 한다.)은 해당 남극지역활동계획에 포함된 남

부 록

극지역활동을 주재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에 언급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이하 단지 '신청서'라고 한다.)를 환경청장관에게 신청하여 행하여야 한다.

1. 주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2. 당해 남극지역활동계획의 목적
 3. 당해 남극지역활동계획에 포함된 남극지역활동의 행위자의 인원수
 4. 당해 남극지역활동계획에 포함된 남극지역활동의 행위자의 성명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성명
 5. 당해 남극지역활동계획에 포함된 남극지역활동의 행위자가 당해 남극지역활동을 그 업무에 관하여 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주소 또는 대표자의 성명
 6. 당해 남극지역활동계획에 포함된 남극지역활동의 목적, 시기, 장소 및 실시방법
 7. 당해 남극지역활동계획에 포함된 남극지역활동을 구성하는 행위(다음 조 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언급된 요건에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상세한 내용 및 당해 행위의 행위자의 성명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성명
- ②남극지역활동을 주재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의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때에는 확인을 받을 수 없다.
1. 이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는 벌금이상의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을 종료하였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2. 법인에 있어서 그 임원의 내에 전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환경청장관에게 제출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당해 신청서에 관계된 남극지역활동계획에 포함되는 남극지역활동의 남극환경영향에 관해 환경청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조사, 예측 및 평가를 행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圖書를 당해 신청서와 함께 환경청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4. 신청서의 양식, 기재 요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부령으로 정한다.

<위임 : 3항의 정한 = 남극환경영향평가실시요령, 4항의 총리부령 = 본 법시행규칙>

제 7 조 (남극지역활동계획의 확인기준)

환경청장관은 신청에 관한 남극지역활동계획에 포함된 전체의 남극지역활동이 다음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조 및 제9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확인을 하여야 한다.

1. 당해 남극지역활동을 구성하는 행위 중에 제13조,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닌 것
2. 당해 남극지역활동을 구성하는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의 목적이 총리부령으로 정한 당해 행위의 구분마다 총리부령으로 정한 것(과학적 조사, 교육 자료의 수집 기타 이에 비슷한 목적에 한한다.)이고 또한 당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 있는 것으로 기타 총리부령으로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
3. 당해 남극지역활동을 구성하는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남극특별보호지구로의 출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가 의정서부속서 V 제6조의 지정에 관계된 관리계획에 따른 남극특별보호지구마다 총리부령으로 정한 요건에 적합한 것(당해 관리계획이 지정되어있지 않은 남극특별보호지구에 있어서는 과학적 조사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
4. 다음 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
5. 제3호에 언급한 남극지역활동 내에 기타 남극환경영향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이 호에 규정하는 장소에 적합한 외에, 당해 남극환경영향의 정도가 그 시점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도달되어 있는 수준의 남극환경영향에 관한 과학적 지식에 비추어 현저한 것이 될 우려가 없는 것

②남극지역활동은 다음에 언급한 것은 안 된다.

1. 남극지역의 기후의 자연적인 변동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남극지역활동

부 록

2. 남극지역의 대기에 현저한 오염, 수질의 현저한 오탁(수질 이외의 물의 상태 또는 물밑 수질의 현저한 악화를 포함한다.) 또는 토양의 현저한 오염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남극지역활동
 3. 남극지역의 대기의 조성을 변화시키고 또한 하천, 호소 등의 수위 또는 수량의 현저한 증감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남극지역활동
 4. 남극지역에 생식하고 또한 생육하는 동식물의 종에 대해 그 종의 개체의 주요한 생식지 또는 생육지를 소멸시킬 우려가 있는 남극지역활동, 종의 존속에 지장을 주는 정도에 그 종의 개체의 수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남극지역활동 기타 그 종의 개체의 생식상태 또는 생육상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남극지역활동
 5. 남극지역의 고유의 가치에 있어 중요한 것을 보유하는 지역에 있어서 당해 가치를 현저히 감소시킬 염려가 있는 남극지역활동
- <위임 : 1항2호의 총리부령 = 본법 시행규칙 11조, 1항3호의 총리부령 = 동 12조>

제 8 조(남극지역활동계획의 확인)

환경청장관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있어 당해 신청서에 관계된 남극지역활동계획에 포함된 남극지역활동이 前條 제1항 각호에 언급한 요건에 해당하는가 여부의 심사를 적정하게 행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신청서에 대해 상당한 기한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다음에 언급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 경우에 있어서 당해 서면에는 당해 조치를 취하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서를 정정하는 것
 2. 제6조제3항에 규정한 도서를 제출하는 것
 3. 제6조제3항에 규정한 도서의 기재사항의 수정 또는 보충을 행하는 것
- ②전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이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신청자가 동항의 기한까지 당해 명령에 관계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에는 환경청장관은 당해 신청을 각하시켜야 한다.
- ③환경청장관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있어서 신청에 관계된 남극지역활동계획이 다음의 각호에서 정한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각각 해당 각호에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1. 그에 포함된 전체의 남극지역활동이 전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남극지역활동계획 : 당해 남극지역활동계획의 확인을 하며, 그 취지를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는 것
2. 그에 포함된 전체의 남극지역활동이 전조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 까지에 해당하며 또한 그 것에 포함된 남극지역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항 제5호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서 체약국의 정부 또는 일본국내 및 일본국외의 일반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는 남극지역활동계획 : 다음 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한 취지 및 그 이유를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는 것
3. 전2호에 규정된 것 이외의 것 : 당해 남극지역활동계획의 확인을 거부하여 그 취지 및 그 이유를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는 것
4. 환경청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리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남극지역활동계획에 포함된 남극지역활동에 관하여 남극지역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환경청장관은 남극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필요의 한도에 있어서 남극환경구성요소(미리 환경청장관이 통지한 남극환경영향에 관계된 것에 한한다.)의 관측 또는 측정을 총리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행하여 그 결과를 환경청장관에 보고하는 것, 남극지역에 있어서 환경청장관의 권한을 행하는 직원과의 사이에 연락 수단을 확보하는 것 기타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6.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통지에 대해 불복이 있는 자는 行政不服審査法(소화37년 법률제160호)에 근거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7. 신청자는 신청에 관계된 남극지역활동계획에 관하여 확인을 하거나 또는 확인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받기까지는 언제라도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위임 : 4항의 총리부령 = 본법시행규칙 13조, 5항의 총리부령 = 15조, 벌칙관계 = 본법 32조1호 · 33조>

제 9 조 (남극지역활동계획의 열람 등)

환경청장관은 전조 제3항 제2호에 정한 조치를 취하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신청에 관계된 남극지역활동계획에 대해서 총리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총리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공고하고 또한 해당 공고의 날로부터 기산하여 30일 동안, 당해 남극지역활동계획에 관한 신청서 및 제6조 제3항에 규정된 도서를 열람하도록 하고 또한 당해 남극지역활동계획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의정서부속서 I 제3조2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포괄적인 환경평가서를 작성하여 체약국의 정부 및 의정서 제11조의 환경보호위원회에 송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누구도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하도록 제공된 남극지역활동계획에 대해 동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의 날로부터 동항의 열람기간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60일을 경과한 날까지의 사이에 환경청장관에 대하여 남극지역의 환경의 보호의 측면에서의 의견을 의견서의 제출에 의해 진술할 수 있다.

③환경청장관은 제1항에 규정하는 포괄적인 환경평가서에 대한 체약국 정부의 의견 또는 전항의 의견의 내용에 비추어 남극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자에 관하여 상당한 기한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당해 남극지역활동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수정을 행하여야 한다고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당해 서면에는 해당 수정을 행하여야 하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전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동조 제2항 중 ‘당해 명령에 관계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관계된 수정을 행하지 않는다’로 대체하여 적용한다.

⑤환경청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관계된 수정후의 남극지역활동계획(동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에 관계된 남극지역활동계획)이 제7조제1항 각 호에 언급된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남극지역활동계획의 확인을 하고, 그 취지를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전조 제5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에 대해 준용한다.
<위임 : 1항제1의 총리부령 = 본법시행규칙 16조, 1항2의 총리부령 = 동17조, 별칙 6조관계 = 본법32조1호 · 33조>

제10조 (승계)

신청자에 대신하여 신청중의 남극지역활동계획에 관계된 남극지역활동을 주재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경청장관에게 신고하고 그 신청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②신청자에 대하여 상속 또는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상속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전원의 동의에 따라 당해 신청의 절차를 승계할 상속인을 선정한 때에는 그 선정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그 신청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취지를 환경청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확인을 받은 남극지역활동계획에 관계된 주재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은 확인을 받은 남극지역활동계획에 관계된 주재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1항 중 '환경청장관에게 신고하여'라고 되어 있는 것은 '환경청장관의 승인을 받은'으로, 제2항 중 '그 신청자'라고 되어 있는 것은 '환경청장관의 승인을 받은 그 주재자'로 '승계한'으로 되어 있는 것은 '승계하는 것이 가능한'으로 대체하여 적용한다.

<위임 : 1항의 총리부령 = 본법시행규칙 18조1항, 3항의 총리부령 = 동18조2항>

제11조 (행위자증의 교부 등)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제6조제1항제4호 또는 제7호에 규정한 이름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청자 또는 주재자는 남극지역활동계획에 포함된 남극지역활동이 개시된 날(당해 남극지역활동계획에 포함된 남극지역활동이 둘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개시된 날 중에서 빠른 날. 이하 이 조에 있어서 '계획개시일'이라고 한다.)의 30일

까지, 당해 이름을 확정하여 이를 환경청장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6조제1항제4호 또는 제7호에 규정된 성명 또는 동향의 제5호에 언급한 사항에 변경이 있었던 경우에는 신청자 또는 주재자는 계획개시일의 30일전까지 그 뜻을 환경청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당해 남극지역활동계획에 포함된 하나의 남극지역활동이 개시된 날이 계획 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을 경과한 날 이후의 날인 경우에 당해 남극지역활동의 행위자의 이름 및 당해 남극지역활동에 관계된 제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④전항의 경우에 주재자는 당해 남극지역활동이 개시된 날의 30일 전까지 당해 남극지역활동의 행위자의 성명 및 당해 남극지역활동에 관계된 제6조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환경청장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환경청장관은 주재자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에 총리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주재자에 대하여 그 자가 주재하는 남극지역활동의 행위자에 관하여 그 남극지역활동이 확인을 받은 남극지역활동계획에 포함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자증의 교부를 하여야 한다.

⑥주재자 또는 확인을 받은 남극지역활동계획에 포함된 남극지역활동의 행위자는 전항의 행위자증을 亡失하였거나 또는 동향의 행위자증이 滅失된 경우에, 총리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행위자증의 재발행을 받을 수 있다.

⑦확인을 받은 남극지역활동계획에 포함된 남극지역활동의 행위자는 남극지역에 있어서 제5항의 행위자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위임 : 5항의 총리부령 = 본법 시행규칙, 19조1항·2항, 6항의 총리부령 = 제19조3항>

제12조(주재자의 책무)

주재자는 확인을 받은 남극지역활동에 포함된 자신이 주재하는 남극지역활동의 행위자에 대하여 적어도 당해 남극지역활동에 관계된 제6조제1항 및 제7호의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 외에 법률 또는 그에 근거한 명령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필요한 지도를 행하여야 한다.

제 3 장 남극지역에 있어서 행위의 제한

제 1 절 광물자원활동의 제한

제13조 누구도 남극지역에 있어서는 광물자원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과학적 조사에 있어서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칙: 본법 제29조1호·33조>

제 2 절 동물군 및 식물군의 보존을 위한 제한

제14조 누구도 총리부령으로 정한 검사를 받고 있는 경우 그 외 총리부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살아있지 않은 哺乳綱 또는 鳥綱에 속하는 종의 개체(여기서의 개체의 일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이의 가공품을 제외한다.)를 남극지역에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

②누구도 남극지역에 있어서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남극포유류 또는 남극조류를 포획하거나 또는 살상하거나, 또는 남극조류의 알을 채취하거나, 또는 손상하는 것(특정활동에 관계된 행위 또는 확인을 받은 남극지역활동계획에 포함된 남극지역활동을 구성하는 행위(체약국의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해 체약국에 있어서 당해 행위에 관한 허가 기타 이것과 비슷한 행정처분을 받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음 호 및 제3호에 있어서 '확인행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다음의 경우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 살아있는 생물(바이러스를 포함한다.)을 남극지역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확인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식용에 제공하기 위해 酵母 기타의 균류 또는 식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
 - 나. 가에 언급된 것 이외에 남극환경영향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로서 총리부령으로 정한 경우
3. 전항 또는 전2호에 언급된 것 이외에 남극지역에 生息하거나 또는

生育하는 동식물의 生息狀態 또는 生育狀態 및 생식환경 또는 생육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특정활동에 관계된 행위 또는 확인행위를 제외한다.)

③남극지역에 동식물(그 것의 개체의 일부 및 가공품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들어오는 자는 남극지역의 동물군 및 식물군의 보존에 지장을 미치지 않도록 당해 동식물을 적절히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임 : 1항제1의 총리부령 = 본법시행규칙 20조1항, 1항제2의 총리부령 = 동20조2항, 2항2호 나의 총리부령 = 동21조; 별칙1·2항관계 = 본법 29조1호·33조>

제 3 절 폐기물의 적정한 처분 및 관리

제15조 (폐기물의 발생의 억지 등)

누구도 남극지역에 있어서는 폐기물의 발생의 억지에 노력하는 동시에 발생한 폐기물을 남극지역에서 제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폐기물의 처분의 제한)

누구도 남극지역에 있어서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것에 규정한 방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장하거나 배출하거나 또는 유기하거나 또는 그 외의 방법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①고형상의 폐기물에 있어서 가연성인 것(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다.)의 陸域에 있어서 소각에 따른 처분에 있어 총리부령으로 정한 소각의 방법에 관한 기준에 따른 것

②액상의 폐기물(분뇨를 포함한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 있어서 ‘액상폐기물’이라 한다.)에 있어서 氷床에 덮혀 있는 한편 해안 또는 빙봉의 先端에서 내륙의 방향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의 당해 지역에 있어서 매립에 따른 처분에 있어서 총리부령으로 정한 매립방법에 관한 기준에 따른 것

③액상폐기물에 있어서 사람의 일상생활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것 그

외의 정령으로 정한 것의 陸域에서 海역으로의 배출에 있어서 총리부령으로 정한 배출의 방법에 관한 기준에 따른 것

④전호에 나열된 액상폐기물의 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汚泥(총리부령으로 정한 것에 한한다.)의 선박에서 海역으로의 배출에 있어서 海洋오염 및 海上화재의 방지에 관한 법률(소화 45년 법률 제136호)의 규정에 따른 것

⑤폐기물을 제거함에 따른 남극환경영향의 정도가 그 것을 유기하는 것에 따른 남극환경영향의 정도보다도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총리부령으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폐기물의 그 장소에의 유기

⑥전 각호에 언급한 것 외에 액상폐기물의 육역에 있어서 처분 또는 육역으로부터 海역으로의 배출에 있어서 남극지역에 있어서 행위를 하는 한 부득이 하고 또한 남극환경영향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서 총리부령으로 정한 것

<위임: 1호의 정령 = 본법시행령2조, 2호의 정령 = 동3조, 3호의 정령 = 동4조, 1호의 총리부령 = 본법시행규칙 22조, 2호 제1의 총리부령 = 동24조, 2호제2의 총리부령 = 동25조, 3호의 총리부령 = 동27조, 4호의 총리부령 = 동28조, 5호의 총리부령 = 동29조, 6호의 총리부령 = 동30조>

<별칙: 본법29조2호·33조>

제17조 (폐기물의 적절한 보관)

누구도 폐기물이 남극지역에서 제거되거나 또는 전조 각호의 폐기물의 처분이 되기까지의 기간 동안은 폐기물이 날리거나 유출되거나 또는 지하에 침투하지 않도록 적절한 장소 또는 시설에 있어서 적절히 보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폴리염화비페닐 등의 반입의 금지)

누구도 남극환경영향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로서 총리부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폴리염화비페닐(별명 PCB) 그 외 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제거 또는 처분의 남극환경영향의 정도가 현저한 물질로서 정령으로 정한 것을 남극지역에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부 록

<위임 : 총리부령 = 본법시행규칙 31조, 정령 = 본법시행령 5조>

<벌칙 : 본법 29조1호 · 33호>

제 4 절 남극특별보호지역 및 남극사적기념물의 보호를 위한 제한

제19조 (남극특별보호지구로의 출입의 제한)

누구도 특정활동으로서 하는 출입시에 확인을 받은 남극지역활동계획에 포함된 남극지역활동에 관한 출입 및 체약국의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해 체약국에 있어서 당해 출입에 관한 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고 하는 출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극특별보호지구로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벌칙 : 본법 29조3호 · 33조>

제20조 (남극사적기념물의 제거 등의 금지)

누구도 南極史跡記念物을 제거하거나 손상하거나 또는 파괴하여서는 안 된다.

<벌칙 : 본법 29조1호 · 33조>

제 4 장 감 독

제21조 (보고징수)

환경청장관은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 있어서 주재자 또는 남극지역에 있어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실시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벌칙 : 본법 32조3호 · 33조>

제22조 (출입검사)

환경청장관은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 있어서 그 직원에게 남극지역에 있는 건축물, 일본선박 또는 일본항공기로 전조에 규정한 자가 관리하는 곳에 출입하는 차량,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고 또한 관계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②의정서 제4조2에 규정한 감시원은 의정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남

극지역에 있는 건축물, 선박 또는 항공기로 전조에 규정한 자가 관리하는 곳에 출입하는 차량,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고 또한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해 인정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별칙:1·2항 관계=본법 32조4호·33조>

제23조 (조치명령)

환경청장관은 남극지역에 있어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제13조,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16조 또는 제18조 내지 제20조까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또는 제7조2항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하고자 하는 경우(다음 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남극지역의 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주재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또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또는 원상회복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이를 대신할 만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환경청장관은 확인의 때에 예상할 수 없었던 남극지역의 환경의 변화 또는 확인의 때에 없었던 남극지역의 환경의 과학적 발견의 내용에 따라 확인을 받은 남극지역활동계획에 포함된 남극지역활동이 제7조제2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 남극지역의 환경을 현저히 손상하거나 또는 손상할 우려가 있어서 당해 남극지역활동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남극지역활동의 주재자 또는 당해 남극지역활동을 구성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하고자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남극지역활동 또는 당해 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기타 남극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환경청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이를 대신할 만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명령을 받은 자

부 록

가 그 명령에 관계된 기한까지 그 명령에 관계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에는 스스로 원상회복을 하거나 또는 원상회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이를 대신할 만한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별칙:1·2항 관계=본법 29조4호·33조>

제5장 잡 칙

제24조 (적용제의 등)

이 법률의 규정은 방사성물질에 의한 남극지역의 대기의 오염, 수질의 오염(수질 이외의 물의 상태 또는 水底의 低質의 악화를 포함한다.) 및 토양의 오염 및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남극지역의 해역에 있어서 선박 및 항공기에서 당해 해역으로 폐기물의 배출 및 남극지역의 해역에 있는 선박에 있어서 폐기물의 소각에 대해서는 제22조 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③긴급시에 있어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해 행한 행위 기타 긴급,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서 총리부령으로 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 및 제3항, 제11조제7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및 제18조 내지 제20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④전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총리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행위가 종료된 후 지체없이 환경청장관에 대하여 당해 행위를 한 취지 및 그 실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위임:3항의 총리부령 = 본법시행규칙 33조 1항, 4항의 총리부령 = 동33조2항>

제25조 (周知)

국가는 남극지역에 있어서 행위를 하는 자 기타의 관계자에게 의정서 및 이 법률(이에 기초한 명령 및 환경청장관이 정한 것을 포함한다.)의 요지를 주지시키기 위해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 (권한의 위임)

환경청장관은 사전에 지정한 그 직원에게 남극지역에 있어서 제11조제 5항 또는 제6항 또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7조 (경과조치)

이 법률의 규정에 기초한 명령을 제정하거나 또는 개폐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명령으로 그 제정 또는 개폐에 수반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에 있어서 요구되는 경과조치(별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를 정할 수 있다.

제28조 (총리부령에의 위임)

이 법률에 정한 것 이외에 이 법률의 실시를 위한 절차 기타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부령으로 정한다.

<위임 : 총리부령 = 본법시행규칙>

제 6 장 별 칙

제29조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 제18조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남극지역의 해역에 있어서 선박 및 항공기로부터 당해 해역으로 폐기물의 배출 및 남극지역의 해역에 있는 선박에 있어서 폐기물의 소각을 제외한다.)를 한 자
3.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부 록

제30조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확인을 받은 남극지역활동계획에 정해진 남극지역활동(동조 제2항에 규정한 남극지역활동을 포함한다.)을 해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출입하거나 또는 당해 남극지역활동을 하기로 되어 있는 시기 이외의 시기에 당해 남극지역활동에 관계된 장소에 출입하거나 또는 잔류하는 행위(전조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를 한 자
2. 허위로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확인을 받은 자

제31조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고 동제2항에 규정한 남극지역활동을 하기로 되어있는 장소에 출입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5항(제9조제6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확인에 첨부된 조건에 위반한 자
2.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또는 기피하거나 또는 질문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한 자

제33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이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 내지 전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이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 각 본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기일)

이 법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마다 각각 당해 각호에 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제1장(제4조를 제외한다.), 제2장(제5조제1항 및 제11조 제7항을 제외한다.),

○ 『남극지역의환경의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 조(수산동식물의 採捕制度 또는 금지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남극지역의 환경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
가의 정령으로 정한 법령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어업법(소화 24년법률제267호)제52조제1항의 규정
2. 어업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기초한 성령의 규정(동항 제1호에
언급한 사항에 관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총리부령으로 정한 것
3. 수산자원보호법(소화26년 법률제313호) 제4조제1항의 규정에 기초
한 성령의 규정(동항 제1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것에 한 한다.)으
로서 총리부령으로 정한 것

제 2 조 (처분이 금지된 고품상의 폐기물)

법 제16조제1호의 정령으로 저한 고품상의 폐기물에 있어 가연성인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1. 고품상의 폐유
2. 석탄 및 연탄, 두탄 기타 그와 유사한 고품연료로서 석탄으로부터
제조된 것으로 불요물인 것
3. 동식물 또는 월스의 방재에 이용되는 약제 및 그 유효성분인 화학
물질로 제조된 것(다음 조2호 및 제5조제2호에 있어서 ‘驅除劑’를 말
한다.)으로서 고품상의 불요물인 것
4. 페플라스틱류(폐기물의 포장에 이용되고 있는 폴리에틸렌필름제의
자루를 제외한다.)
5. 고무 폐기물
6. 나무 폐기물(방부제, 방충제 또는 곰팡이 방지제가 포함되어 있거
나 또는 도포된 것에 한한다.)

제 3 조 (처분이 금지된 액상폐기물)

법 제16조제2호의 정령으로 정한 액상의 폐기물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1. 액상의 폐유
2. 구제제로서 액상의 불요물로 된 것
3. 수질오염방지법 시행령(소화46년 정령제188호)제2조에 규정한 물질을 포함하는 액상의 폐기물(총리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
4. 폐배양물(미생물(바이러스를 포함한다.)의 배양에 이용된 한하며 멸균된 것을 제외한다.)

제 4 조 (해역으로 배출할 수 있는 액상폐기물)

법 제16조제3호의 정령으로 정한 액상폐기물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1. 사람의 일상생활에 따라 발생하는 액상폐기물
2. 전호에 열거된 것 외에 과학적 조사, 의료 또는 차량, 발전기 기타의 남극지역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기계의 유지 또는 수리에 따라 발생하는 액상폐기물(총리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제 5 조 (반입이 금지된 물건)

법 제18조의 정령으로 정한 폐기물이라고 한 경우에 있어서 제거 또는 처분의 남극환경영향의 정도가 현저한 것은 다음에 정한 것이다.

1. 폴리스틸렌製, 폴리에틸렌製 또는 폴리프로필렌製의 포장용재료(비즈狀, 칩프狀 기타 그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2. 구제제(과학적 조사 또는 사람의 보건을 위해 사용된 것을 제외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기일)

이 정령은 법 부칙 제1호에 정한 날(평성10년1월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에서 제5조까지의 규정은 법 부칙 제1조제4호에 정한 날(평성10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록

제 2 조 (환경청조직령의 일부개정)

환경청조직령(소화46년 정령제219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이하 생략)

제 3 조 (환경청조직령의 일부개정에 수반한 경과조치)

전조의 규정에 따른 개정후의 환경청조직령 제7조제3호 및 제24조제11호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법 부칙 제1조제1호에 정한 날로부터 동조 제3호에 정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은 동령 제7조제3호중 『...및 남극지역의환경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 및 남극지역의환경의보호에관한법률 및 동법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전히 그 효력을 갖는 것으로 된 구 『남극지역의 동물상 및 식물상의 보존에 관한 법률』과, 동령 제24조제11호 중 『남극지역의환경의보호에관한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남극지역의환경의보호에관한법률』 및 동법 부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효력을 갖는 구 『남극지역의동물상및식물상의보존에관한법률』로 한다.

제 4 조 (외무성조직령의 일부개정)

외무성조직령(소화27년 정령제385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이하 생략)

○ 『남극지역의동물상및식물상의보존에관한법률』

소화57년5월28일법률제58호

소화57년11월1일시행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 조약 의정서가 일본국에 있어서 효력을 생기는 날에 폐지(남극 지역의 환경의 보호에 관한 법률(평성9년법률제61호)의 규정에 근거)

제 1 조 (목적)

이 법률은, 남극 지역의 동물상 및 식물상의 보존을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남극조약협약국제회의가 남극조약 제9조 1의 규정에 기초를 두고 권고한 남극 지역의 동물상 및 식물상의 보존을 위한 조치 (이하 『권고 조치』라고 말한다.)를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1. 이 법률에 있어서, 『남극 지역』이라 함은, 남위 육십도 이남의 육지 (빙봉의 부분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이 법률에 있어서, 『남극 포유류』라고 함은, 남극 지역 및 그 주변의 해역에 생식하는 포유류 중 권고 조치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외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이 법률에 있어서, 『남극 조류』라고 함은, 남극 지역 및 그 주변의 해역에 생식하는 조류 중 권고 조치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외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이 법률에 있어서, 『특별 보호 지구』라고 함은, 생태계의 보존이 학술적으로 특히 중요한 것으로서 남극조약 협약국제회의가 지정한 지구에서 외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행위의 제한 등)

1. 국민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가. 남극 지역에 있어서, 남극 포유류 또는 남극 조류를 포획하고,

부 록

살상하고 또는 손상시키는 것 또는 남극 조류의 알을 채취 또는 손상시키는 것.

나. 남극 지역에 동물 또는 식물 (과실 기타 통상 식용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를 가지고 오는 것.

다. 특별 보호 지구에 출입하는 것 또는 특별 보호 지구에 생육하고 있는 식물을 채취 또는 손상시키는 것

2. 전항에 정하는 것 외에, 국민은 남극 지역에 있어서, 남극 포유류 또는 남극 조류의 생식상태 및 생식환경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적용 제외)

전조 제1항의 규정은, 다음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국가가 남극 지역에 있어서 실시하는 과학적 조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과학적 조사를 위해서 하는 행위

나. 남극 조약 제7조 1에 규정하는 감시원으로서 지명된 사람이 해당 감시원으로서 하는 행위

다. 기타 학술 연구, 박물관 자료의 수집 등의 필요에 기초를 두고 외무대신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당 허가를 받은 일정한 남극 지역에 있어서 하는 행위

제 5 조

1. 전조 제 3 호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외무성령으로 정하는 곳에 의해 그 하려고 하는 행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외무대신에게 제출하지 하여야 한다.

2. 외무대신은 전항의 신청서의 제출이 있는 때에 필요에 따라 문교장관에게 협의하는 것으로 한다.

3. 전조 제 3 호의 허가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할 수 있다.

4. 외무대신은 전조 제 3 호의 허가를 했을 때에는 외무성령으로 정하는 곳에 의해 허가를 받는 사람에 대하여 허가증을 교부한다.

5. 전 각호에 정하는 것 외에 전조 제 3 호의 허가에 관계되기 필요한 사항은 외무성령으로 정한다.

제 6 조 (보고)

외무대신은 남극 지역의 동물상 및 식물상의 보존을 위해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제 4 조제 3 호의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해당 허가에 관계되는 행위에 대해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 7 조 (주지)

외무대신은 권고 조치의 개요를 관보에서 공시하는 것 외에 남극 지역에 도항하는 사람 기타의 관계자에게 이 법률 (이에 기초를 두는 명령을 포함한다.)의 내용을 고려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8 조 (경과 조치)

이 법률의 규정에 기초를 두고 명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명령으로, 그 제정 또는 개폐에 동반하는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범위 내에 있어서 소요의 경과조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를 정할 수 있다.

제 9 조 (벌칙)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십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나. 제 5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부과된 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사람

제10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사람은 1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혹은 사람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에 관계되고, 전2조의 행위를 했을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 각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록

부 칙

(시행기일)

1. 이 법률은, 공포의 날로부터 기산하여 6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서 정령에서 정하는 날(소화57년11월1일)로부터 시행한다. (후 략)